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Ⅰ. 개요 ····· 1

1. 세입·세출예산안 ····· 1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3

(1) 총 괄 ····· 3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 5

(3) 사업 내역 ····· 6

(4) 성과계획서 ····· 18

(5) 성인지예산 ····· 24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25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 26

가. 2025년도 신규사업 ····· 26

나. 2024년도 종료사업 ····· 27

Ⅱ. 검토의견 ····· 28

Ⅱ-1. 총괄: 주요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 28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 28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8

나. 연도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31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37

2.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 38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38

나.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40

3. 연구용역비 예산안 ····· 43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43

나. 연도별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47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48

4. 정보화사업 예산안 ····· 50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50

나. 연도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 52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52

라. 정보화사업 단계별 예산 현황 ····· 54

마.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관련 예산 현황 ····· 55

5.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예산안 ····· 59

6.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 64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64
나.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및 집행 현황 ····· 66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67
7. 지방소멸대응사업 예산안 ····· 69

Ⅱ-2. 부서별·사업별 분석 ····· 103
【대변인실】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7036-300) ····· 103
가. 개 요 ····· 103
나.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용역비 증액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필요 ····· 104

【디지털정부혁신실】
2.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2032-506) ····· 108
가. 개 요 ····· 108
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적시 완료를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109
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2031-505) ····· 118
가. 개 요 ····· 118
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전 예산의 명확한 집행 계획 수립 필요 ··· 120

4.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 ····· 126

가. 개 요 ····· 127

나. ISP 최종 산출물 도출 이후 정확한 총사업비 및 사업 확대·변경 사유, 필요성 등 확인 필요 등 ····· 127

【지방행정국】

5. 지자체경쟁력지원(1139-307) ····· 145

가. 개 요 ····· 145

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정 수준의 임차료 예산 편성 필요 ····· 147

다.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 타 내역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54

라.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161

6.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 ····· 168

가. 개 요 ····· 168

나. 사업의 효과성 측정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169

7. 자원봉사활성화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141-302) ····· 174

가. 개 요 ····· 174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이관 문제 ····· 175

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 182
가. 개 요 ····· 182
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183
9.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2437-300) ····· 186
가. 개 요 ····· 186
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까지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처리 노력 필요 ····· 187

【자치분권국】

10.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191
가. 개 요 ····· 191
나.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192
11.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1131-319) 199
가. 개 요 ····· 199
나.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한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필요 ····· 200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1137-500) ····· 208
가. 개 요 ····· 208
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및 주민등록정보제공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209

【균형발전지원국】

13.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237-300) ····· 217
가. 개 요 ····· 217
나. '사물주소 확충' 관련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사물주소 활용도 증진 필요 ····· 219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228
가. 개 요 ····· 228
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30
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 235
가. 개 요 ····· 235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36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관련 정보'의 사전공표 필요 ····· 242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245
가. 개 요 ····· 245
나.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246
1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1232-300) ··· 249
가. 개 요 ····· 249
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 필요 ····· 250

【지방재정경제실】

18.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933-303) ····· 255

가. 개 요 ····· 255

나. 국세수입 예산안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 예산안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56

19.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300) ····· 259

가. 개 요 ····· 259

나.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261

20.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1338-300) ····· 265

가. 개 요 ····· 265

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 분석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67

21. 지역경제 활성화(1349-301) ····· 271

가. 개 요 ····· 271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73

【안전예방정책실】

22.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 279

가. 개 요 ····· 279

나.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 면밀한 조사 계획 수립 필요 ····· 280

다.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확대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지원 강화 필요 ····· 284

라.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위원장 자격 검토 필요 ····· 286

23.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3032-509) ····· 289

가. 개 요 ····· 289

나.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ISP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 290

다. CCTV 영상정보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96

24.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 298

가. 개 요 ····· 298

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성, 도입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및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의 내실화 필요 ····· 299

【자연재난실】

25.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304

가. 개 요 ····· 304

나.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305

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행정교육기관 포함 필요 ····· 310

라.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12

26. 재난관리평가지원(2731-301) ····· 314

가. 개 요 ····· 314

나.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315

【사회재난실】

27.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2735-304) ····· 319

가. 개 요 ····· 319

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활동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 320

28. 도시 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2931-520) ··· 327

가. 개 요 ····· 327

나. 연구 과제 간 연계 강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328

【재난복구지원국】

29. 풍수해·지진재해보험(2734-302) ····· 332

가. 개 요 ····· 332

나. 미납보험료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비율 축소 시 이로 인한 신규 가입유인 감소 방지 필요 ····· 333

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준비금의 누적 규모 과다 문제 검토 필요 ···· 338

【비상대비정책국】

30.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342

가. 개 요 ····· 342

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43

【정부청사관리본부】

31.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2231-301) ····· 347

가. 개 요 ····· 347

나. 세종정부청사의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348

다.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군·경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3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352

가. 개 요 ····· 352

나. 공주센터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5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33.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360

가. 개 요 ····· 360

나.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지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361

Ⅰ.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437억 3,400만원이 감소(-46.8%)한 1,630억 7,7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596목)이 1,141억 3,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181억 9,200만원,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546목) 155억 3,800만원 등이 다음으로 큰 규모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계	306,811	163,077	-143,734	-46.8
o 일반회계	295,470	143,392	-152,078	-51.5
-재산수입: 11관	18,448	18,938	490	2.7
(건물대여료: 512목)	2,938	2,976	38	1.3
(토지대여료: 511목)	424	424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15,086	15,538	452	3.0
-경상이전수입: 12관	268,038	115,079	-152,959	-57.1
(위약금: 572목)	917	945	28	3.1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267,121	114,134	-152,987	-57.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관	994	1,297	303	30.5
(면허료및수수료: 651목)	37	38	1	2.7
(기타잡수입: 691목)	957	1,259	302	31.6
-수입대체경비수입: 14관	7,990	8,078	88	1.1
(기타잡수입: 691목)	7,990	8,078	88	1.1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41	19,685	8,344	73.6
-재산수입: 11관	998	1,493	495	49.6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998	1,493	495	49.6
-경상이전수입: 12관	10,343	18,192	7,849	75.9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10,343	18,192	7,849	75.9

주) 총계·총수입 기준 동일

한편, 수입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수납되는 과목인데, 2020년~2022년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도 전년 대비 크게 증액(447억 4,200만원 → 2,671억 2,100만원으로 497.0% 증액)시켰음. 그러나 2024년 동 수입과목의 수납률이 예상 외로 저조(2024년 7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18.5%)한 실적을 보이면서, 2025년 예산액을 다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임.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2조 871억 9,3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72조 4,473억 5,600만원 대비 346억 8,900만원(-0.05%) 감소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계	72,447,356	72,087,193	-360,163	-0.5
o 일반회계	69,758,818	69,724,129	-34,689	-0.05
-지방교부세	66,759,324	67,038,505	279,181	0.4
-인건비	360,874	369,519	8,645	2.4
-기본경비	38,379	39,778	1,399	3.6
-사업비	2,600,241	2,276,327	-323,914	-12.5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38	2,363,064	-325,474	-12.1
-사업비	2,688,538	2,363,064	-325,474	-12.1

주 1) 총계·총지출 기준 동일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6개 세부사업 예산 전체
3) 인건비: 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본부인건비, 소속기관인건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4) 기본경비: 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5) 사업비: 상기 지방교부세·인건비·기본경비 내역을 제외한 예산 전체

이를 예산 목적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 385억 500만원으로서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와 연동하여 전년 대비 2,791억 8,100만원(0.4%) 증가하였음.

다음 인건비는 3,695억 1,900만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전년 대비 3.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6억 4500만원(2.4%)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도 397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억 9.900만원(3.6%) 증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2조 2,763억 2,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239억 1,400만원(-12.5%) 감소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2조 3,630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254억 7,400만원(-12.1%) 감소하였음.

우선 일반회계 사업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세부사업(1233-300)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고(-1,101억 100만원), 재난대책비(보조) 세부사업(2734-300) 예산이 2024년 발생 재난에 대한 2년차 복구소요가 적어 크게 감소(-2,400억 2,000만원)된 것에 기인함.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1349-306) 예산이 전액 감액(-3,000억원)되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131-303)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크게 감소(-557억 9,700만원)한 것에 기인함.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3개 분야, 6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문	프로그램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 감 (B-A)/A
총 계		72,447,356	72,087,193	-360,163	-0.5
일반·지방행정 분야(010)		70,386,095	70,332,478	-53,617	-0.1
지방행정·재정지원(013)	소 계	68,618,995	68,530,737	-88,258	-0.1
	지방자치분권(1100)	68,974	65,799	-3,175	-4.6
	지역발전(1200)	1,447,664	1,383,470	-64,194	-4.4
	지방재정경제(1300)	326,909	26,302	-300,607	-92.0
	지방자치인재개발(1400)	14,224	14,370	146	1.0
	이북5도(1500)	1,900	2,291	391	20.6
	지방교부세(1600)	66,759,324	67,038,505	279,181	0.4
정부자원관리(015)	소 계	772,060	801,449	29,389	3.8
	인사관리(1800)	167	167	-	-
	정부혁신조직(1900)	39,263	34,047	-5,216	-13.3
	전자정부(2000)	732,630	767,235	34,605	4.7
일반행정(016)	소 계	995,040	1,000,292	5,252	0.5
	정부의전(2100)	14,075	17,726	3,651	25.9
	청사관리(2200)	235,910	227,123	-8,787	-3.7
	기록물관리(2300)	44,225	45,336	1,111	2.5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2400)	317,549	321,960	4,411	1.4
	행정안전행정지원(7000)	383,281	388,147	4,866	1.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20)		1,976,730	1,730,176	-246,554	-12.5
경찰(023)	과학수사(2500)	66,326	68,252	1,926	2.9
재난관리(025)	소 계	66,326	68,252	1,926	2.9
	안전관리(2600)	1,910,404	1,661,924	-248,480	-13.0
	재난관리(2700)	995,065	976,989	-18,076	-1.8
	재난안전기술개발(2900)	674,727	438,640	-236,087	-35.0
	재난안전정보화(3000)	93,633	98,105	4,472	4.8
사회복지 분야(080)		146,979	148,190	1,211	0.8
취약계층지원(082)	일자리지원(3100)	84,531	24,539	-59,992	-71.0

(3) 사업 내역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113개 단위사업과 29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72,320,033	72,447,356	72,447,356	72,087,193	-360,163	-0.5%
[11]일반회계						69,605,383	69,758,818	69,758,818	69,724,129	-34,689	-0.05%
	[010]일반·지방행정					69,031,841	68,738,252	68,738,252	68,940,480	202,228	0.3%
		[013]지방행정·재정지원				67,352,892	66,990,427	66,990,427	67,147,654	157,227	0.2%
			[1100]지방자치분권			37,831	41,987	41,987	40,040	-1,947	-4.6%
				[1131]지자체역량강화		5,976	5,034	5,034	6,195	1,161	23.1%
					[302]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554	3,054	3,054	3,423	369	12.1%
					[304]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529	715	715	935	220	30.8%
					[31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505	505	505	1,008	503	99.6%
					[315]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228	161	161	161	0	0.0%
					[316]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795	599	599	599	0	0.0%
					[319]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365	0	0	69	69	순증
				[1132]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09	8,739	8,739	1,524	-7,215	-82.6%
					[300]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09	8,739	8,739	1,524	-7,215	-82.6%
				[1133]기반정보관련전산망운영(정보화)		239	228	228	205	-23	-10.1%
					[504]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39	228	228	205	-23	-10.1%
				[1135]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089	984	984	1,177	193	19.6%
					[500]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089	984	984	1,177	193	19.6%
				[1137]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3,096	2,732	2,732	5,294	2,562	93.8%
					[500]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3,096	2,732	2,732	5,294	2,562	93.8%
				[1138]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64	544	544	544	0	0.0%
					[501]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64	544	544	544	0	0.0%
				[1139]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2,507	5,311	5,311	6,410	1,099	20.7%
					[307]지자체경쟁력지원	2,507	5,311	5,311	6,410	1,099	20.7%
				[1140]비영리민간단체지원		7,188	3,929	3,929	3,604	-325	-8.3%
					[300]비영리민간단체지원	7,188	3,929	3,929	3,604	-325	-8.3%
				[1142]새마을운동지원		5,944	6,039	6,039	6,645	606	10.0%
					[304]새마을운동지원	1,257	880	880	792	-88	-10.0%
					[305]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687	5,159	5,159	5,853	694	13.5%
				[1143]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585	700	700	369	-331	-47.3%
					[305]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285	290	290	180	-110	-37.9%
					[308]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300	210	210	189	-21	-10.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309]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0	200	200	0	-200	순감
					[1145]국민통합위원회 운영	8,834	7,747	7,747	8,073	326	4.2%
					[300]국민통합위원회 운영	8,834	7,747	7,747	8,073	326	4.2%
			[1200]지역발전			154,572	146,083	146,083	26,146	-119,937	-82.1%
					[123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13,889	7,937	7,937	0	-7,937	
					[300]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13,889	7,937	7,937	0	-7,937	순감
					[123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10,049	110,101	110,101	0	-110,101	
					[30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10,049	110,101	110,101	0	-110,101	이관
					[1234]생활공감정책추진	260	261	261	260	-1	-0.4%
					[300]생활공감정책추진	260	261	261	260	-1	-0.4%
					[1237]도로명주소사업추진	24,754	22,726	22,726	21,023	-1,703	-7.5%
					[300]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8,053	19,861	19,861	18,665	-1,196	-6.0%
					[501]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6,701	2,865	2,865	2,358	-507	-17.7%
					[1242]한국 섬 진흥원 지원	5,620	5,058	5,058	4,863	-195	-3.9%
					[300]한국섬진흥원 지원	5,620	5,058	5,058	4,863	-195	-3.9%
			[1300]지방재정경제			24,589	26,909	26,909	26,302	-607	-2.3%
					[1331]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701	1,185	1,185	1,157	-28	-2.4%
					[300]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701	1,185	1,185	1,157	-28	-2.4%
					[1332]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432	5,620	5,620	7,208	1,588	28.3%
					[500]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432	5,620	5,620	7,208	1,588	28.3%
					[1333]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978	5,968	5,968	5,453	-515	-8.6%
					[500]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678	5,868	5,868	5,353	-515	-8.8%
					[503]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00	100	100	100	0	0.0%
					[1335]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4	94	94	156	62	66.0%
					[300]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4	94	94	156	62	66.0%
					[1336]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3,411	3,411	3,411	3,411	0	0.0%
					[301]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11	3,411	3,411	3,411	0	0.0%
					[1337]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9	3,587	3,587	3,587	0	0.0%
					[300]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9	3,587	3,587	3,587	0	0.0%
					[1338]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086	1,375	1,375	1,424	49	3.6%
					[300]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086	1,375	1,375	1,424	49	3.6%
					[1349]지역경제지원	2,298	5,669	5,669	3,906	-1,763	-31.1%
					[300]지역금융활성화	87	87	87	87	0	0.0%
					[301]지역경제활성화	2,211	5,582	5,582	3,819	-1,763	-31.6%
			[1400]지방자치인재개발			14,654	14,224	14,224	14,370	146	1.0%
					[1431]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5,917	5,659	5,659	5,817	158	2.8%
					[300]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4,840	4,492	4,492	4,666	174	3.9%
					[301]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857	919	919	1,011	92	10.0%
					[302]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220	248	248	140	-108	-43.5%
					[1432]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912	924	924	912	-12	-1.3%
					[500]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414	375	375	375	0	0.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501]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498	549	549	537	-12	-2.2%
					[1433]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7,825	7,641	7,641	7,641	0	0.0%
					[650]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7,825	7,641	7,641	7,641	0	0.0%
			[1500]이북5도			1,832	1,900	1,900	2,291	391	20.6%
					[1531]이북도민관련지원	1,832	1,900	1,900	2,291	391	20.6%
					[300]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452	519	519	613	94	18.1%
					[301]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272	469	469	469	0	0.0%
					[302]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108	912	912	1,209	297	32.6%
			[1600]지방교부세			67,119,414	66,759,324	66,759,324	67,038,505	279,181	0.4%
					[1631]보통교부세	59,475,700	59,843,917	59,843,917	60,401,769	557,852	0.9%
					[300]보통교부세	59,475,700	59,843,917	59,843,917	60,401,769	557,852	0.9%
					[1632]특별교부세	1,030,586	925,421	925,421	823,189	-102,232	-11.0%
					[300]지역현안특별교부세	824,469	740,337	740,337	658,551	-81,786	-11.0%
					[301]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6,117	185,084	185,084	164,638	-20,446	-11.0%
					[1633]부동산교부세	4,713,300	4,109,800	4,109,800	4,004,709	-105,091	-2.6%
					[300]부동산교부세	4,713,300	4,109,800	4,109,800	4,004,709	-105,091	-2.6%
					[1644]재난특별교부세	1,030,586	925,421	925,421	823,189	-102,232	-11.0%
					[300]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30,586	925,421	925,421	823,189	-102,232	-11.0%
					[1645]소방안전교부세	869,242	954,765	954,765	985,649	30,884	3.2%
					[300]소방안전교부세	869,242	954,765	954,765	985,649	30,884	3.2%
		[015]정부자원관리				747,098	752,785	752,785	792,534	39,749	5.3%
			[1800]인사관리			229	167	167	167	0	0.0%
					[1831]공무원단체건전육성	229	167	167	167	0	0.0%
					[306]공무원단체건전육성	229	167	167	167	0	0.0%
			[1900]정부혁신조직			26,834	19,988	19,988	25,132	5,144	25.7%
					[1931]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1,724	1,143	1,143	1,140	-3	-0.3%
					[300]정부조직진단관리	1,264	681	681	681	0	0.0%
					[301]책임운영기관제운영	460	462	462	459	-3	-0.6%
					[1932]민원처리개선(정보화)	12,508	6,899	6,899	11,132	4,233	61.4%
					[500]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517	537	537	537	0	0.0%
					[501]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11,657	6,290	6,290	10,530	4,240	67.4%
					[505]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334	72	72	65	-7	-9.7%
					[1933]행정효율성향상	10,393	9,454	9,454	10,435	981	10.4%
					[300]행정생산성향상지원	437	469	469	469	0	0.0%
					[302]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및대외신인도제고	445	713	713	488	-225	-31.6%
					[303]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417	2,521	2,521	2,629	108	4.3%
					[306]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09	747	747	773	26	3.5%
					[307]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6,061	4,420	4,420	5,492	1,072	24.3%
					[311]온라인 청원 시스템(정보화)	324	584	584	584	0	0.0%
					[1935]정보공개활성화	2,209	2,492	2,492	2,425	-67	-2.7%
					[305]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2,209	2,492	2,492	2,425	-67	-2.7%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2000]전자정부			720,035	732,630	732,630	767,235	34,605	4.7%
				[2031]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64,050	35,210	35,210	26,007	-9,203	-26.1%
					[500]전자정부지원(정보화)	47,391	12,589	12,589	0	-12,589	순감
					[501]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417	2,098	2,098	2,886	788	37.6%
					[504]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4,594	9,984	9,984	11,605	1,621	16.2%
					[505]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6,759	7,707	7,707	8,684	977	12.7%
					[506]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2,889	2,832	2,832	2,832	0	0.0%
				[2032]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12,859	12,854	12,854	16,439	3,585	27.9%
					[500]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859	12,854	12,854	15,510	2,656	20.7%
					[506]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0	0	0	929	929	순증
				[2033]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25,515	36,114	36,114	19,933	-16,181	-44.8%
					[500]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5,515	36,114	36,114	19,933	-16,181	-44.8%
				[2034]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4,164	2,982	2,982	3,568	586	19.7%
					[500]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4,164	2,982	2,982	3,568	586	19.7%
				[2035]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4,758	4,045	4,045	5,087	1,042	25.8%
					[506]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3,397	2,942	2,942	3,616	674	22.9%
					[507]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361	1,103	1,103	1,471	368	33.4%
				[2036]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388,380	487,417	487,417	530,196	42,779	8.8%
					[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21,157	235,767	235,767	272,149	36,382	15.4%
					[503]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57,127	74,686	74,686	83,099	8,413	11.3%
					[507]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10,096	151,814	151,814	173,334	21,520	14.2%
					[508]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0	25,150	25,150	1,614	-23,536	-93.6%
				[2038]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7,602	8,573	8,573	8,926	353	4.1%
					[302]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101	1,401	1,401	1,375	-26	-1.9%
					[501]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5,625	5,949	5,949	6,391	442	7.4%
					[507]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350	328	328	328	0	0.0%
					[508]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526	895	895	832	-63	-7.0%
				[2039]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9,142	11,633	11,633	22,116	10,483	90.1%
					[500]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4,189	4,790	4,790	6,347	1,557	32.5%
					[504]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4,953	6,843	6,843	10,377	3,534	51.6%
					[506]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0	0	0	5,392	5,392	순증
				[2040]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8,905	6,796	6,796	7,358	562	8.3%
					[501]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5,184	4,860	4,860	4,998	138	2.8%
					[504]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2,881	1,136	1,136	1,021	-115	-10.1%
					[505]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840	800	800	1,339	539	67.4%
				[2041]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62	4,446	4,446	4,001	-445	-10.0%
					[502]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62	3,910	3,910	4,001	91	2.3%
					[503]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운영(정보화)	0	536	536	0	-536	순감
				[2042]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76,648	16,007	16,007	9,058	-6,949	-43.4%
					[500]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76,648	16,007	16,007	9,058	-6,949	-43.4%
				[2045]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14,952	14,993	14,993	16,642	1,649	11.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500]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4,952	14,993	14,993	16,642	1,649	11.0%
				[2046]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90,566	75,309	75,309	72,905	-2,404	-3.2%
					[502]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41,683	44,925	44,925	41,634	-3,291	-7.3%
					[503]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23,024	14,665	14,665	15,008	343	2.3%
					[504]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12,282	5,368	5,368	7,653	2,285	42.6%
					[507]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13,577	10,351	10,351	8,610	-1,741	-16.8%
				[2047]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8,532	16,251	16,251	24,999	8,748	53.8%
					[500]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8,532	16,251	16,251	24,999	8,748	53.8%
		[016]일반행정				931,851	995,040	995,040	1,000,292	5,252	0.5%
			[2100]정부의전			12,289	14,075	14,075	17,726	3,651	25.9%
				[2131]국가의정관리		12,289	14,075	14,075	17,726	3,651	25.9%
					[300]국경일등정부행사	1,449	1,805	1,805	4,924	3,119	172.8%
					[301]정부포상	9,201	10,316	10,316	10,755	439	4.3%
					[302]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424	441	441	323	-118	-26.8%
					[303]국가상징선양	140	147	147	776	629	427.9%
					[307]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1,075	1,366	1,366	948	-418	-30.6%
			[2200]청사관리			211,836	235,910	235,910	227,123	-8,787	-3.7%
				[2231]정부청사시설관리		207,241	230,217	230,217	221,430	-8,787	-3.8%
					[300]청사시설유지보수	61,063	59,328	59,328	62,777	3,449	5.8%
					[301]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1,990	18,041	18,041	16,227	-1,814	-10.1%
					[302]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9,529	135,204	135,204	139,093	3,889	2.9%
					[303]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4,659	17,644	17,644	2,953	-14,691	-83.3%
					[500]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0	0	0	380	380	순증
				[2232]공무원통근버스운행		4,595	5,693	5,693	5,693	0	0.0%
					[305]공무원통근버스운행	4,595	5,693	5,693	5,693	0	0.0%
			[2300]기록물관리			45,037	44,225	44,225	45,336	1,111	2.5%
				[2331]기록물효율적관리		16,603	16,991	16,991	17,144	153	0.9%
					[303]국가기록물정리	12,225	12,161	12,161	12,314	153	1.3%
					[306]기록물보존복원	4,378	4,830	4,830	4,830	0	0.0%
				[2332]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9,019	8,240	8,240	7,895	-345	-4.2%
					[500]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274	193	193	302	109	56.5%
					[501]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394	3,969	3,969	4,089	120	3.0%
					[502]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351	4,078	4,078	3,504	-574	-14.1%
				[2333]기록관리정책및교육		2,912	2,976	2,976	2,823	-153	-5.1%
					[300]기록관리정책및교육	2,912	2,976	2,976	2,823	-153	-5.1%
				[2334]기록정보서비스		1,142	1,244	1,244	1,746	502	40.4%
					[300]기록정보서비스	1,142	1,244	1,244	1,746	502	40.4%
				[2335]기록물보전시설관리		6,914	6,496	6,496	6,969	473	7.3%
					[302]기록관보존시설관리	6,914	6,496	6,496	6,969	473	7.3%
				[2336]기록물보존기술연구		925	200	200	400	200	100.0%
					[301]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925	200	200	400	200	100.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2337]대통령기록관리		7,522	8,078	8,078	8,359	281	3.5%
					[304]대통령기록관리	7,522	8,078	8,078	8,359	281	3.5%
			[2400]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81,192	317,549	317,549	321,960	4,411	1.4%
				[2431]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07,932	256,738	256,738	265,200	8,462	3.3%
					[300]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995	1,055	1,055	1,070	15	1.4%
					[301]과거사관련사업지원	13,679	13,364	13,364	10,461	-2,903	-21.7%
					[303]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710	16,121	16,121	11,792	-4,329	-26.9%
					[306]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183,548	226,198	226,198	241,877	15,679	6.9%
				[2432]강제동원진상규명		7,806	9,476	9,476	8,527	-949	-10.0%
					[300]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6,572	8,134	8,134	7,744	-390	-4.8%
					[302]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1,234	1,342	1,342	783	-559	-41.7%
				[2433]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2,762	2,858	2,858	2,578	-280	-9.8%
					[300]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762	2,858	2,858	2,578	-280	-9.8%
				[243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34,985	16,787	16,787	8,033	-8,754	-52.1%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34,985	16,787	16,787	8,033	-8,754	-52.1%
				[2435]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7,745	24,116	24,116	30,864	6,748	28.0%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7,745	24,116	24,116	30,864	6,748	28.0%
				[2436]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672	2,209	2,209	1,954	-255	-11.5%
					[300]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672	2,209	2,209	1,954	-255	-11.5%
				[2437]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5,290	5,365	5,365	4,804	-561	-10.5%
					[300]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5,290	5,365	5,365	4,804	-561	-10.5%
			[7000]행정안전행정지원			381,497	383,281	383,281	388,147	4,866	1.3%
				[7001]본부인건비		171,379	179,528	179,528	182,338	2,810	1.6%
					[100]인건비(본부)	171,379	179,528	179,528	182,338	2,810	1.6%
				[7002]소속기관인건비		132,699	146,370	146,370	149,563	3,193	2.2%
					[102]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6,465	7,499	7,499	7,875	376	5.0%
					[103]인건비(기록)	17,518	19,139	19,139	18,952	-187	-1.0%
					[104]인건비(청사)	68,168	73,406	73,406	73,568	162	0.2%
					[105]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10	23,090	23,090	24,657	1,567	6.8%
					[106]인건비(이북)	3,661	3,654	3,654	3,992	338	9.3%
					[107]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3,128	3,748	3,748	3,639	-109	-2.9%
					[108]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7,666	8,261	8,261	9,272	1,011	12.2%
					[109]인건비(대통령기록관)	6,249	7,293	7,293	7,381	88	1.2%
					[156]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234	280	280	227	-53	-18.9%
				[7011]본부기본경비		21,928	23,895	23,895	24,135	240	1.0%
					[200]기관운영(총액)	6,848	6,231	6,231	5,927	-304	-4.9%
					[201]대변인실(총액)	65	69	69	71	2	2.9%
					[202]의정관실(총액)	19	29	29	29	0	0.0%
					[203]감사관실(총액)	53	62	62	62	0	0.0%
					[204]기획조정실(총액)	163	187	187	172	-15	-8.0%
					[205]정부혁신조직실(총액)	74	74	74	74	0	0.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206]전자정부국(총액)	117	139	139	135	-4	-2.9%
					[207]차관보실(총액)	325	375	375	316	-59	-15.7%
					[208]지방재정경제실(총액)	189	258	258	194	-64	-24.8%
					[209]인사기획관실(총액)	20	17	17	15	-2	-11.8%
					[21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총액)	31	32	32	32	0	0.0%
					[21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총액)	53	60	60	59	-1	-1.7%
					[212]안전정책실기본경비(총액)	136	144	144	146	2	1.4%
					[213]재난관리실기본경비(총액)	198	246	246	224	-22	-8.9%
					[214]사회재난실(총액)	137	189	189	172	-17	-9.0%
					[21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총액)	93	100	100	97	-3	-3.0%
					[225]경찰국기본경비(총액)	10	10	10	10	0	0.0%
					[24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8	77	77	77	0	0.0%
					[250]기관운영	1,057	1,466	1,466	1,633	167	11.4%
					[251]대변인실	252	274	274	357	83	30.3%
					[252]의정관실	173	220	220	250	30	13.6%
					[253]감사관실	488	557	557	587	30	5.4%
					[254]기획조정실	1,145	1,460	1,460	1,568	108	7.4%
					[255]정부혁신조직실	485	661	661	691	30	4.5%
					[256]전자정부국	404	533	533	572	39	7.3%
					[257]차관보실	1,257	1,350	1,350	1,412	62	4.6%
					[258]지방재정경제실	892	1,076	1,076	1,166	90	8.4%
					[259]인사기획관실	416	521	521	525	4	0.8%
					[26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	199	244	244	244	0	0.0%
					[26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73	94	94	94	0	0.0%
					[262]안전정책실기본경비	458	577	577	618	41	7.1%
					[263]재난관리실기본경비	704	876	876	925	49	5.6%
					[264]사회재난실기본경비	416	643	643	673	30	4.7%
					[26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6	266	266	282	16	6.0%
					[275]경찰국기본경비	128	97	97	97	0	0.0%
					[296]불우소외계층격려	1,899	1,954	1,954	1,954	0	0.0%
					[297]재외주재관지원	967	1,045	1,045	993	-52	-5.0%
					[29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1,720	1,682	1,682	1,682	0	0.0%
				[7018]소속기관기본경비		12,236	10,020	10,020	10,317	297	3.0%
					[20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287	324	324	298	-26	-8.0%
					[204]기록원기본경비(총액)	390	471	471	451	-20	-4.2%
					[20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총액)	121	141	141	152	11	7.8%
					[206]청사기본경비(총액)	1,130	1,151	1,151	1,194	43	3.7%
					[208]이북5도기본경비(총액)	908	1,054	1,054	1,048	-6	-0.6%
					[209]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130	129	129	118	-11	-8.5%
					[21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386	444	444	463	19	4.3%
					[25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677	614	614	634	20	3.3%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254]기록원기본경비	607	723	723	677	-46	-6.4%
					[25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	22	35	35	52	17	48.6%
					[256]청사기본경비	4,349	1,492	1,492	1,512	20	1.3%
					[258]이북5도기본경비	2,981	3,126	3,126	3,276	150	4.8%
					[259]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196	262	262	369	107	40.8%
					[26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52	54	54	73	19	35.2%
				[7031]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4,744	4,491	4,491	5,792	1,301	29.0%
					[500]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4,744	4,491	4,491	5,792	1,301	29.0%
				[7032]정책연구개발		1,117	922	922	922	0	0.0%
					[300]정책연구개발	1,117	922	922	922	0	0.0%
				[7033]부내행정지원		34,149	6,722	6,722	6,896	174	2.6%
					[300]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333	3,369	3,369	3,417	48	1.4%
					[301]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1,469	1,769	1,769	1,777	8	0.5%
					[302]세종청사 이전 지원	32,347	1,584	1,584	1,702	118	7.4%
				[7034]국제행정발전지원		664	2,545	2,545	668	-1,877	-73.8%
					[303]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664	2,545	2,545	668	-1,877	-73.8%
				[7036]국민안전방송운영		777	804	804	821	17	2.1%
					[300]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777	804	804	821	17	2.1%
				[7037]재난상황관리		1,804	7,984	7,984	6,695	-1,289	-16.1%
					[300]중앙안전상황실운영	1,804	7,984	7,984	6,695	-1,289	-16.1%
	[020]공공질서및안전					573,542	1,020,566	1,020,566	783,649	-236,917	-23.2%
		[023]경찰				64,513	66,326	66,326	68,252	1,926	2.9%
			[2500]과학수사			64,513	66,326	66,326	68,252	1,926	2.9%
				[2501]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32,285	34,976	34,976	37,618	2,642	7.6%
					[108]인건비(국과수)	32,285	34,976	34,976	37,618	2,642	7.6%
				[2511]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5,209	4,464	4,464	5,326	862	19.3%
					[200]국과수기본경비(총액)	4,963	4,136	4,136	3,968	-168	-4.1%
					[250]국과수기본경비	246	328	328	1,358	1,030	314.0%
				[2531]과학수사활동지원		17,565	20,378	20,378	17,523	-2,855	-14.0%
					[303]과학수사감정지원	10,287	11,009	11,009	12,360	1,351	12.3%
					[304]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7,278	9,369	9,369	5,163	-4,206	-44.9%
				[2532]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3,387	845	845	1,742	897	106.2%
					[500]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3,387	845	845	1,742	897	106.2%
				[2533]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6,067	5,663	5,663	6,043	380	6.7%
					[300]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6,067	5,663	5,663	6,043	380	6.7%
		[025]재난관리				509,029	954,240	954,240	715,397	-238,843	-25.0%
			[2600]안전관리			37,344	46,921	46,921	36,062	-10,859	-23.1%
				[2631]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11,193	7,247	7,247	8,052	805	11.1%
					[301]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7,531	2,732	2,732	3,204	472	17.3%
					[303]재난안전산업활성화	2,536	2,981	2,981	3,124	143	4.8%
					[304]재난안전사업평가	359	1,266	1,266	1,466	200	15.8%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305]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767	268	268	258	-10	-3.7%
				[2632]생활안전개선 추진		12,537	22,799	22,799	15,592	-7,207	-31.6%
					[301]국민안전의식선진화	5,611	2,593	2,593	3,032	439	16.9%
					[302]4.16재단지원	530	330	330	330	0	0.0%
					[303]지역안전개선컨설팅	1,139	6,576	6,576	5,758	-818	-12.4%
					[305]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692	450	450	600	150	33.3%
					[306]승강기안전관리개선	4,565	12,850	12,850	5,872	-6,978	-54.3%
				[2633]민방위재난안전교육		4,724	3,304	3,304	3,354	50	1.5%
					[300]재난안전교육원운영	4,724	3,304	3,304	3,354	50	1.5%
				[2634]비상시대비능력강화		8,890	13,571	13,571	9,064	-4,507	-33.2%
					[300]비상대비훈련	901	1,028	1,028	1,040	12	1.2%
					[301]동원자원관리	612	661	661	763	102	15.4%
					[303]B-1정부노후시설정비	784	916	916	353	-563	-61.5%
					[304]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6,427	10,794	10,794	6,736	-4,058	-37.6%
					[305]비상대비담당자선발	166	172	172	172	0	0.0%
			[2700]재난관리			239,216	674,727	674,727	438,640	-236,087	-35.0%
				[2731]재난관리인프라구축		9,851	11,127	11,127	11,230	103	0.9%
					[30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479	522	522	551	29	5.6%
					[301]재난관리평가지원	635	644	644	655	11	1.7%
					[304]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839	2,400	2,400	2,110	-290	-12.1%
					[305]재난관리국제협력	2,126	2,179	2,179	2,403	224	10.3%
					[307]지진대비인프라구축	3,772	5,382	5,382	5,511	129	2.4%
				[2733]재난경감활성화		9,066	15,765	15,765	8,314	-7,451	-47.3%
					[300]자연재해저감 역량강화	169	244	244	272	28	11.5%
					[303]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147	2,021	2,021	2,042	21	1.0%
					[308]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사업	6,750	13,500	13,500	0	-13,500	순감
					[310]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0	0	0	6,000	6,000	순증
				[2734]재난복구지원		218,519	646,724	646,724	417,324	-229,400	-35.5%
					[300]재난대책비(보조)	168,453	600,040	600,040	360,020	-240,020	-40.0%
					[301]재난구호지원	950	1,000	1,000	900	-100	-10.0%
					[302]풍수해·지진재해보험	36,360	38,045	38,045	48,994	10,949	28.8%
					[303]재난심리회복지원	1,151	1,190	1,190	940	-250	-21.0%
					[314]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8,439	5,678	5,678	5,618	-60	-1.1%
					[317]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3,166	771	771	852	81	10.5%
				[2735]재난관리지원		1,780	1,111	1,111	1,772	661	59.5%
					[300]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409	263	263	305	42	16.0%
					[301]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455	251	251	303	52	20.7%
					[304]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916	503	503	619	116	23.1%
					[309]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0	94	94	545	451	479.8%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94,591	85,613	85,613	92,505	6,892	8.1%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90,805	81,312	81,312	88,985	7,673	9.4%
					[509]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R&D)	0	1,600	1,600	2,650	1,050	65.6%
					[513]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0	1,500	1,500	1,620	120	8.0%
					[517]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0	1,040	1,040	1,976	936	90.0%
					[520]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0	0	0	2,000	2,000	순증
					[52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0	0	0	1,270	1,270	순증
					[527]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 성분석기술개발(R&D)	0	0	0	1,500	1,500	순증
					[529]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 설계기준고도화(R&D)	0	0	0	1,491	1,491	순증
					[610]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5,743	14,311	14,311	14,411	100	0.7%
					[61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937	937	937	482	-455	-48.6%
					[627]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9,250	11,060	11,060	11,867	807	7.3%
					[628]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9,500	7,590	7,590	3,180	-4,410	-58.1%
					[629]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5,050	4,450	4,450	3,058	-1,392	-31.3%
					[630]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2,100	1,170	1,170	0	-1,170	순감
					[631]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6,500	5,500	5,500	3,870	-1,630	-29.6%
					[632]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3,600	2,344	2,344	2,110	-234	-10.0%
					[634]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R&D)	3,900	3,400	3,400	520	-2,880	-84.7%
					[635]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3,200	2,160	2,160	1,630	-530	-24.5%
					[638]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7,325	5,060	5,060	9,570	4,510	89.1%
					[640]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4,100	4,100	4,100	8,100	4,000	97.6%
					[641]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3,200	3,950	3,950	5,100	1,150	29.1%
					[642]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2,400	4,140	4,140	6,080	1,940	46.9%
					[644]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1,500	4,500	4,500	6,500	2,000	44.4%
					[646]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R&D)	2,500	2,500	2,500	0	-2,500	순감
				[2932]재난안전연구지원		3,786	4,301	4,301	3,520	-781	-18.2%
					[300]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1,975	2,219	2,219	1,190	-1,029	-46.4%
					[301]재난안전연구원운영	1,416	1,668	1,668	1,649	-19	-1.1%
					[302]재난안전정책서비스	395	414	414	414	0	0.0%
					[305]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0	0	0	267	267	순증
			[3000]재난안전정보화			137,878	146,979	146,979	148,190	1,211	0.8%
				[3031]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121,925	131,356	131,356	127,779	-3,577	-2.7%
					[501]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379	18,592	18,592	15,027	-3,565	-19.2%
					[502]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4,546	112,764	112,764	112,752	-12	-0.0%
				[3032]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15,953	15,623	15,623	20,411	4,788	30.6%
					[500]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4,902	4,541	4,541	7,904	3,363	74.1%
					[501]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4,681	3,376	3,376	2,343	-1,033	-30.6%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502]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507	591	591	509	-82	-13.9%
					[503]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3,414	3,583	3,583	4,156	573	16.0%
					[505]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449	281	281	424	143	50.9%
					[509]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0	3,251	3,251	5,075	1,824	56.1%
[39]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14,650	2,688,538	2,688,538	2,363,064	-325,474	-12.1%
	[010]일반·지방행정					1,703,165	1,647,843	1,647,843	1,391,998	-255,845	-15.5%
		[013]지방행정·재정지원				1,683,029	1,628,568	1,628,568	1,383,083	-245,485	-15.1%
			[1100]지방자치분권			27,780	26,987	26,987	25,759	-1,228	-4.6%
				[1131]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30	27	27	27	0	0.0%
					[304]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30	27	27	27	0	0.0%
				[1131]지자체자율통합지원		14,241	11,797	11,797	10,575	-1,222	-10.4%
					[300]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4,241	11,797	11,797	10,575	-1,222	-10.4%
				[1132]지자체역량강화		0	1,636	1,636	1,836	200	12.2%
					[325]지방시대위원회운영	0	1,636	1,636	1,836	200	12.2%
				[1141]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09	13,527	13,527	13,321	-206	-1.5%
					[302]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09	13,527	13,527	13,321	-206	-1.5%
			[1200]지역발전			1,302,709	1,301,581	1,301,581	1,357,324	55,743	4.3%
				[1231]광역경제권추진지원		5,895	10,128	10,128	5,528	-4,600	-45.4%
					[302]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55	200	200	200	0	0.0%
					[303]지역발전활성화	5,740	9,928	9,928	5,328	-4,600	-46.3%
				[1231]특수상황지역개발		216,488	210,498	210,498	194,260	-16,238	-7.7%
					[300]특수상황지역개발	216,488	210,498	210,498	194,260	-16,238	-7.7%
				[123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30	3,078	3,078	5,026	1,948	63.3%
					[30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30	3,078	3,078	5,026	1,948	63.3%
				[1232]접경권발전지원		50,908	49,849	49,849	0	-49,849	
					[300]접경권발전지원	50,908	49,849	49,849	0	-49,849	이관
				[1232]지역경관개선지원		0	0	0	10,000	10,000	
					[300]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0	0	0	10,000	10,000	이관
				[1233]접경권발전지원		0	0	0	45,627	45,627	
					[300]접경권발전지원(자율)	0	0	0	45,627	45,627	이관
				[123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0	0	0	61,797	61,797	
					[30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0	0	0	61,797	61,797	이관
				[1235]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0	400	400	9,818	9,418	2354.5%
					[301]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0	400	400	9,818	9,418	2354.5%
				[1236]서해5도종합발전지원		7,484	8,820	8,820	8,540	-280	-3.2%
					[300]서해5도종합발전지원	7,484	8,820	8,820	8,540	-280	-3.2%
				[124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519	10,883	10,883	11,478	595	5.5%
					[300]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519	10,883	10,883	11,478	595	5.5%
				[1247]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8,385	7,925	7,925	5,250	-2,675	-33.8%
					[301]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8,385	7,925	7,925	5,250	-2,675	-33.8%
				[1261]지방소멸대응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0.0%

(단위: 백만원)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4년 추경	25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300]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0.0%
			[1300]지방재정경제			352,540	300,000	300,000	0	-300,000	
				[1349]지역경제지원		352,540	300,000	300,000	0	-300,000	
					[306]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2,540	300,000	300,000	0	-300,000	순감
		[015]정부자원관리				20,136	19,275	19,275	8,915	-10,360	-53.7%
			[1900]정부혁신조직			20,136	19,275	19,275	8,915	-10,360	-53.7%
				[1938]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20,136	19,275	19,275	8,915	-10,360	-53.7%
					[301]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0,136	19,275	19,275	8,915	-10,360	-53.7%
	[020]공공질서및안전					796,198	956,164	956,164	946,527	-9,637	-1.0%
		[025]재난관리				796,198	956,164	956,164	946,527	-9,637	-1.0%
			[2600]안전관리			786,938	948,144	948,144	940,927	-7,217	-0.8%
				[2635]재난예방지원		781,615	941,211	941,211	934,809	-6,402	-0.7%
					[300]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703,118	869,667	869,667	874,154	4,487	0.5%
					[301]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78,497	71,544	71,544	60,655	-10,889	-15.2%
				[2638]재난예방지원		5,323	6,933	6,933	6,118	-815	-11.8%
					[302]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5,323	6,933	6,933	6,118	-815	-11.8%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9,260	8,020	8,020	5,600	-2,420	-30.2%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9,260	8,020	8,020	5,600	-2,420	-30.2%
					[625]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R&D)	9,260	5,620	5,620	0	-5,620	순감
					[626]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0	2,400	2,400	5,600	3,200	133.3%
	[080]사회복지					215,287	84,531	84,531	24,539	-59,992	-71.0%
		[082]취약계층지원				215,287	84,531	84,531	24,539	-59,992	-71.0%
			[3100]일자리지원			215,287	84,531	84,531	24,539	-59,992	-71.0%
				[3131]지역일자리창출		215,287	84,531	84,531	24,539	-59,992	-71.0%
					[301]마을기업육성사업	6,955	2,695	2,695	1,675	-1,020	-37.8%
					[301]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9,165	6,186	6,186	3,011	-3,175	-51.3%
					[30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9,167	75,650	75,650	19,853	-55,797	-73.8%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각각 전년과 동일하게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 및 ‘디지털 플랫폼정부, 골고루 잘사는 지역,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행정안전부는 임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전략목표(① ‘일 잘하고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②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④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⑤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⑥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와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상 16개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94개, 세부사업은 총 199개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및 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6	16	94	199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p.6.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

<성과관리대상/ 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처 소관 (C)	타부처 소관 (D)	계 (C+D)	비율
총 계(A+B)		72,087,193	30,091	72,117,284	100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3,510,232	-	3,510,232	4.9
	정보화	954,172	-	954,172	1.3
	R&D	101,028	-	101,028	0.1
	소계(A)	4,565,432	-	4,565,432	6.3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69,519	-	369,519	0.5
	기본경비	61,567	-	61,567	0.1
	교부금	67,050,604	-	67,050,604	93
	예비비	-	-	-	-
	차입이자 상환	-	-	-	-
	내부거래	-	-	-	-
	보전지출	-	-	-	-
	기타	40,071	30,091	70,162	0.1
	소계(B)	67,521,761	30,091	67,551,852	93.7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p.14.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소관	기금명	성과관리 대상사업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계	비율
총계		-	30,091	30,091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5,000	5,000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	10,000	10,000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	15,091	15,091	-

주 1) 복권기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6333-330) 50억원
2) 기후대응기금: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6132-500) 100억원
3) 국유재산관리기금: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2631-403) 134억 3,100만원,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2631-560) 16억 6,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p.14.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체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5예산안
전략목표 Ⅰ. 일 잘하고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792,598
프로그램목표 Ⅰ-1.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34,047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일반회계	1900-1932	11,132
	행정효율성향상	일반회계	1900-1933	10,435
	정보공개활성화	일반회계	1900-1935	2,425
	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일반회계	1900-1931	1,140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00-1938	8,915
프로그램목표 Ⅰ-2.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758,551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1	17,323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2	16,439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3	19,933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4	3,568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5	5,087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6	530,196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8	8,926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9	22,116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0	7,358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1	4,001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일반회계	2000-2042	9,058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2000-2045	16,642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6	72,905
	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7	24,999
전략목표 Ⅱ.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405,679
프로그램목표 Ⅱ-1.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45,422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일반회계	1100-1131	6,195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5	1,177
	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7	5,294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8	544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일반회계	1100-1139	6,410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일반회계	1100-1140	3,604
	새마을운동지원	일반회계	1100-1142	6,645
	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일반회계	1100-1143	369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1	27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41	13,321
	지자체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2	1,836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5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Ⅱ-2.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26,302
지방재정경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2	7,208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3	5,453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일반회계	1300-1331	1,157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일반회계	1300-1335	156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일반회계	1300-1336	3,411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일반회계	1300-1337	3,587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일반회계	1300-1338	1,424
	지역경제지원	일반회계	1300-1349	3,906
프로그램목표 Ⅱ-3.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9,704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400-1432	9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1400-1433	7,6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일반회계	1400-1431	1,151
프로그램목표 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2,291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일반회계	1500-1531	2,291
프로그램목표 Ⅱ-5.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공동체 화합에 기여한다.				321,960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일반회계	2400-2431	265,200
	강제동원진상규명	일반회계	2400-2432	8,527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일반회계	2400-2433	2,5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일반회계	2400-2434	8,0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일반회계	2400-2435	30,864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일반회계	2400-2436	1,954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일반회계	2400-2437	4,804
전략목표 Ⅲ.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08,009
프로그램목표 Ⅲ-1.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383,470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94,26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2	0
	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회계	1200-1234	260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5,528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5	9,818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6	8,540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7	5,250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200-1242	4,863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61	1,000,000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2	10,000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5예산안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00-1233	45,62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00-1233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회계	1200-1233	0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1200-1237	21,023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00-1241	11,478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00-1231	5,026
프로그램목표 Ⅲ-2.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24,539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100-3131	21,528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100-3131	3,011
전략목표 Ⅳ.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297,767
프로그램목표 Ⅳ-1.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45,336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일반회계	2300-2331	17,144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300-2332	7,895
	기록관리정책및교육	일반회계	2300-2333	2,823
	기록정보서비스	일반회계	2300-2334	1,746
	기록물보전시설관리	일반회계	2300-2335	6,969
	기록물보존기술연구	일반회계	2300-2336	400
	대통령기록관리	일반회계	2300-2337	8,359
프로그램목표 Ⅳ-2. 효과적인 정부청사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편의를 높인다.				227,123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일반회계	2200-2231	221,430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일반회계	2200-2232	5,693
프로그램목표 Ⅳ-3.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한다.				25,308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일반회계	2500-2531	17,523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500-2532	1,742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3	6,043
전략목표 Ⅴ.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075,094
프로그램목표 Ⅴ-1.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976,989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2600-2631	8,052
	생활안전개선 추진	일반회계	2600-2632	15,592
	민방위재난안전교육	일반회계	2600-2633	3,354
	비상시대비능력강화	일반회계	2600-2634	9,064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00-2638	6,118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00-2635	934,809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5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Ⅴ-2. 국민안전 기술을 과학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98,105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2900-2931	88,985
	재난안전연구지원	일반회계	2900-2932	3,520
	재난안전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00-2931	5,600
전략목표 Ⅵ.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586,285
프로그램목표 Ⅵ-1.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438,095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700-2731	11,230
	재난경감활성화	일반회계	2700-2733	8,314
	재난복구지원	일반회계	2700-2734	417,324
	재난관리지원	일반회계	2700-2735	1,227
프로그램목표 Ⅵ-2. 재난정보화 업무를 통해 재난상황 및 환경변화를 빠르게 대응한다.				148,190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1	127,779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2	20,411
총 계				4,565,432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p.301.

(5) 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총 4개, 33억 1,000만원 규모임.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의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내역사업(5억 200만원)은 지자체 여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②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세부사업(6억 1,300만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③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18억 9,000만원)은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여성 교육생이 재난관리 분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④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세부사업(3억 500만원)은 사회재난교육에 대한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502	502	-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19	613	94	18.1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100	1,890	-210	-10.0
	4)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63	305	42	16.0
총 계		3,384	3,310	-74	-2.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pp.183-184.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행정안전부 해당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5년도 신규사업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등 9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5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계	19,229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2032-506)	929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시스템인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재구축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	5,392	▪ 각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정부적 AI 서비스 제공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2231-500)	380	▪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의 세종청사 외 다른 청사 확산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보조)(2733-310)	6,000	▪ 침수에 취약한 하상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원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2931-520)	2,000	▪ 도시지역 태풍·강품·용오름 등의 피해예측·경보 및 피해 관리 기술 개발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2931-524)	1,270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R&D 공동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비 지원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2931-527)	1,500	▪ 드론 등을 활용한 급경사지 붕괴 징후 관찰 및 위험성 분석 기술 개발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2931-529)	1,491	▪ 신생대 제4기 단층(활성단층) 지역의 지질·지반조사 및 지진위험지도 작성 등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2932-305)	267	▪ 환경 변화로 인한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주) 단순 이관사업 및 2023년 이전 편성 이력이 있었던 사업 제외

나. 2024년도 종료사업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종료사업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사 유
계	38,43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1143-309)	200	▪ 당초 직능인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는 단년도 한시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1232-300)	7,937	▪ 평택지역개발계획(2006년~2024년)상 사업기간 만료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12,589	▪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종료하고,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운영(정보화)(2041-503)	536	▪ 당초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 개별 인허가시스템들을 연계하는 단년도 BPR/ISP 수립 사업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사업(2733-308)	13,500	▪ 당초 2023~2024년 2년 한시사업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2931-630)	1,170	▪ 사업계획상 연구기간 만료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R&D)(2931-625)	5,620	▪ 사업계획상 연구기간 만료

주) 단순 이관 및 통폐합사업 제외

Ⅱ. 검토의견

Ⅱ-1. 총괄: 주요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액은 1조 7,488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39개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에서는 21개의 사업(4,126억 5,800만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18개 사업(1조 3,36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39개)				2,455,324	1,748,832	-706,492
-	일반회계(21개)			690,661	412,658	-278,0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8개)			1,764,663	1,336,174	-428,489
1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139-307)	330-01	800	1,650	850
			330-03	800	350	-450
종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1232-300)	330-03	7,937	-	-7,937
2		생활공감정책추진 (1234-300)	330-01	135	135	-
3		지역경제활성화 (1349-301)	330-01	4,785	3,060	-1,725
4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30-01	130	117	-13
5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운영 (2431-300)	330-01	60	60	-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6		과거사 관련 사업지원 (2431-301)	330-01	9,403	8,286	-1,117
			330-03	120	-	-120
7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 (2431-303)	330-01	940	770	-170
			330-03	10,969	6,810	-4,159
8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435-300)	330-01	3,642	3,642	-
			330-03	6,590	4,055	-2,535
종료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2436-300)	330-01	301	-	-301
9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2437-300)	330-01	2,415	2,166	-249
			330-03	80	80	-
10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31-303)	330-01	270	243	-27
11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632-301)	330-01	370	370	-
12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632-303)		2,000	935	-1,065
종료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30-01	7,520	-	-7,520
13		동원자원관리 (2634-301)	330-01	133	133	-
1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634-304)	330-01	1,923	1,731	-192
			330-03	6,852	3,818	-3,034
15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2731-307)	330-01	1,296	2,592	1,296
			330-03	1,467	-	-1,467
16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733-303)	330-01	980	980	-
17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보조) (2733-308)	330-03	13,500	6,000	-7,500
18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330-03	600,000	359,960	-240,040
19		재난구호지원 (2734-301)	330-01	1,000	900	-100
20		재난심리회복지원 (2734-303)	330-01	950	700	-250
21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2734-314)	330-01	3,293	3,115	-178
22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1231-300)	330-03	210,498	194,260	-16,238
23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232-300)	330-01	5,000	10,000	5,000
24		접경권발전지원(자율) (1233-300)	330-03	49,735	45,627	-4,108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25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131-301)	330-01	50	45	-5
			330-03	6,136	2,966	-3,170
26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131-300)	330-03	11,797	10,575	-1,222
27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330-01	10,149	9,716	-433
			330-03	500	-	-500
2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233-301)	330-03	110,101	61,797	-48,304
29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1235-301)	330-03	400	9,818	9,418
종료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330-01	1,000	-	-1,000
			330-03	4,501	-	-4,501
30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1236-300)	330-01	8,320	8,540	220
3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330-03	9,818	10,913	1,095
종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330-01	299,766	-	-299,766
32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330-01	2,500	2,500	-
			330-03	866,887	871,354	4,467
33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2635-301)	330-03	71,511	60,622	-10,889
34		마을기업육성사업 (3131-301)	330-01	2,695	1,475	-1,220
3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31-301)	330-01	75,211	19,545	-55,666
36	균특회계 (제주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1131-304)	330-01	27	27	-
37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231-301)	330-03	3,078	5,026	1,948
38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1247-301)	330-03	7,925	5,250	-2,675
39	균특회계 (세종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2638-302)	330-03	6,933	6,118	-815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도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1년까지는 매년 증액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8	1,222,396	1,323,437	1,481,052	1,481,030	100.0
2019	1,532,469	1,713,057	2,330,893	2,316,833	99.4
2020	1,557,255	15,969,055	16,873,878	16,839,866	99.8
2021	3,608,568	12,790,350	12,853,916	12,817,477	99.7
2022	2,416,805	2,519,221	3,076,035	3,066,326	99.7
2023	2,045,108	2,045,108	2,061,425	2,057,901	99.8
2024	2,455,324	2,455,324	-	-	-
2025안	1,748,832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보조사업 예산액의 감소는 ① 코로나 안정화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감액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② 2024년 재난에 대한 2년차 복구비 소요가 감소한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주요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 (B-A)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안 (B)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본예산(A)		
균특회계	지역사랑상품 권발행지원	1,052,160	200,000	605,000	100,000	352,216	299,766	-	-299,766
일반회계	재난대책비 (보조)	820,000	820,000	100,000	100,000	150,000	600,000	359,960	-240,040
균특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4,155	244,199	238,766	238,766	198,558	75,211	19,545	-55,666
일반회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105,402	105,402	107,670	105,070	111,049	110,101	61,797	-48,304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202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액**된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50억원 증액),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94억 1,800만원 증액) 등 7개이고,

감액된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전술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재난대책비(보조) 외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556억 6,600만원 감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483억 400만원 감액) 등 31개임.

[2025년 예산안 증액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892,203	920,151	27,948
1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139-307)	330-01	800	1,650	850
			330-03	800	350	-450
2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232-300)	330-01	5,000	10,000	5,00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3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1235-301)	330-03	400	9,818	9,418
4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1236-300)	330-01	8,320	8,540	220
5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330-03	9,818	10,913	1,095
6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330-01	2,500	2,500	-
			330-03	866,887	871,354	4,467
7	균특회계 (제주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231-301)	330-03	3,078	5,026	1,948

[2025년 예산안 감액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1,561,416	826,976	-734,440
1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1232-300)	330-03	7,937	-	-7,937
2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1349-301)	330-01	4,785	3,060	-1,725
3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30-01	130	117	-13
4	일반회계	과거사 관련 사업지원 (2431-301)	330-01	9,403	8,286	-1,117
			330-03	120	-	-120
5	일반회계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 (2431-303)	330-01	940	770	-170
			330-03	10,969	6,810	-4,159
6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435-300)	330-01	3,642	3,642	-
			330-03	6,590	4,055	-2,535
7	일반회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2436-300)	330-01	301	-	-301
8	일반회계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2437-300)	330-01	2,415	2,166	-249
			330-03	80	80	-
9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31-303)	330-01	270	243	-27
10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632-303)		2,000	935	-1,065
11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30-01	7,520	-	-7,520
12	일반회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634-304)	330-01	1,923	1,731	-192
			330-03	6,852	3,818	-3,034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13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2731-307)	330-01	1,296	2,592	1,296
			330-03	1,467	-	-1,467
14	일반회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보조) (2733-308)	330-03	13,500	6,000	-7,500
15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330-03	600,000	359,960	-240,040
16	일반회계	재난구호지원 (2734-301)	330-01	1,000	900	-100
17	일반회계	재난심리회복지원 (2734-303)	330-01	950	700	-250
18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2734-314)	330-01	3,293	3,115	-178
19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1231-300)	330-03	210,498	194,260	-16,238
20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접경권발전지원(자율) (1233-300)	330-03	49,735	45,627	-4,108
21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131-301)	330-01	50	45	-5
			330-03	6,136	2,966	-3,170
22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131-300)	330-03	11,797	10,575	-1,222
23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330-01	10,149	9,716	-433
			330-03	500	-	-500
24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233-301)	330-03	110,101	61,797	-48,304
25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330-01	1,000	-	-1,000
			330-03	4,501	-	-4,501
26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330-01	299,766	-	-299,766
27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2635-301)	330-03	71,511	60,622	-10,889
28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마을기업육성사업 (3131-301)	330-01	2,695	1,475	-1,220
29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31-301)	330-01	75,211	19,545	-55,666
30	균특회계 (제주계정)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1247-301)	330-03	7,925	5,250	-2,675
31	균특회계 (세종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2638-302)	330-03	6,933	6,118	-815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도 예산안 내 500억 이상 주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의 2024년 7월 기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46.8%, 재난대책비(보조) 35.7%, 특수상황지역개발 73.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31.9%,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30.7%임.

[연도별 주요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30-03)	2020	436,253	437,777	437,777 <368,592>	84.2
		2021	519,773	519,773	519,773 <472,101>	90.8
		2022	615,037	615,037	615,037 <558,970>	90.9
		2023	703,256	703,256	703,118 <578,718>	75.9
		2024.7.	869,667	869,667	652,365 <405,310>	46.8
		2025안	874,154	-	-	-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330-03)	2020	35,975	435,975	1,125,360 <1,020,059>	90.6
		2021	842,469	842,469	842,469 <519,906>	61.7
		2022	100,000	632,117	632,117 <203,766>	32.2
		2023	150,000	150,000	167,107 <139,217>	92.8
		2024.7.	600,000	600,000	552,998 <214,406>	35.7
		2025안	359,960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개발 (1231-300) (330-03)	2020	202,121	202,121	202,121 <202,076>	99.9
		2021	208,862	208,862	193,309 <196,169>	93.9
		2022	205,045	205,045	220,598 <171,017>	83.4
		2023	216,488	216,488	216,488 <208,505>	96.3
		2024.7.	210,498	210,498	118,502 <155,226>	73.7
		2025안	194,260	-	-	-

회계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233-300) (330-03)	2020	88,872	79,992	80,116 <86,450>	107.9
		2021	105,402	105,402	105,295 <98,047>	93.1
		2022	107,670	105,070	105,070 <89,858>	85.5
		2023	111,049	111,049	110,049 <91,568>	82.5
		2024.7.	110,101	110,101	76,342 <35,147>	31.9
		2025안	61,797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 (2635-301) (330-03)	2020	69,510	57,510	57,510 <44,749>	77.8
		2021	69,510	69,510	69,510 <63,331>	91.1
		2022	69,510	69,510	69,510 <61,729>	88.8
		2023	78,464	78,464	78,464 <64,625>	82.4
		2024.7.	71,511	71,511	55,858 <21,940>	30.7
		2025안	60,655	-	-	-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보조사업은 없음.

□ 2024년 종료사업으로는 ①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② 코로나19 안정화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이 있음.

[종료 자치단체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종료 사유
2024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1232-300)	7,937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평택지역개발계획(2006년~2024년)상 사업기간 만료
2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299,76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발행액 일부 지원	·코로나 안정화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주도로 사업 전환

주) 단순 이관사업 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은 841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 18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73,088	84,129	11,041
1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140-300)	320-01	비영리민간단체 200개	3,250	2,925	-325
2	일반회계	새마을운동지원 (1142-304)	320-01	새마을운동중앙회	815	734	-81
3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320-01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공모기관	2,547	3,251	704
				새마을운동중앙회	2,017	2,007	-10
				새마을금고중앙회	462	462	-
				소 계	5,026	5,720	694
4	일반회계	행복한 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320-01	한국자유 총연맹	200	180	-20
5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143-308)	320-01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210	189	-21
종료	일반회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1143-309)	320-01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200	-	-200
6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20-01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428	391	-37
7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320-01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881	3,975	94
8	일반회계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2131-307)	320-01	(사)해위윤보선 대통령기념사업회	105	105	-
				(재)아름다운봉하	141	141	-
				소 계	246	246	-
9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320-01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1,891	1,718	-173
10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및운영(2432-300)	320-0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3,808	3,877	69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11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433-300)	320-01	부마민주항쟁재단	1,404	1,404	-
12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320-01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7,685	8,033	348
13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435-300)	320-01	공모 단체	1,300	1,300	-
14	일반회계	4.16재단지원 (2632-302)	320-01	4.16재단	330	330	-
15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20-0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3	56	-7
16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731-300)	320-01	전국자율 방재단연합회	45	45	-
17	일반회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731-304)	320-01	동의대학교(재난)	100	90	-10
				강원대학교(재난)	100	90	-10
				충북대학교(재난)	50	0	-50
				한성대학교(재난)	100	90	-10
				울산과기원(재난)	50	90	40
				숭실대학교(기업)	100	90	-10
				군산대학교(지진)	200	180	-20
				울산과기원(지진)	200	180	-20
				세종대학교(지진)	200	180	-20
				경북대학교(지진)	100	0	-100
				연세대학교(지진)	200	90	-110
				고려대학교(지진)	200	90	-110
				숭실대학교(지진)	200	90	-110
				강원대학교(지진)	200	90	-110
				부산대학교(지진)	100	180	80
				신규대학(지진,4개)	0	360	360
18	일반회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734-302)	320-01	소 계	2,100	1,890	-210
19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141-302)	320-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96	157	-39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	2,379	2,379	-
				소계	2,575	2,536	-39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19년 이후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918억 4,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85,286	85,286	83,599	79,198	94.7
2020	83,664	79,128	77,270	77,195	99.9
2021	81,712	81,712	82,651	82,558	99.9
2022	91,842	91,842	91,842	91,697	99.8
2023	83,000	83,000	83,064	82,975	99.9
2024	73,088	73,088	-	-	-
2025안	84,129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202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액**된 민간보조사업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109억 4,900만원 증액),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6억 9,400만원 증액) 등 5개이고,

감액된 민간보조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3억 2,500만원 감액),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2억 1,000만원 감액) 등 10개임.

[2025년 예산안 증액 민간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58,031	70,185	12,154
1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320-01	5,026	5,720	694
2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320-01	3,881	3,975	94
3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2432-300)	320-01	3,808	3,877	69
4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320-01	7,685	8,033	348
5	일반회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734-302)	320-01	37,631	48,580	10,949

[2025년 예산안 감액 민간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11,732	10,619	-1,113
1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140-300)	320-01	3,250	2,925	-325
2	일반회계	새마을운동지원 (1142-304)	320-01	815	734	-81
3	일반회계	행복한 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320-01	200	180	-20
4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143-308)	320-01	210	189	-21
5	일반회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1143-309)	320-01	200	-	-200
6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20-01	428	391	-37
7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320-01	1,891	1,718	-173
8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20-01	63	56	-7
9	일반회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731-304)	320-01	2,100	1,890	-210
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320-01	2,575	2,536	-39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도 예산안 내 50억 이상 주요 민간보조사업의 2024년 7월 기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맞춤형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ODA) 40.3%,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56.7%,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00.0%임.

[연도별 주요 민간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320-01)	2020	3,498	3,477	2,613 <1,955>	74.8
		2021	3,115	3,115	3,085 <2,771>	89.8
		2022	3,515	3,515	3,515 <3,391>	96.5
		2023	4,690	4,690	4,687 <4,349>	95.4
		2024.7.	5,159	5,159	5,019 <1,967>	40.3
		2025안	5,853	-	-	-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320-01)	2020	8,251	8,251	8,251 <8,189>	99.2
		2021	8,925	8,925	8,925 <8,814>	98.7
		2022	13,029	13,029	13,029 <12,706>	97.5
		2023	17,393	17,393	17,393 <15,757>	90.6
		2024.7.	7,685	7,685	6,148 <4,360>	56.7
		2025안	8,033	-	-	-
일반회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2734-302) (320-01)	2020	18,437	15,437	15,437 <15,437>	100.0
		2021	18,437	18,437	19,376 <19,376>	105.1
		2022	24,637	24,637	24,637 <24,637>	100.0
		2023	35,157	35,157	35,157 <35,157>	100.0
		2024.7.	37,631	37,631	30,957 <30,957>	100.0
		2025안	48,994	-	-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연구용역비 예산안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연구용역비(260목)는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되는데, 각 세목의 편성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7.

□ 편성 목적의 차이 이외에, 정책연구용역은 일반연구용역과 달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과제가 선정되고,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중복성이 검토되며 용역결과가 공개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정보화사업 제외)[1]가 48개 세부사업(201억 1,000만원)에, 정책연구비가 12개 세부사업(35억 3,100만원)에 편성되었음.

1) 일반연구비(260-01)에는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전산개발에 대한 용역 비용이 포함됨.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별도 목차가 있으므로, 일반연구비에서는 제외하고 현황을 분석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일반연구비(260-01)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48개)				21,984	20,110	-1,874
일반회계(45개)				21,014	19,081	-1,9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개)				970	1,029	59
1	일반회계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1131-304	400	600	200
종료	일반회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1131-314	84	-	-84
2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132-300	1,044	738	-306
3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139-307	135	340	205
4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140-300	196	196	-
종료	일반회계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90	-	-90
5	일반회계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331-300	790	790	-
6	일반회계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1335-300	30	30	-
종료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1349-301	40	-	-40
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1431-300	268	25	-243
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1431-301	54	260	206
9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1433-650	30	54	24
10	일반회계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1531-301	197	30	-167
11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제운영	1931-301	30	217	187
12	일반회계	행정생산성향상지원	1933-300	30	30	-
13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1933-306	400	400	-
14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1933-307	510	332	-178
15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2231-300	680	1,136	456
16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231-301	2,378	2,024	-354
17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2231-303	282	282	-
18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80	100	20
19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335-302	43	43	-
20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2336-301	160	339	179
21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2337-304	380	380	-
22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2432-300	-	30	30
23	일반회계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437-300	850	250	-600
24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2531-303	301	301	-
25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2533-300	893	1,175	282
26	일반회계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2631-301	340	340	-
27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31-303	525	525	-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28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2631-304	350	350	-
29	일반회계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632-301	100	100	-
30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632-303	150	400	250
31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633-300	268	278	10
32	일반회계	비상대비훈련	2634-300	155	155	-
33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2634-301	41	41	-
종료	일반회계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2634-304	728	-	-728
34	일반회계	재난관리평가지원	2731-301	40	40	-
35	일반회계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731-304	200	100	-100
36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731-307	1,250	1,550	300
37	일반회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733-303	90	90	-
38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2735-309	-	80	80
39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2931-610	3,410	3,071	-339
40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2931-614	425	182	-243
41	일반회계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2932-300	2,164	1,135	-1029
42	일반회계	재난안전정책서비스	2932-302	240	240	-
43	일반회계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2932-305	-	150	150
44	일반회계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7033-300	100	100	-
45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7033-301	52	52	-
종료	일반회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7034-303	11	-	-11
4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132-325	300	300	-
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600	600	-
4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131-303	70	129	59

주) 정보화 사업은 제외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비(260-02)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12개)				4,916	3,531	-1,385
일반회계(11개)				3,696	3,411	-2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개)				1,220	120	-1,100
1	일반회계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45-300	440	440	-
2	일반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1349-301	50	50	-
3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1531-300	-	100	100
4	일반회계	정부조직 진단관리	1931-300	240	240	-
5	일반회계	정부혁신 추진및확산	1933-307	50	50	-
6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2631-304	800	1,000	200
7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632-303	935	140	-795
8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2734-314	189	189	-
9	일반회계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735-300	-	210	210
10	일반회계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2735-301	70	70	-
11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	7032-300	922	922	-
1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120	120	-
종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236-300	500	-	-500
종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500	-	-500
종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100	-	-10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도별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일반연구비)** 행정안전부의 2019년 이후 연도별 일반연구비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337억 2,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안의 203억 5,7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

일반연구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0년 93.7%에서 2022년 83.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23년에는 91.8%로 상승하였음.

[연도별 일반연구비(260-01)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20,466	20,466	22,606	19,826	87.7
2020	23,244	23,574	21,766	20,401	93.7
2021	26,419	26,569	27,241	23,606	86.7
2022	33,722	33,722	35,335	29,324	83.0
2023	28,574	28,574	30,707	28,179	91.8
2024	21,984	21,984	-	-	-
2025안	20,110	-	-	-	-

주) 정보화 사업은 제외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책연구비)** 다음 정책연구비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72억 6,200만원, 2022년 71억 6,200만원 등을 정점으로 하여 2025년안의 35억 3,100만원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정책연구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0년 92.4%에서 2023년 88.5%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정책연구비(260-02)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3,457	3,457	3,403	2,866	84.2
2020	3,103	3,103	4,530	4,184	92.4
2021	7,262	7,262	4,844	4,451	91.9
2022	7,162	6,942	4,348	3,837	88.2
2023	4,154	4,154	4,575	4,050	88.5
2024	4,916	4,916	-	-	-
2025안	3,531	-	-	-	-

주) 정보화 사업은 제외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2025년 주요 **신규** 연구용역비 사업으로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2932-305),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1531-300) 등이 있음.

[2025년 주요 신규 연구용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회계	비목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2025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30	·일본지역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유해 실태 조사

연도	회계	비목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2025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80	·1029참사 추모시설 및 공동체 시설건립 등 기본계획 수립
2025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2932-305)	150	·잠재 재난요소 발굴 빅데이터 분석 등
2025	일반회계	정책연구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1531-300)	100	·이북5도 조사연구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4년 **종료** 사업으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1131-314),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1143-305),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2634-304),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7034-303), 서해5도종합발전지원(1236-3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300) 등이 있음.

[2024년 주요 종료 연구용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회계	비목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2024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1131-314)	84	·온라인변경신청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등
2024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90	·대전 자유회관 정밀안전진단비
2024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 확충(2634-304)	728	·민방위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정비
2024	일반회계	일반연구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7034-303)	11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
2024	균특회계	정책연구비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236-300)	500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2024	균특회계	정책연구비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500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정보화사업 예산안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정보화사업 예산액은 9,619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62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916,714	961,939	45,225
1	일반회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1131-319)	-	69	69
2	일반회계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1133-504)	228	205	-23
3	일반회계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1135-500)	984	1,177	193
4	일반회계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1137-500)	2,732	5,294	2562
5	일반회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8-501)	544	544	0
6	일반회계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1237-501)	2,865	2,358	-507
7	일반회계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1332-500)	5,620	7,208	1588
8	일반회계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1333-500)	5,868	5,353	-515
9	일반회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333-503)	100	100	0
10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1432-500)	375	375	0
11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1432-501)	549	537	-12
12	일반회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1932-500)	537	537	0
13	일반회계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6,290	10,530	4240
14	일반회계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1932-505)	72	65	-7
15	일반회계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정보화)(1933-311)	584	584	0
16	일반회계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1935-305)	2,492	2,425	-67
종료	일반회계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12,589	-	-12589
17	일반회계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2031-501)	2,098	2,886	788
18	일반회계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2031-504)	9,984	11,605	1621
19	일반회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2031-505)	7,707	8,684	977
20	일반회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2032-506)	2,832	2,832	0
21	일반회계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2032-500)	12,854	15,510	2656
22	일반회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2032-506)	-	929	929
23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2033-500)	36,114	19,933	-1618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24	일반회계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2034-500)	2,982	3,568	586
25	일반회계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2035-506)	2,942	3,616	674
26	일반회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2035-507)	1,103	1,471	368
27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235,767	272,149	36382
28	일반회계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2036-503)	74,686	83,099	8413
29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	151,814	173,334	21520
30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25,150	1,614	-23536
31	일반회계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2038-507)	328	328	0
32	일반회계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2038-508)	895	832	-63
33	일반회계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2039-500)	4,790	6,347	1557
34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2039-504)	6,843	10,377	3534
35	일반회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	-	5,392	5392
36	일반회계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2040-501)	4,860	4,998	138
37	일반회계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2040-504)	1,136	1,021	-115
38	일반회계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2040-505)	800	1,339	539
39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2041-502)	3,910	4,001	91
종료	일반회계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운영(정보화)(2041-503)	536	-	-536
40	일반회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2042-500)	16,007	9,058	-6949
41	일반회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2045-500)	14,993	16,642	1649
42	일반회계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2046-502)	44,925	41,634	-3291
43	일반회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2046-503)	14,665	15,008	343
44	일반회계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2046-504)	5,368	7,653	2285
45	일반회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2046-507)	10,351	8,610	-1741
46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2047-500)	16,251	24,999	8748
47	일반회계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2231-500)	-	380	380
48	일반회계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2332-500)	193	302	109
49	일반회계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2332-501)	3,969	4,089	120
50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2332-502)	4,078	3,504	-574
51	일반회계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2532-500)	845	1,742	897
52	일반회계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2631-305)	268	258	-10
53	일반회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734-317)	771	852	81
54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3031-501)	18,592	15,027	-3565
55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3031-502)	112,764	112,752	-12
56	일반회계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3032-500)	4,541	7,904	3363
57	일반회계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	3,376	2,343	-1033
58	일반회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3032-502)	591	509	-82
59	일반회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3032-503)	3,583	4,156	573
60	일반회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3032-505)	281	424	143
61	일반회계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3032-509)	3,251	5,075	1824
62	일반회계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7031-500)	4,491	5,792	1301

주) 세부사업명에 “(정보화)”가 포함된 사업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도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5년 예산안까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예산 집행률은 2019년 85.4%에서 2023년 96.7%로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정보화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797,374	797,374	906,243	773,884	85.4
2020	858,000	959,156	1,066,190	964,654	90.5
2021	1,092,213	1,092,213	1,156,510	1,056,941	91.4
2022	1,199,898	1,138,126	1,176,343	1,101,750	93.7
2023	893,725	893,725	949,335	918,223	96.7
2024	916,714	916,714	-	-	-
2025안	961,939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2025년 예산안의 **신규** 정보화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9억 2,900만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정보화)(53억 9,200만원) 등 2개가 편성되었음.

[2025년 주요 신규 정보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신규반영사유
2025	일반 회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구축(정보화) (2032-506)	929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수립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개편
2025	일반 회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정보화) (2039-506)	5,392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범정부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각 기관의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

주) 기존 사업이 종료되었다 재편성된 경우는 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4년 **종료** 사업으로는 전자정부지원(정보화)(125억 8,900만원),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운영(정보화)(5억 3,600만원) 등 2개가 있음.

[2024년 주요 종료 정보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주요 사업내역	종료 사유
2024	일반회계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31-500)	12,589	·범정부 공통 기반 구축, 다부처 융·복합과제 수행 등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종료하고, 각 부처 사업으로 추진
2024	일반회계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 운영(정보화) (2041-503)	536	·인허가 민원종합시스템 BPR/ISP 수립	·BPR/ISP 완료에 따른 사업 종료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라. 정보화사업 단계별 예산 현황

□ 정보화사업의 수행 단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 단계라 할 수 있는 BPR/ISP[2]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단계는 2025년도 예산안에 2,269억 1,200만원(23.5%)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28.5%) 대비 정보화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p 감소한 것임.

반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4,328억 4,900만원(44.9%)로 전년(40.7%) 대비 정보화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증가하였음.

[정보화사업 단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보화사업 예산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기타
		BPR/ISP	시스템구축	계		
2021년	1,092,213	5,441	311,715	317,156	337,469	437,588
		(0.50)	*(28.54)*	*(29.54)*	*(30.90)*	*(40.06)*
2022년	1,199,898	2,077	345,160	347,237	375,511	477,150
		(0.17)	*(28.77)*	*(28.94)*	*(31.29)*	*(39.77)*
2023년	893,725	4,992	277,848	282,840	391,449	219,436
		(0.56)	*(31.09)*	*(31.65)*	*(43.80)*	*(24.55)*
2024년	916,714	2,905	258,796	261,701	373,254	281,759
		(0.31)	*(28.2.)*	*(28.5)*	*(40.7)*	*(30.7)*
2025년(안)	961,939	1,337	225,612	226,949	432,849	302,141
		(0.01)	*(23.4)*	*(23.5)*	*(44.9)*	*(31.4)*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재설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전략계획

마.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관련 예산 현황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의 장애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등이 전면 중단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2024년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을 발표함.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5개 과제, 2,063억 3,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 1,727억 6,300만원 대비 335억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과제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계		172,763	206,337	33,575
1.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1-1.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1-1-1. 개별기관 모니터링 강화				
① (상시관제) 1·2등급 정보시스템 24시간 상시관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상시관제 인력)	-	790	790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장애 모니터링 강화)	-	2,055	2,055
1-1-2.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도입				
① (통합 관제) 장애 신속 파악 및 초동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통합모니터링 시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공통인프라 운영강화) (통합관제시스템(nTEMS) 인프라 강화	-	2,224	2,224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통합 모니터링 도입)	-	1,000	1,000

과제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1-2.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1-2-1. 장애 확산 방지 인프라 구조 적용				
① (네트워크 영역)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격벽 구축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네트워크 구조개선 단계적 추진)	-	-	-
② (통합 저장장치) 동시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통합 저장장치 공유 방식 구조 변경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스토리지 공유구조 개선)	33,103	17,970	△15,133
③ (복수 인증수단) 1등급 시스템의 복수 인증 수단 적용 의무화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Any-ID 구축 및 운영)	7,714	5,515	△ 2,199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모바일 신분증 운영 및 유지관리) (모바일 신분증 운영)	1,372	2,348	976
	정보자원 관리지원 (전자정부 공통기능 관련 시스템 위탁·운영)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복수인증수단 도입)	-	50	50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인프라 개선) (복수인증 적용)	-	42	42
1-2-2.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가속화				
① (전환 가속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통합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73,986	72,525	△1,461
2.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구축				
2-5.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2-5-1. 사전예방 : 안정성 점검 및 구조진단 지원				
① (민관합동 점검)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개선 권고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 및 정책연구 (디지털정부서비스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관리)	-	1,688	1,688

과제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② (진단지원) 정보시스템 설계·구축·개통 과정에 대한 안정성 구조진단 기술지원 확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전산장비 운영지원) (구조진단 기술지원 확대)	900	540	△360
2-6.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2-6-1. 장애 상황관리 및 전파				
② (상황전파) 상황실과 대내외 기관 간 상황공유체계 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전산장비 운영지원) (상황전파 체계 마련)	-	195	195
2-7.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2-7-2.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① (안내기준) 다양한 채널로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알림 서비스' 제공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국민비서 운영)	2,584	2,917	333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744	744	-
3.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3-8.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3-8-1. 정보시스템 단계적 통·폐합				
① (정보시스템 정비)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	전자정부 성과평가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 효율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진단 컨설팅 및 교육)	160	160	-
	전자정부 성과평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운영)	514	514	-
	전자정부 성과평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운영)	195	316	121
3-11.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11-3. 사업관리 강화 및 갈등중재 제도 개선				
① (책임형 사업관리) 책임감리제 도입	정보자원 관리지원 (전자정부사업 수발주 추진여건 개선 지원) (PMO·감리 제도개선 및 운영)	90	90	-
3-12. 인프라 복원력 제고				
3-12-1.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및 이중화 적용				
① (노후장비 교체) 내용연수를 경과한 전산장비 순차적 교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정보보호 강화) (노후 보안장비 교체)	7,126	7,126	-

과제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2,255	4,440	2,185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서버 자원풀 구축)	17,633	23,786	6,153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지능형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SW 구축)	15,016	45,884	30,868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지능형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	6,615	2,555	△4,060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국정자원 노후 백업장비 교체)	2,232	7,380	5,148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국정자원 노후 백업장비 교체)	523	528	5
② (이중화 적용)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중화 단계적 시행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	507	507
3-12-2. 재해복구시스템(DR) 실효성 제고				
① (다중지역 동시가동) 공통 기능 서비스에 대해 여러지역에서 동시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공통인프라 운영강화) ((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센터 이중화 구축)	-	773	773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센터 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멀티리전 시범사업))	-	1,675	1,675

자료: 행정안전부

5.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예산안

□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3]상 ① ‘**법정지출**’(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 및 ② ‘**이자지출**’을 말함. 참고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칭함.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4] 및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을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② 지방이전재원, ③ 기타 의무지출(①~③이 ‘법정지출’) 및 ④ 이자지출로 세분하고 있음.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서 의무지출은 365조 5,860억원으로 2024년도 347조 3,890억원 대비 181,970억원(5.2%) 증가하였고,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도 52.9% → 54.0%로 증가하였음.

의무지출 유형별로 2025년도 예산안의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181조 8,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6,983억원(1.0%) 증가하였고, 의무지출 중 비중도 48.7% → 49.7%로 확대되었음. ② 지방이전재원은 142조 4,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381억원(1.9%) 증가하였으나, 의무지출 중 비중은 40.2% → 39.0%로 축소되었음. ③ 기타 의무지출은 11조 3,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1억원(-0.5%) 감소하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3.3% → 3.1%로 축소되었음. ④ 이자지출은 29조 8,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218억원(10.8%) 증가하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7.8% → 8.2%로 확대되었음.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총지출(A)	6,566,182	6,774,107	207,925	3.2
의무지출(B)	3,473,890	3,655,860	181,970	5.2
(총지출 대비(B/A))	52.9	54.0	1.1	-
법정지출	3,204,287	3,357,040	152,753	4.8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D)	1,691,807	1,818,790	126,983	7.5
(의무지출 대비(D/B))	48.7	49.7	1.0	-
② 지방이전재원(E)	1,397,871	1,424,252	26,381	1.9
(의무지출 대비(E/B))	40.2	39.0	-1.3	-
③ 기타 의무지출(F)	114,609	113,998	-611	-0.5
(의무지출 대비(F/B))	3.3	3.1	-0.2	-
④ 이자지출(G)	269,603	298,821	29,218	10.8
(의무지출 대비(G/B))	7.8	8.2	0.4	-
재량지출(C)	3,092,292	3,118,247	25,955	0.8
(총지출 대비(C/A))	47.1	47.5	0.4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총 10개 세부사업 67조 2,920억 6,300만원(정부 의무지출 합계의 18.4%)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인 67조 385억 500만원은 지방교부세 6개 세부사업이고, 나머지는 기타 의무지출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105억 7,500만원,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3억 2,300만원,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2431-306) 2,418억 7,700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2432-302) 7억 8,3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합계	66,999,102	67,292,063	292,961	0.4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19.3	18.4	-0.9	-
지방이전재원	66,759,324	67,038,505	279,181	0.4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19.2	18.3	-0.9	-
보통교부세(1631-300)	59,843,917	60,401,769	557,852	0.9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740,337	658,551	-81,786	-11.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85,084	164,638	-20,446	-1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925,421	823,189	-102,232	-11.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54,765	985,649	30,884	3.2
부동산교부세(1633-300)	4,109,800	4,004,709	-105,091	-2.6
기타 의무지출	239,778	253,558	13,780	5.7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0.1	0.1	0.0	-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1131-300)	11,797	10,575	-1,222	-10.4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441	323	-118	-26.8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2431-306)	226,198	241,877	15,679	6.9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2432-302)	1,342	783	-559	-41.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인 2,929억 6,100만원(0.4%)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예산안이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67조 38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91억 8,100만원(0.4%) 증가함.

[2024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보통교부세(1631-300)	59,843,917	60,401,769	557,852	0.9
특별교부세	1,850,842	1,646,378	-204,464	-11.0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740,337	658,551	-81,786	-11.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85,084	164,638	-20,446	-1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925,421	823,189	-102,232	-11.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54,765	985,649	30,884	3.2
부동산교부세(1633-300)	4,109,800	4,004,709	-105,091	-2.6
합 계	66,759,324	67,038,505	279,181	0.4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60조 4,01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78억 5,200만원(0.9%)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5]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증가한 것임.

5) 보통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 이하 동일)의 19.24% 중 97%

다만, 특별교부세인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6,58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7억 8,600만원(-11.0%) 감소,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1,646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4,600만원(-11.0%) 감소,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8,23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2억 3,200만원(-11.0%)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내국세를 재원[6]으로 하는 특별교부세가 함께 증가하였음에도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사후 감정산분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 차감하면서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임.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는 9,85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8,400만원(3.2%)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7]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부동산교부세는 4조 47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0억 9,100만원(-2.6%)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8]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임.

6) 특별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7)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45%
8)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

6.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가.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9]이며, 실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10]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의미함.[11]

---

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9.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1)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사업명 마지막에 “(R&D)”라는 문구를 붙임(ex. 0000(R&D)).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전술하였듯이 정부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 심의 외에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를 추가로 거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12]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수행하게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

□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은 총 27개 세부사업 1,1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합 계(27개)				103,954	110,836	6,882
일반회계(26개)				95,934	105,236	9,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개)				8,020	5,600	-2,420
1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2336-301	200	400	200
2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2533-300	5,663	6,043	380
3	일반회계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R&D)	2931-509	1,600	2,650	1,050
4	일반회계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2931-513	1,500	1,620	120
5	일반회계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2931-517	1,040	1,976	936
6	일반회계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931-520	-	2,000	2,000
7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2931-524	-	1,270	1,270
8	일반회계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2931-527	-	1,500	1,500
9	일반회계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2931-529	-	1,491	1,491
10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2931-610	14,311	14,411	100
11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2931-614	937	482	-455

12)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12	일반회계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2931-627	11,060	11,867	807
13	일반회계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2931-628	7,590	3,180	-4,410
14	일반회계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2931-629	4,450	3,058	-1,392
종료	일반회계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2931-630	1,170	-	-1,170
15	일반회계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2931-631	5,500	3,870	-1,630
16	일반회계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931-632	2,344	2,110	-234
17	일반회계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R&D)	2931-634	3,400	520	-2,880
18	일반회계	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2931-635	2,160	1,630	-530
19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2931-638	5,060	9,570	4,510
20	일반회계	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2931-640	4,100	8,100	4,000
21	일반회계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2931-641	3,950	5,100	1,150
22	일반회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2931-642	4,140	6,080	1,940
23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2931-644	4,500	6,500	2,000
종료	일반회계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R&D)	2931-646	2,500	-	-2,500
24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7002-108	8,261	9,272	1,011
25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7018-210	444	463	19
26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7018-260	54	73	19
종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R&D)	2931-625	5,620	-	-5,620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2931-626	2,400	5,600	3,20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및 집행 현황

□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R&D)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4~2025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연도별 집행률은 2019년 96.7%에서 2023년 98.9%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67,760	67,760	68,076	65,829	96.7
2020	79,673	79,492	78,723	77,124	98.0
2021	102,536	102,536	102,638	100,369	97.8
2022	118,828	118,341	118,372	116,873	98.7
2023	125,089	125,089	125,135	123,711	98.9
2024	103,954	103,954	-	-	-
2025안	110,836	-	-	-	-

주) 2023년도 이전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은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 및 종료사업 현황

□ 2025년 **신규** 사업은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0억원,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12억 7,000만원,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15억원,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14억 9,100만원 등 총 4개임.

[2025년 신규 R&D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1	일반회계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931-520	2,000	·도시지역 태풍·강품·용오름 등의 피해 예측·경보 및 피해 관리 기술 개발
2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2931-524	1,27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R&D 공동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3	일반회계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2931-527	1,500	·드론 등을 활용한 급경사지 붕괴 징후 관찰 및 위험성 분석 기술 개발
4	일반회계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2931-529	1,491	·신생대 제4기 단층(활성단층) 지역의 지질·지반조사 및 지진위험지도 작성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종료** 사업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R&D),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R&D) 등 3개임.

[2024년 종료 R&D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 예산	주요 사업내역
1	일반회계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2931-630	1,170	·생활안전 사고 예방기술, 취약시설 근무자 안전확보 기술, 보행자 안전확보 기술 등 개발
2	일반회계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R&D)	2931-646	2,500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R&D)	2931-625	5,620	·재난이슈·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연구과제 지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7. 지방소멸대응사업 예산안

□ “지방소멸”은 일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1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제시된 개념임. 이후 한국에서는 2020년대 들어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개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음.

□ 이에 202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본격화 되었음.

2020년 12월 8일 공포(2021년 6월 9일 시행)된 「舊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10월 총 89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2021년 12월 7일 공포(202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2022회계연도부터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조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10년간(2022~2931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13)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5.

2022년 6월 1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공포(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하였음.

□ 한편, 정부 재정사업 중에는 지방소멸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음.

우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동 특별회계 예산이 총 414개 세부사업에 14조 7,439억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산림청	임도시설(자율)	92,579
2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자율)	21,320
3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33,726
4				생활권도시숲조성(자율)	20,892
5				정원도시조성(자율)	8,580
6			농촌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지역자율)	58,500
7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자율)	17,434
8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3,300
9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55,078
10				노후상수도정비(자율)	370,041
11				슬레이트관리(자율)	70,506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율)	23,970
13				문화도시 조성(자율)	25,500
1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0,721
15				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	3,272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6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자율)	715
17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자율)	3,979
18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자율)	9,452
19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241,483
2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63,953
21				봉안시설 설치(자율)	22,987
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05,371
23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	23,481
24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	37,182
25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자율)	3,950
26			교육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자율)	8,309
2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55,465
28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4,489
29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5,643
30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555
31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6,596
32				일반농산어촌개발	512,509
33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04,501
3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계정)	12,799
35				수소생산기지 구축	12,834
36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건설	105,615
37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65,061
38				벽지노선지원(자율)	39,423
39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34,871
40				성장촉진지역개발	203,957
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3,802
42				수소도시지원(자율)	44,430
43			해양수산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69,278
44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194,260
45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0,000
46				접경권발전지원(자율)	45,627
47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011
48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	46,985
49				상권활성화 사업(자율)	22,381
50				지식산업센터(자율)	85,699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자율)	112,980
52		지역지원계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7,864
53			산림청	임도시설	190,049
54				새만금수목원 조성	24,150
55			농촌진흥청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보조, 지역지원)	7,764
56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38,907
57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3,672
58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지역지원)	2,185
5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2,488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60				하수관로 정비	1,626,418
61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357,040
62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459
63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6,057
64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13,678
65			국가유산청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4,500
66				고도 보존 및 육성	25,108
6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63,616
68				국민문화활동지원	27,435
69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7,000
7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16,398
7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15,181
72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78,824
73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4,635
74				관광자원 기반조성	35,318
75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4,097
76				전통문화체험 지원	33,811
77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60,208
78				지역 의료관광활성화지원	2,700
7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9,514
80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31,347
8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8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9,422
83				장사시설설치	25,271
84				노인요양시설 확충	28,649
8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8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70,920
87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900
88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76,363
8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7,575
9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1,098
9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47,200
92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13
93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88,601
94				어린이집 확충	26,684
95				지역인재육성지원	1,720
9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27,102
97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3,662
98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1,640
99				친환경농자재지원	6,491
100				배수개선	485,164
101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880
102				구역청투자유치지원	2,601
103				기타 기반시설 지원	24,576
104				주요기반시설지원	14,428
105				인천경제자유구역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5,376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06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4,560
107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5,920
108				산업단지환경조성	331,378
109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371
110				지방시대위원회지원	3,293
11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36,935
112				지역균형발전지원	16,528
11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17,752
1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11,171
115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8,020
116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5,653
117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3,980
118				지역투자촉진	221,831
119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60,104
120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810
121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1,378
122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5,036
123				투자유치기반조성	364,246
124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45
125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200
126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사업지원	4,789
127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1,000
128				다사-왜관광역도로	15,000
129				서대전IC-두계3광역도로	5,879
130				조야-동명광역도로	30,000
131				광주하남-장성삼계광역도로	5,000
132				검단-대곡광역도로	4,850
133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10,882
134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16,504
135				태화강-송정광역철도	3,312
136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38,491
137				대구권광역철도	8,547
138				대전-옥천광역철도	1,000
139				대구도시철도영천연장	1,960
140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사업(R&D)	5,000
141				광역BRT 구축	18,215
142				환승센터구축지원	5,134
143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250
144				충청권자율주행모빌리티상용화지구조성	2,482
145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14,746
146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9,500
147				개발제한구역관리	150,825
148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17,712
149				투자선도지구기반시설지원	1,800
150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60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51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31,676
152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311
153				도시재생사업	472,946
15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원)	400
155				수소도시지원(지원)	450
156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21,997
157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33,573
158				산업단지 개발지원	997
159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41,565
160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4,000
161				도심융합특구지원	1,500
162				부여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835
163				아산신창일반산단진입도로	510
164				아산선장그린산단진입도로	300
165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21,093
166				포항그린산단진입도로	471
167				옥산국사산단진입도로	2,230
168				오창테크노산단진입도로	3,835
169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6,000
170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1,700
171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2,310
172				밀양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	10,502
173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10,040
174				창녕영남산단진입도로	10,850
175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7,688
176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7,944
177				파주법원1산단진입도로	503
178				평택브레인시티산단진입도로	6,024
179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00
180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8,305
181				천안직산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954
182				금호워터폴리스산단진입도로	4,140
183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5,350
184				천안북부BIT산단진입도로	3,265
185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500
186				아산탕정테크노산단진입도로	3,000
187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1,000
188				예산제2산단진입도로	3,553
189				울산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진입도로	4,060
190				김제백구산단진입도로	1,000
191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도로	1,302
192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1,045
193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1,000
194				아산인주산단(3공구)진입도로	1,000
195				오송화장품산단진입도로	663
196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2,236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97				의령부림산단진입도로	3,780
198				천안테크노파크산단진입도로	2,694
199				청주하이테크산단진입도로	1,680
200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806
201				첨단3지구산단진입도로	1,720
202				울산KTX역세권일반산단진입도로	2,263
203				청주전통공예촌산단진입도로	100
204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진입도로	3,913
205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2,652
206				천안풍세2산단진입도로	1,682
207				천안제6산단진입도로	1,621
208				아산음봉산단진입도로	1,240
209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587
210				영천대창일반산단진입도로	1,300
211				김포학운5산단진입도로	2,000
212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진입도로	510
213				강진제2산단진입도로	500
214				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	413
215				천안신사산단진입도로	484
216				공주송선산단진입도로	1,000
217				대산그린컴플렉스산단진입도로	500
218				청양일반산단진입도로	490
219				청주에어로폴리스3산단진입도로	800
220				진천메가폴리스산단진입도로	1,261
221				진천스마트복합산단진입도로	1,005
222				양촌용정산단진입도로	1,010
223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단진입도로	401
224				논산국방산단진입도로	449
225				영주첨단베어링산단진입도로	1,085
226				케이밸리산단진입도로	310
227				빛그린산단광주방면진입도로	2,320
228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87,210
229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6,222
230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7,961
231				산지유통시설지원	3,195
232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6,000
233				친환경 어구보급	17,070
234				수산어업행정지원	22,871
235				어촌신활력증진	225,734
236				어촌소멸대응지원	6,216
237				청년어촌정착지원	6,074
238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R&D)	200
239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24,390
240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6,001
24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25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24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3,730
24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0,575
244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836
245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246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47				지역발전활성화	5,328
24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61,797
249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9,818
25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540
25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1,478
252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253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254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255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60,655
256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5,600
257				마을기업육성사업	1,675
25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259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CollaboR&D(R&D)	56,966
26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7,618
261				지역특화산업육성	85,081
262				지역특화산업육성+(R&D)	8,150
263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613
264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560
265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3,783
266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30,857
267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8,926
268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10,261
269				창업인프라지원	7,110
2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12,000
271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69,700
272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59,090
273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92,121
274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	4,837
275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22,682
276				BTL 전문과학관 지원	5,398
277				국립법인과학관운영	41,786
278				디지털역량강화교육	32,085
279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R&D)	864
280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4,140
281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1,680
282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1,000
283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2,922
284				지역디지털인재양성	57,617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285				SW융합클러스터2.0	3,365
286				인공지능 ·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8,000
287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R&D)	530
288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9,900
289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5,000
290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조성	6,000
291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7,200
292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0,000
293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4,000
294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지역지원)	20,418
295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2,400
296				AI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2,650
297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10,300
298				글로벌제조융합SW개발및실증(R&D)	1,500
299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3,000
300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3,000
301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20,220
302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17,400
303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R&D)	4,000
304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R&D)	7,140
305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R&D)	7,782
306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6,104
307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30,604
308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010
309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106
310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10
311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414
312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3,598
313			국가보훈부	제주보훈업무지원	2,384
314			산림청	임도시설(제주)	280
315				도시바람길숲 조성(제주)	2,500
316				생활권도시숲조성(제주)	900
317			농촌진흥청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보조, 제주)	484
318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1,900
319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제주)	122
32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4,328
321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제주)	11,855
322				노후상수도정비(제주)	27,195
323				슬레이트관리(제주)	1,961
324				제주환경업무지원(제주)	213
325			경찰청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5,006
3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912
327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900
328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704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329				생태녹색관광활성화(제주)	600
330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제주)	222
331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3,933
332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590
33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주)	7,164
33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제주)	297
335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제주)	515
336			교육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제주)	200
33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600
338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077
339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180
340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3,932
34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3,100
34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2,751
343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664
344			국토교통부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4,390
345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사업	3,000
346				광령-도평우회도로건설	15,146
347				제주일주도로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500
348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5,000
349				제주구국도공무원부담금	8
350				도시형교통모델(제주)	100
351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제주)	7,429
352				도시재생사업(제주)	6,775
35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진입도로	2,000
354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4,187
355			해양수산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4,956
356				국가어항(제주)	11,744
357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000
358				제주항	167
359				제주외항(2단계)	6,757
360				화순항	8,842
361				추자항	3,715
362				제주일반항건설	32,009
363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7,200
364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3,132
365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	111
366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27
367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5,026
368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5,250
36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5,013
370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	700
37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	2,580
372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970
373				창업인프라지원(제주)	10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374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1,725
37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제주)	4,800
376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제주)	470
377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산림청	임도시설(세종)	1,052
378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세종)	250
379				도시바람길숲 조성(세종)	750
380				정원도시조성(세종)	300
381			농촌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세종)	400
382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세종)	6,151
383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세종)	170
384				노후상수도정비(세종)	1,895
385				슬레이트관리(세종)	305
38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종)	672
387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세종)	3,000
388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690
389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세종)	60
390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784
391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571
39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종)	1,484
393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세종)	171
394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세종)	111
395			교육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세종)	81
39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세종)	172
397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360
398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786
399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499
4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3,100
401				지역투자촉진(세종)	4,281
402			국토교통부	도시형교통모델(세종)	5,428
403				세종벤처밸리산단진입도로(세종)	1,638
404				세종스마트그린산단진입도로(세종)	3,277
405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1,650
406				세종스마트국가산단진입도로	639
407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6,118
4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2,796
409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300
410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780
411				창업인프라지원(세종)	50
412				지식산업센터(세종)	3,805
41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세종)	3,200
414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세종)	470
합계					14,743,94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는 429개 세부사업에 73조 2,319억원, 자치단체교부금(330-02)은 12개 세부사업에 142조 4,252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는 305개 세부사업에 9조 9,167억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는 1개 세부사업(국방부 시설정책지원)에 1,270억원,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는 1개 세부사업(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융자))에 100억원 등 총 236조 6,918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 세목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일반회계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11,2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50
			법무부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60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74,340
				취약계층취업촉진	12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94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458
				상생협력 확산지원	1,160
				노동약자지원	2,649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1,800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2,25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7,728
			산림청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804
				목재생산관리	2,594
				목재제품 품질관리	136
				산림서비스도우미	14,250
				산림휴양등산증진	192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산림복원	549
				백두대간보전	123
				정원 조성관리	6,600
				산림재해일자리	73,442
				산불방지대책	4,930
				사방사업	4,523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2,205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298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1,745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54,144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652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3,453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2,676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5,660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2,70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299
				국유유산관리	211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300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17,77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875
				사적관리	250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6,328
				무형유산보호	1,600
				무형유산원운영	1,361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	1,15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923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800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500
				광고산업 활성화	600
				출판산업 활성화	1,200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500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80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050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23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9,000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420
				국가이미지 홍보	20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200
				국제문화정책지원	600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8,486,403
				해산장제급여	46,645
				의료급여	8,686,067
				긴급복지	349,855
				자활사업	801,615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43,257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838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6,07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6,256
				가정위탁 지원·운영	5,51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6,90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3,189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95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6,263
				장애수당(기초)	156,715
				장애수당(차상위 등)	71,939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705
				장애인연금	884,304
				장애인의료비지원	35,568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822
				장애인활동지원	2,507,365
				장애아동가족지원	232,157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78
				발달장애인 지원	391,477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09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2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89,270
				장애인일자리지원	233,33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7,385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51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9,563
				기초연금지급	21,841,22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1,436
				노인보호전문기관	11,446
				노인단체 지원	89,90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956,962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3,408
				첫만남 이용권 지원	359,11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2,59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36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997
				아동수당 지급	1,958,738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1,2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6,554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6,48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423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3,91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8,000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82,85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905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4,038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7,062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31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1,400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35,128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	2,032
				한의약산업육성	1,50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6,073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14,265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108,779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401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1,16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745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4,818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1,352
			여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35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82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55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046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1,352
				가족역량강화 지원	1,590
				아이돌봄지원	511,581
			교육부	교육급여	162,797
				영유아보육료 지원	3,239,957
				시간제보육 지원	27,627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1,308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961,91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7,29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095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5,358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660
			외교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738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638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5,610
				2025 APEC 의장국	43,068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2,314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00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375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조사	21,009
				주거급여지원	2,993,66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7,73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1,780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1,527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5,200
				지가조사	11,455
				지적관리	4,940
				지적재조사	41,718
				건축문화진흥	60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건축안전	91
			해양수산부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1,98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200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3,356
				해양관광육성	1,660
				어업협정이행	1,844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5,250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3,112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325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652
				건강기능식품 관리	394
				위생용품 안전관리	6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45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043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73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63,062
			행정안전부	지자체경쟁력지원	1,650
				생활공감정책추진	135
				지역경제활성화	3,060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17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60
				과거사관련사업지원	8,286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77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642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166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43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70
				지역안전개선컨설팅	935
				동원자원관리	133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1,731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59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80
				재난구호지원	900
				재난심리회복지원	70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3,115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3,482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17,258
			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관리지원	6,337
				질병 연구 기반 조성	943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754
			재외동포청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686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정보화)	3,270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1,357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907
			농림축산식품부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2,082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전략작물산업화	6,600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75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500
				스마트팜 실증단지	4,074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30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137
				전통발효식품육성	932
				식품산업인프라강화	2,100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2,001
				푸드서비스 선진화	1,425
				밭작물산업육성	2,300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17,028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700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2,543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7,660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100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54,013
				가축방역대응지원	80,417
				살처분보상금	81,315
				가축사체처리지원	6,687
				가축백신지원	54,599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1,016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60
				원원종및원종생산	6,328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	200
			해양수산부	천일염산업육성	1,844
				수산식품산업육성	1,200
				수산생물질병관리	4,949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1,000
				친환경양식어업육성	5,000
				자율관리어업육성	1,760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656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795
				어업인삶의질향상	985
				양식등재해대책비	2,976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6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85
				농촌고용인력지원	12,060
				농식품바우처	35,083
				농촌경제활성화지원	12,43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24,340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5,500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4,600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350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17,894
				수산 공익직불제	109,722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임업진흥 사업계정	산림청	숲가꾸기	11,04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159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3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53,091
				산림병해충방제	113,591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교통체계	8,400
		공항계정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1,500
		공항계정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2,000
		교통체계 관리계정		택시산업지원	4,20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154,294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35,93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5,49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3,203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575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569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800
				자원순환촉진지원	10,009
				유해폐기물처리및대집행	2,300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400
				환경교육강화	120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3,405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6,797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72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9,044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6,827
				습지보전관리	335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1,435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000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3,687
				환경오염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150
				재해대책비	35,00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98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건설지원	3,652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	1,012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8,798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699,651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아카데미	5,125
	양곡관리	손익계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1,11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특별회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 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이행점검	1,792
				공익기능증진직불	2,947,944
				사업관리비	10,432
	기후대응 기금		기획재정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4,440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760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720
				탄소중립그린도시	1,200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12,372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4,42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3,200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00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1,393
				MICE산업육성지원	2,520
	주택도시 기금	주택계정	국토교통부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28,509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1,809
	청소년 육성기금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00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3,533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63,75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2,432
	농지관리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13,540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73
	남북협력 기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지원	900
	고용보험 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운영	21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07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민건강 증진계정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지원	684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2,610
				치매관리체계 구축	166,812
				노인건강관리	1,000
				모자보건사업	23,92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241
				국가암관리	41,950
				건강증진사업관리	47,71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7,989
				국가금연지원서비스	46,663
				정신건강 증진사업	130,8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20,011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10,130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666
				국가결핵예방	30,769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25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4,145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960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124
				국가예방접종실시	563,970
				만성질환 예방관리	11,425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9,305
				희귀질환자지원	26,673
	양성평등 기금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392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9,012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00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79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8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3,78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38,712
	수산발전 기금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5,009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500
				피해보전직불금	1,000
	한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관리청별주민지원	75,453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827
				환경기초시설운영	179,82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0,637
				퇴적물준설	1,204
				비점오염저감사업	3,702
				정수비용지원	795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7,219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808
				오염총량관리사업	3,449
				운영경비	100
	축산발전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	48,296
				가축개량지원	1,212
				말산업육성지원	7,8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7,463
				가축분뇨처리지원	3,200
				축산물품질관리	5,116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16,039
				축산물HACCP지원	320
				가축위생방역지원	28,645
	전력산업 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효율향상	7,300
				전선로 지중화 지원	23,07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00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87,078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66,228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3,799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29,77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66,247
				국민체력인증	10,121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5,327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4,090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3,905
				전국(소년)체전 지원	9,219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4,000
				도핑방지활동지원	1,900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6,000
				태권도 진흥	1,325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63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6,606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1,591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향유 지원	258,699
	응급의료 기금		보건복지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500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2,421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5,961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52,86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1,64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2,356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9,035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621
				119구급대 지원	4,46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712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환경부	관리청별 주민지원	20,941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429
				환경기초시설 운영	79,221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2,386
				정수비용지원	4,243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355
				오염총량관리	3,019
				운영경비	60
	금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관리청별주민지원	21,773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788
				환경기초시설운영	33,69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380
				비점오염 저감사업	991
				오염총량관리사업	2,616
				운영경비	45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환경부	관리청별 주민지원	18,820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775
				환경기초시설 운영	4,393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466
				비점오염 저감사업	274
				오염총량관리사업	2,144
				운영경비	25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38,37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21,866
				과수 생산유통지원	100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	755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지원	174,34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85,825
				입양아동 가족지원	21,347
	영화발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 지원	600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13,267
				국가유산 돌봄사업	17,349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826
				소규모·긴급 매장유산 조사 지원	1,087
	소계				73,231,924
자치단체 교부금 (330-02)	일반회계		교육부	보통교부금	69,659,5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39
				고등학교 무상교육	5,267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60,401,7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658,551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38
				부동산교부세	4,004,709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소방안전교부세	985,649
	유아교육 지원특별 회계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102,013
	소계				142,425,223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운영지원	1,000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300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602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건립	2,000
				보훈문화조성	2,290
			산림청	묘목생산	1,197
				산림생명산업	6,200
				산지관리	1,250
				산림휴양등산증진	681
				산림복원	18,968
				백두대간보전	9,305
				산림생물다양성증진	600
				정원 조성관리	9,438
				산림재해대책비	77,400
				산림재해일자리	385
				산불방지대책	9,838
				사방사업	219,306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0,890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4,562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5,840
			환경부	광역상수도 확충	5,700
				소규모댐건설	15,550
				금호강 하천 조성	3,200
				국가하천유지보수	118,561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5,000
				하천재해대책비	199,69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805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200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20,947
				사적관리	2,000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2,187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1,727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529,948
				무형유산보호	3,809
			방위사업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2,982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1,236
				종교문화시설건립	35,914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845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13,37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000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27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4,500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3,380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41,050
				미술진흥기반구축	2,213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500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3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20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170
				발달장애인 지원	4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16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0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335
				노숙인등 복지지원	3,552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120,982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0
				제약산업 육성 지원	11,070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700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4,700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5,18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00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9,045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535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448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580
			산업통상자원부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5,925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1,004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12,87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일반)	1,500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000
				자율자동차 상용화	3,500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3,500
				스마트시티확산사업	55,000
				건축안전	1,933
			해양수산부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4,108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12,751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700
				해양관광육성	26,661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697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5,004
			식품의약품 안전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360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3,57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8,800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490
			행정안전부	지자체경쟁력지원	350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6,8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4,055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80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3,818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6,000
				재난대책비(보조)	359,960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3,900
				실화재훈련시설구축	3,799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40
			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관리지원	72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3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1,475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964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30,000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8,566
				전략작물산업화	27,783
				고품질쌀유통활성화	21,680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170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4,575
				임대형 스마트팜	34,700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778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2,555
				전통발효식품육성	6,14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식품산업인프라강화	2,750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4,186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19,852
				밭작물산업육성	8,975
				농식품소비기반조성	3,000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1,170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786
				반려동물산업육성	252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5,000
				가축방역대응지원	6,769
				가축사체처리지원	1,05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12,198
				가뭄대비용수개발	10,600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농촌용수관리	4,962
				농촌용수개발	5,000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	969
			해양수산부	천일염산업육성	573
				수산식품산업육성	2,117
				소비지유통시설 지원	375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5,917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2,760
				수산물 위생관리	850
				수산생물질병관리	346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1,000
				친환경양식어업육성	41,623
				수산종자산업육성	3,450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179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3,960
				관상어산업육성	1,500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1,773
				내수면자원조성	1,900
				자율관리어업육성	4,951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5,400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50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2,955
				어업인삶의질향상	1,800
				양식등재해대책비	5,783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환경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79,566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85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000
				농촌고용인력지원	4,980
				농촌경제활성화지원	160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104,450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30,800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639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해양수산부	양식장임대	5,000
		임업진흥 사업계정	산림청	임산물수출촉진	500
				조림	82,456
				숲가꾸기	149,423
				청정임산물이용증진	6,095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9,313
				목재산업육성	10,295
				목재이용증진	2,700
				산림병해충방제	462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국토교통부	인천서구거점도-경기김포약암리광역도로	1,892
		철도계정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0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6,407
				도봉산-옥정복선전철	79,453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	25,600
		항만계정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500
				인천남항	16,373
				표지시설	600
		교통체계 관리계정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5,500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63,30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39,857
				양산도시철도 건설	53,600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58,686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4,674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79,341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26,700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98,754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3,900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10,000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건설	6,000
				동북선경전철건설	45,700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9,000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4,70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744
				무공해차 보급사업	2,144,480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32,48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6,495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10,700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5,400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사업	67,348
			해양수산부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0,879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16,661
				비점오염저감사업	26,853
				공공폐수처리시설	68,377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77,433
				하수처리장 설치	845,922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44,168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1,333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6,300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5,60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3,21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34,51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500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2,485
				환경교육강화	1,000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33,63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263,335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24,635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1,505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3,879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4,901
				습지보전관리	8,26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160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29,098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165
				수돗물 공급 안전 강화	8,435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4,226
				재해대책비	1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	3,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8,45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아카데미	2,1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2,000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3,858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4,823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23,256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11,086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07,600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1,454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10,821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14,350
				탄소중립그린도시	16,08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200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25,631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800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50
				국내관광 역량 강화	8,000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275
	주택도시 기금	주택계정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4,055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73,070
				국민임대출자	73,157
				행복주택출자	50,977
				통합공공임대출자	441,215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29,280
	청소년육 성기금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35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00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민건강 증진계정	보건복지부	재활병원건립	5,500
				치매관리체계 구축	3,287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517
				국가암관리	3,60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658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110
	군인복지 기금	복지계정	국방부	복지시설운영	110
	양성평등 기금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49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78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11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2,063
	한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환경기초시설설치	67,021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359
				생태하천복원사업	3,464
				비점오염저감사업	1,650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20,569
	축산발전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751
				말산업육성지원	2,43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6,000
				가축분뇨처리지원	27,576
				축산물품질관리	2,000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1,550
				축산물HACCP지원	551
	전력산업 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3,000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2,830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2,074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853
				전국(소년)체전 지원	16,000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6,000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26,111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육성지원	100

(단위: 백만원)

세목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진흥기금				
	응급의료 기금		보건복지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822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390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682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125
				119구급대 지원	20,828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59,034
				비점오염저감사업	3,411
	금강수계 관리기금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26,291
				비점오염 저감사업	2,471
				생태하천복원사업	1,053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13,740
				비점오염 저감사업	297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185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6,050
				과수 생산유통지원	63,250
				원예시설현대화	7,07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7,470
				축사시설현대화	32,183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지원	16,29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5,000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5,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599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10,032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	4,469
	소계				9,916,743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330-04)	일반회계		국방부	시설정책지원	126,988
지방자치 단체 융자금 (450-05)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	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융자)	10,000
합계					225,710,878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상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및 “5개 세목” 예산 외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도 총 41개 세부사업에 1,038억원 편성되어 있음.[14)]

[2025년도 예산안 중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지방행정 재정지원 (013관)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524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7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8,073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8,665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5,85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6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604
				새마을운동지원	792
				생활공감정책추진	125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140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69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092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17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1,008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5,294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61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69
				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11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99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353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424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1,01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4,66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7,6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537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208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156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89
				지역경제활성화	759
				지역금융활성화	87
				지자체경쟁력지원	4,410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05

14) 전술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과 중복 금액 차감.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157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935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00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35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한국섬진흥원 지원	4,86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423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180
합계					103,837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상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개 세목” 예산 또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 외에, 지방소멸대응 또는 지역지원 목적을 지닌다고 해석될 여지가 큰 사업이 총 18개 세부사업에 3,947억원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타 지방소멸대응 또는 지역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3,360
2			기상청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6,678
3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33,128
4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231
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650
6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11,000
7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R&D)	1,800
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392
9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306
1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6,000
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301,349
1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414
13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4,334
14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161
1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5,9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16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계정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2,535
17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278
18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169
합계					394,696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상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개 세목” 예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 등이 모두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지방소멸대응사업의 규모가 정부 예산안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임.

□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분야의 예산은 통상 총괄부처를 설정하고 예산안 편성시 개별부처 예산요구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소속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개별부처 예산요구서를 사전 심의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함[15].

15)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별부처 예산요구서를 사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함[16].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예산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별부처 사업계획을 종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기재부는 이를 존중하여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하여야 함[17].

□ 그러나 지방소멸대응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지방소멸대응사업은 이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분류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별도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총괄 부처에 예산안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18]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18)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1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관련 2025년도 예산안(약 1조 9,494억원 규모)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한 2025 예산안 1조 9,494억원 반영」, 2024.9.1.).

Ⅱ-2. 부서별·사업별 분석

【대변인실】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7036-300)

○ 행정안전부는 2024~2025년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를 2023년 2억 500만원 대비 30% 이상 증액된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음. 그러나 증액 첫 해인 2024년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실적은 분량 및 조회수 측면에서에서 2023년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액된 예산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개 요

□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사업은 국민안전방송인 “안전한-TV”를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 내역사업과 그 밖의 재난안전정책을 홍보하는 “재난안전정책 홍보”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8억 400만원 대비 1,700만원(2.1%) 증액된 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777	804	821	17	2.1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	573	600	617	17	2.8
재난안전정책 홍보	204	204	204	-	-

나.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용역비 증액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필요

□ 2025년도 국민안전방송인 “안전한-TV”를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 내역사업에는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및 “안전한-TV” 홈페이지·유튜브 등 소통채널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가 2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용역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 내역사업	573	600	617	17	2.8
일반용역비(210-14)	196	270	270	-	-

□ 당초 동 일반용역비 예산은 2023년까지 2억 500만원 수준이었으며, 해당 금액 하에서도 2021~2023년간 복수의 입찰자가 응찰하여 2억원 미만에 낙찰액이 결정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콘텐츠 제작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동 일반용역비를 2억 7,000만원으로 3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안전한-TV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 발주 현황]

(단위: 원)

공고명	예산액	입찰자수 (부적격제외)	낙찰자	낙찰액	일반용역비 지출액 (조달수수료 포함)
2024년 안전한-TV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270,000,000	7인	㈜디노마드	254,300,000	256,232,680
2023년 안전한-TV 영상 제작 및 소통 채널 운영	205,000,000	2인	주식회사 클콩	194,000,000	195,784,400
2022년 안전한-TV 영상 제작 및 소통 채널 운영	205,000,000	2인	㈜다빈치커뮤니케이션	194,700,000	196,489,720
2021년 안전한-TV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205,000,000	2인	주식회사 제이원더	196,900,000	198,706,440

※ 자료 :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제는 2024년 예산 증액 이후 실제 낙찰 및 계약액도 약 2억 5,60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되고 있음에도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실적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19)]

2024년 10월 28일 기준 “안전한-TV” 외주제작 콘텐츠는 총 4개 시리즈 35건 7,084초 분량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15건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포함하여도 분량 면에서 2021~2023년 실적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또한 2024년 10월 28일 기준 “안전한-TV” 외주제작 콘텐츠의 조회수는 홈페이지 89,082회, 유튜브 1,400,061회인데, 이는 2023년 대비 일부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2021~2022년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고 보임.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실적]

(조회수 기준일: 2024.10.23.)

구분	시리즈수	콘텐츠수	총 분량	홈페이지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2024.10.28.	4개	35건	7,084초	89,082회	1,400,061회
2023	4개	38건	13,662초	98,500회	1,472,006회
2022	6개	78건	13,084초	120,761회	4,047,695회
2021	8개	45건	13,692초	99,455회	3,729,221회

주 1) 콘텐츠 수에는 제작후 미게시 콘텐츠 포함
2)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말까지 추가로 15건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자료 :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참고로 “안전한-TV” 콘텐츠 제작방식은 자체제작·외부제작으로 구분됨. 2024년 10월 28일 기준 자체제작 실적은 5개 시리즈, 84건, 22,287초임.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안전한-TV” 콘텐츠 외주제작 및 “안전한-TV” 홈페이지·유튜브 등 소통 채널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를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음.

이에 동 일반용역비는 증액된 예산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디지털정부혁신실】

2.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2032-506)

○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편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과 관련된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은 대부분 2020~2025년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예정인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ISMP 수립 과정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지방정부의 고도화를 위해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지능정보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9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	929	929	순증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ISMP 수립	-	-	929	929	순증

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적시 완료를 위해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시·도에서 사용하는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음(이하 두 시스템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시도·새올시스템"이라 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시스템들을 통하여 732개 국가위임사무와 273개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45개 시·도/시·군·구[20]와 58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시도·새올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음.

□ 시·도 행정시스템과 새올 행정시스템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약 20년이 경과하면서 2025년 말에는 하드웨어 노후화율이 9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운영체제/개발도구,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취약 요소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음.

20)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245개 개별 시스템으로 존재함.

[시도·새올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노후화 현황]

(단위 : 식, %)

구분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	백업장치	기타	합계
	Unix	x86					
장비현황	1,225	544	1,453	683	245	3	4,153
노후장비	1,180	513	1415	642	203	-	3,953
(노후화율)	(96.3)	(94.3)	(97.4)	(94.0)	(82.9)	-	(95.2)

※자료: 행정안전부

*주- 노후장비 및 노후화율은 2025년 말 기준

[운영체제/개발도구 및 상용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 종료 현황]

(단위 : 식, %)

구분	총 수량	기술지원 종료 수량	기술지원 종료 비율
OS/개발도구	3,538	3,310	(93.6)
상용SW	22,052	6,711	(30.4)
합 계	25,590	10,021	(39.2)

※자료: 행정안전부

*주- 2024년 상반기 기준

□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도·새올시스템의 장애 발생 및 그에 대한 대처와 연결되는데, 동 시스템에는 최근 약 9개월(2023.12.29.~2024.9.20.)[21] 동안 62건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125.8분이 소요되었음.

21) 2023년 12월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장애관리를 시작한 이후에 집계된 장애 관련 자료임.

[시도·새올시스템 장애발생 및 장애시간 현황]

(단위 : 건, 분)

구분		시·도 행정시스템	새올 행정시스템	계
장애발생		4	58	62
평균 장애시간(분)		55.0	130.7	125.8
장애 시간	30분 이내	3	21	24
	30분 초과 1시간 이내	-	13	13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	7	7
	2시간 초과 3시간 이내	-	5	5
	3시간 초과 4시간 이내	1	2	3
	4시간 초과 5시간 이내	-	4	4
	5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	-
	6시간 초과 7시간 이내	-	1	1
	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	1	1
	8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1	1
	9시간 초과 10시간 이내	-	-	-
	10시간 초과	-	3	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 2023.12.29.~2024.9.20.

□ 또한 시도·새올시스템이 약 20년 전 구축 환경과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담당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온라인·모바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접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 방식으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있으며, 종이 문서 중심의 행정 방식에 따라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하고 서류는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해야 하며 서류 보관을 위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함.

□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도·새올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노후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담당자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관공서 방문 없는 민원 접수 및 처리, 각종 인허가의 갱신 만료 사전안내, 인허가증 모바일 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간편화**하고, 모바일 업무환경을 통한 행정업무의 현장 완결, 단순·반복적 업무의 자동화 등 **담당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자동화·지능화 기반으로 개선**하며, 종전의 245개 시·도/시·군·구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17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로 하고 있음.[22)]

22)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2024.5. 참고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추진목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의 간편화	디지털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안정성 확보
추진전략	국민이 편리한 무관할, 무방문,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과제: ①~④)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지능화 업무방식 구축 (과제: ⑤~⑨)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과제: ⑩~⑬)
실행과제	①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 구현 ② 디지털 민원창구 서비스 구현 ③ 민원처리 자동알림 서비스 기반 마련 ④ 모바일 인허가·자격면허증 발급 서비스 구현	⑤ 현장업무를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 ⑥ 민간서류 자동검증처리 기반 마련 ⑦ 구비서류 전자화를 통한 전자문서 보관 및 활용 기반 마련 ⑧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 자동화 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⑩ 시도·시군구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AP 통합 ⑪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⑫ 기관간 통합연계 플랫폼 구축 ⑬ 지방행정 인프라 장애 예방 체계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2024.5.

□ 또한 동 사업의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5~2032년(ISM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2025~2027년, 운영·유지관리: 구축 후 5년)이고, 총사업비는 6,804억 7,300만원[23]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34% 및 66%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현황]

❍ **사업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기간**: 2025~2032년(**구축**-2025~2027년, **운영·유지관리**-구축 후 5년)
❍ **총사업비**: 680,473백만원(**구축비**-363,295백만원, **운영비**-317,448백만원)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국비-34%, 지방비-66%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예산안에는 ISMP를 수립하기 위한 비용 9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연차별 사업계획은 2025년 ISMP 수립[24] 후 10월부터는 우선적으로 1개 시·도 및 1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1차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25]하고, 이후 2차 및 3차 사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17개 시·도 및 22개 행정업무[26]로 확산한 후, 2028년

23)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금액이며, 2025년 ISMP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행정안전부는 ISMP 수립에 약 6개월(2~7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임.
25)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분석·설계→개발→구축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경우에는 17개 시·도별로 22개 행정업무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2개 전체 업무에 대해 한번에 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설계오류로 인한 구축 일정 지연 등 위험요소가 있어,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 검증·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6) 22개 행정업무: 문화체육광광, 보건, 복지, 여성, 환경, 지역산업, 수산, 물이용관리, 도로, 교통, 농업, 산림, 축산, 민원, 기획, 공직청렴, 공유재산, 물품관리, 행정, 법제, 의회, 민방위

부터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안 편성과 사업 계획에 차이가 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1차 구축 (‘25.10.~‘26.6.) (1개 시도)	2차 구축 (‘26.3.~‘27.2.) (11개 시도)	3차 구축 (‘27.1.~‘27.12.) (5개 시도)
▪**공통업무** 분석·설계·개발 ▪**중앙연계**업무 분석·설계·개발 ▪**1개 업무** 분석·설계·개발 ▪**개발환경** 구축 ▪**1개 시도, 1개 업무 데이터 이관** 및 적용 ▪**1개 시도 인프라** 구축 → **1개 시도 1개 행정업무 적용**	▪**19개 업무** 분석·설계·개발 ▪**11개 시도, 20개 업무 데이터 이관** 및 적용 ▪**11개 시도 인프라** 구축 → **11개 시도 20개 행정업무 확산**	▪**2개 업무** 분석·설계·개발 ▪**17개 시도, 22개 업무 데이터 이관** 및 적용 ▪**5개 시도 인프라** 구축 ▪**재해복구센터 구축** → **17개 시도 22개 행정업무 확산**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예산안에 ISMP 수립 외에 1차년도 구축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편성을 요구[27)28)]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5.
-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28) 동 사업의 경우, 예산 요구 및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을 전제하여 ISMP 수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5.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ISM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동 지침에 따르면 실제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5년에 ISMP를 수립하고 2026년 이후에 편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2028년부터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개통한다는 계획도 순연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편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측면이 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ISP 추진(2015.7.~12.)
❍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계자 합동토론회, 지자체 설문조사, 중앙부처 설명회, 시도·새올 팀장 회의, 실무TF 회의 등을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 (2017.11.~2022.1. 34회)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추진(2018.9.~2019.3.)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BPR[29] 수립(2021.3.~2021.9.)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2022.4.)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 확정(2024.8.)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지방행정과 관련된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은 대부분 2020~2025년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예정인바,

29) BPR: 업무과정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행정안전부는 향후 ISMP 수립 과정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행정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개편 현황]

시스템 명	기존 시스템 구축시기	차세대(신규) 시스템 구축 시기	비고
주민등록시스템	2003년	2019~2020년	완료
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	2005년	2020~2022년	완료
지방세시스템	2005년	2020~2024년	완료
지방세외수입시스템	2005년	2020~2024년	완료
부동산거래시스템	2007년	2020~2024년	완료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2008년	2020~2023년	완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2008년	2019~2022년	완료
국가주소시스템 (디지털주소정보플랫폼)	2011년	2023~2025년	구축 중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시도·새올시스템)	*시·도 행정시스템: 2004년 새올 행정시스템: 2006년*	*2025년 예산안 - ISMP 수립 비용 편성*	

※자료: 행정안전부

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2031-505)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사무공간을 인근 KT 광화문 빌딩의 국유재산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건설비 예산(7억 8,000만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안 편성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KT 광화문 빌딩의 사용공간, 내부공사 기간 및 이전 시기, 현 사무공간의 임차기간 등 명확한 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30]와 동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3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31]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77억 700만원 대비 9억 7,700만원 증액된 8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6,759	7,707	8,684	977	12.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6,759	7707	8,684	977	12.7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전 예산의 명확한 집행 계획 수립 필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직무수행경비(250), 연구용역비(260), 민간이전(320), 건설비(420)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6,759	7,707	8,684	977	12.7
-인건비(110)	622	756	760	4	0.5
기타직보수(110-02)	485	562	562	-	-
상용임금(110-03)	137	194	198	4	2.1
-운영비(210)	4,428	4,862	5,054	192	3.9
일반수용비(210-01)	1,421	1,600	1,602	2	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91	328	328	-	-
특근매식비(210-05)	60	74	74	-	-
임차료(210-07)	921	884	884	-	-
유류비(210-08)	7	13	13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3	12	12	-	-
복리후생비(210-12)	17	21	21	-	-
일반용역비(210-14)	1,358	1,790	1,790	-	-
관리용역비(210-15)	88	78	268	190	243.6
기타운영비(210-16)	62	62	62	-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여비(220)	314	524	524	-	-
국내여비(220-01)	126	134	134	-	-
국외업무여비(220-02)	188	390	390	-	-
-업무추진비(240)	274	346	346	-	-
사업추진비(240-01)	125	125	125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9	221	221	-	-
-직무수행경비(250)	130	179	179	-	-
직책수행경비(250-02)	130	179	179	-	-
-연구용역비(260)	897	1,000	1,000	-	-
일반연구비(260-01)	858	1,000	1,000	-	-
정책연구비(260-02)	39	-	-	-	-
-민간이전(320)	19	40	41	1	2.5
고용부담금(320-09)	19	40	41	1	2.5
-건설비(420)	-	-	780	450	순증
실시설계비(420-02)	-	-	40	40	순증
공사비(420-03)	-	-	740	740	순증
-유형자산(430)	75	-	-	-	-
자산취득비(430-01)	75	-	-	-	-

□ 동 예산안 중 건설비(420)는 2025년에 신규 편성된 과목으로,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사무공간[32]을 인근 KT 광화문 빌딩[33]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규 사무공간의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 7억 8,000만원[실시설계비(420-02) 4,000만원, 공사비(420-03)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34]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전과 관련하여, KT 광화문 빌딩은 12~14층이 국유재산[35]이므로 해당 공간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연간 약 7억 3,000만원[3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13층 (교보생명빌딩)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WEST))
34)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도 각각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안에 사무공간 이전 예산을 편성하였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1033-402): 실시설계비 3,200만원, 공사비 7억 3,000만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실시설계비 4,000만원, 공사비 7억 4,000만원
35)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11. (생 략)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생 략)

□ 다만,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사무용 등의 행정재산[37]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국유재산과 사용 목적 및 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38][39]

---

36) 월 임차료 60,808,000원×12월=729,696,000원

37)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8)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②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국유재산법」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9)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 략)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생 략)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KT 광화문 빌딩의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관서인 행정안전부의 사용 신청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이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안 편성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현재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전 시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현재 사무공간 임차 계약기간은 2025. 8.21.까지[40]로 계약 종료 시기와 이전 시기를 일치시킨다면, 임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편성된 1년 기준 임차료 7억 800만원 중 약 4개월 분인 약 2억 2,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음.[41]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현재 KT 광화문 빌딩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입주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1년치 임차료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해당 공사 일정은 현재 2025년 3월 초까지로 되어 있고, KT 측은 국유재산 외 부분에 대하여 8월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9월 이후에는 입주를 한다는 계획임.[42]

---

40) 임차 계약기간: 2024.8.22.~2025.8.21.

41) 계약서 상의 임차비용은 729,696,000원(월 임차료 60,808,000원×12월)이나, 예산안에는 708,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 예산에서 약 8개월분의 임차료 486,464,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221,536,000원임.

42) 시공사 측에서 2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KT 측은 2개월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입주 시기는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는 것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KT 측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에 맞추어 건설비를 집행한다면, 현재 임차계약 종료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관서로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KT 광화문 빌딩의 사용 공간, 내부공사 기간 및 이전 시기, 현 사무공간의 임차기간 등 명확한 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

○ 동 사업은 ISP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총사업비가 중간산출물 검토 요청 당시 약 160억원에서 10월 현재 약 472억원(약 3배)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동 사업의 BPR/ISP를 현재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사업의 'AI 행정업무 적용' 내역사업[43]에서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의 예상 총사업비에 BPR/ISP 수립 예산(12억 5,700만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최종 ISP 산출물 도출 이후 정확한 총사업비와 사업 확대·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동일한 사업명으로 행정안전부(53억 9,200만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44억 7,200만원)에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민간의 최신 초거대 AI 기술과 클라우드 도입 등 분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사업을 두 기관의 협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업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전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초거대 AI 서비스 운영 수요, 초거대 AI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시의 어려움,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AI 서비스의 유형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동 조사에는 19개 기관만이 응답하여 수요기관의 전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 있어 추가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초거대 AI 서비스 수요를 보다 충실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3)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위한 BPR/ISP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2024년 신규 편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 완료 예정임.

가. 개 요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3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	-	5,392	5,392	순증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	-	4,235	4,235	순증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	-	1,037	1,037	순증
플랫폼 구축 관련 하드웨어 구매	-	-	120	12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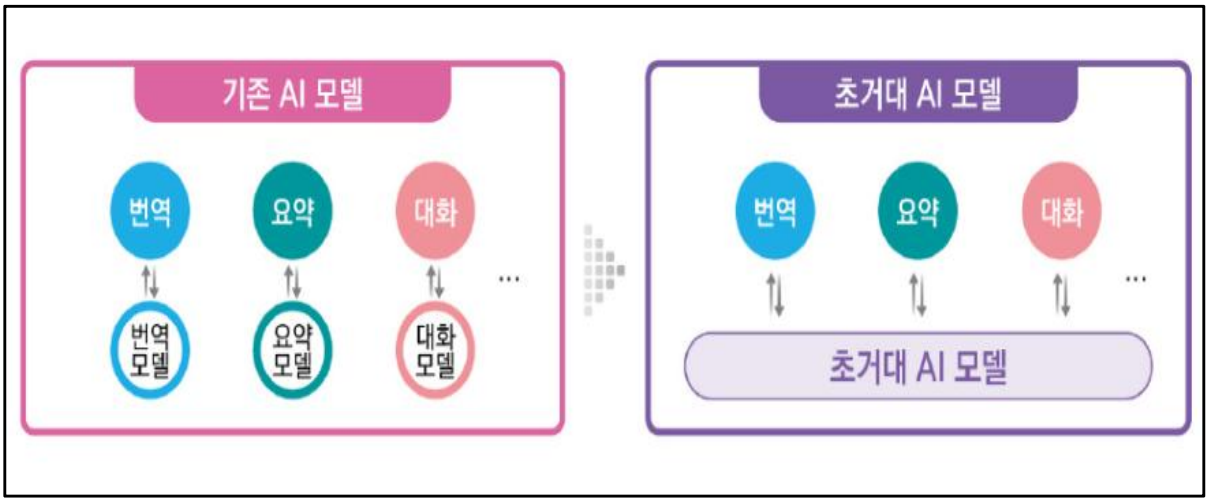
나. ISP 최종 산출물 도출 이후 정확한 총사업비 및 사업 확대·변경 사유, 필요성 등 확인 필요 등

□ 초거대 AI(Super-Giant AI, Hyperscale AI)는 자연어처리, 이미지인식, 의사결정 등에서 인간 수준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파라미터[44]와 데이터로 학습한 대규모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의미함.[45]

□ 일반적으로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대규모 인공신경망[46]을 사용할 때 초거대 AI라고 하며, 초거대 AI는 특정 과업을 위해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AI보다 대량의 데이터 및 처리능력을 기반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47]

[기존 AI 모델과 초거대 AI 모델 비교]



※자료: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20.

44)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 인간 뇌의 시냅스(뉴런 간 정보 전달 통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연산 능력이 높아져 복잡한 문제를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음.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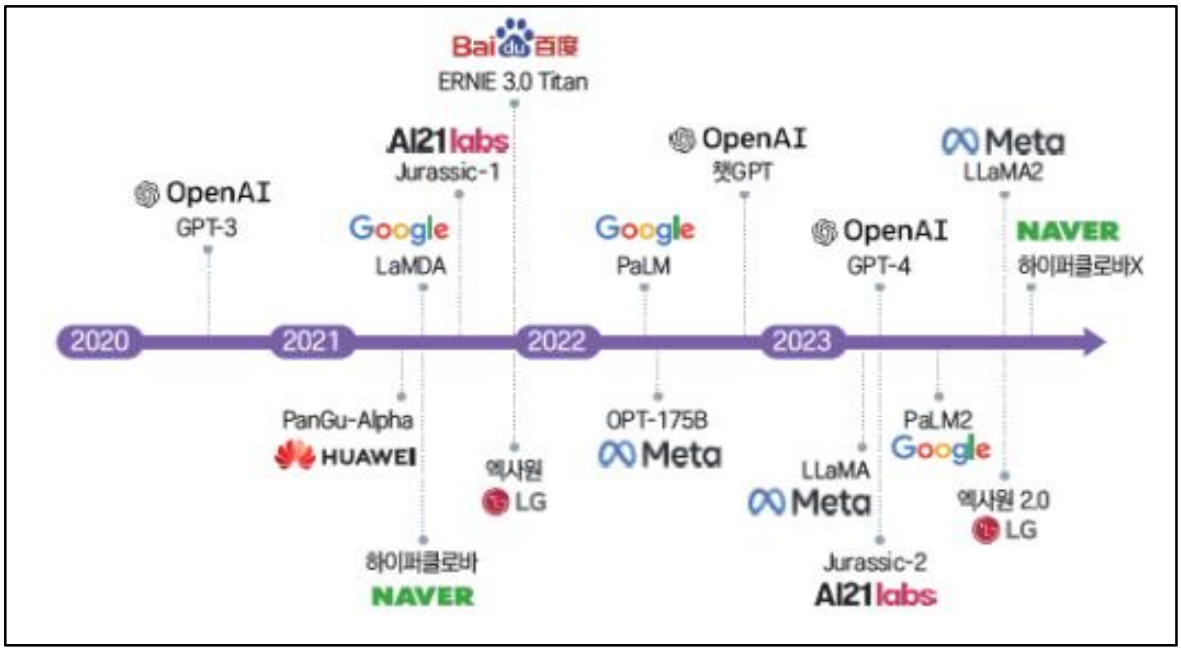
45) 신성필, "초거대 AI의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념 및 표준화 동향", 정보와 통신 제40권 제6호, 한국통신학회, 2023, p.1.

46)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가 뉴런이라는 뇌세포와 각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로 구성되는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AI의 핵심 구성 요소임.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21.)

47)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21.

□ 2020년 초까지 AI 모델들의 파라미터 규모는 보통 10억 개 단위였으나, 2020년 6월 미국의 AI 개발 기업인 오픈AI가 1,75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인 'GPT-3'를 출시하면서 초거대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48] 현재 국내외 초거대 AI 주요 모델로는 하이퍼클로바X(네이버), 엑사원 2.0(엘지), LLaMA2(메타), GPT-4(오픈AI) 등이 있음.

[초거대 AI 주요 모델의 등장]



※자료: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 초거대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은 '파운데이션 모델'[49]이라고 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에 파인튜닝[50] 등의 과정을

48) ZDNET Korea, "초거대 AI로 우리 생활 큰 변화…지금 AI팀 잘못 꾸리면 낭패", 2022.9.13.
49)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FM): 초거대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사전학습 모델
50) 파인튜닝(Fine-tunning): 파운데이션 모델을 특정 작업이나 분야에 최적화하기 위해 특화된 데이터로 모델의 가중치

통해 여러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AI이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다른 기업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그 외 대부분의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작문보조, 언어번역, 업무지원, 이미지 생성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과 웹을 만들고 내고 있음(참고: 국내외 초거대 AI 모델 및 응용서비스 주요 사례).[51][52]

□ 공공분야에서도 초거대 AI 도입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중점 과제로 추진[53]하고 있는데,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답변, 문서 관련 업무 담당자의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 근로자에 대한 해결방안 제공 등 70개 과제에 대하여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개념검증을 실시[54]하였고,

---

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추가로 학습시키는 방법

51) 초거대 AI 산업생태계는 ①초거대 AI를 직접 개발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②파운데이션 개발 기업에 클라우드 플랫폼과 AI반도체를 제공하는 인프라, ③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B2B(기업 대 기업), B2C(기업 대 소비자)용 앱과 웹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로 나누어짐.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

구분	관련 내용
파운데이션 모델	초거대 AI 개발
인프라	파운데이션 개발 기업에 클라우드 플랫폼과 AI반도체 등 제공
응용 서비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B2B, B2C용 앱·웹 제공

※자료: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34.

52) 대기업은 자사 서비스에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성능·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거대 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특화영역 데이터를 추가학습한 전문 AI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 있음.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

53) 기본원칙: 6. 공공데이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방식으 로 추진하다.
7.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과학화한다.
중점추진과제: 2.4 인공지능·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3.5 공공분야에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4.)

54)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등 BPR/ISP 중간산출물 검토신청서”, 행정안전부, 2024.5.

2024년에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위한 BPR/ISP를 수립[55]하고, 2025년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2023년도 공공부문 주요 초거대 AI 활용 개념검증 과제(예시)]

구분	주요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데이터 기반의 **조사보고서 작성지원** 시스템 실증
법무부	-범죄예방업무를 위한 **문서제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하는 서비스 실증
국세청	-**세법 상담 등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비대면 업무 도움 서비스 실증
관세청	-해외직구 등 수출입컨설팅(FTA협정 포함) 등 **AI 직구비서 서비스**
조달청	-사업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생성**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고충 민원의 민원 의도를 파악, **자동 답변추천 및 자동처리** 실증
국회도서관	-국회의 다양한 **의회 정보와 뉴스 및 소셜미디어 분석·알림 서비스** 실증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데이터를 학습**한 도서관 서비스 **질의응답 챗봇 서비스**
수원시청	-지자체 **업무 관련 검색, 요약, 분석, 챗봇** 등 행정지원 서비스 실증
양산시청	-공문서 기반의 **사업계획, 보도자료 등 초안 작성 및 요약 정리 서비스** 실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AI 기반의 대민응대 챗봇 서비스** 실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실시간 상담서비스 지원** 및 **산재 신청 서비스** 테스트 및 실증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안전관련 데이터 학습한 AI가 **현장근로자 대상 해결방안 등 제공**

55)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위한 BPR/ISP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2024년 신규 편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 완료 예정임.

구분	주요 추진 내용
인천교통공사	-인천 도시철도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실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
한국공항공사	-**공항이용 정보를 예측 추천**하고, 관련 **편의시설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기관 보유 서비스에 AI를 적용, **사용자 맞춤형 관광지, 여행지 검색 서비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계약 등 규정 가이드를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실증
중소기업중앙회	-정책 건의, 사후관리 등 업무 효율화 목적의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실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구축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콘텐츠 기반의 **QA 서비스**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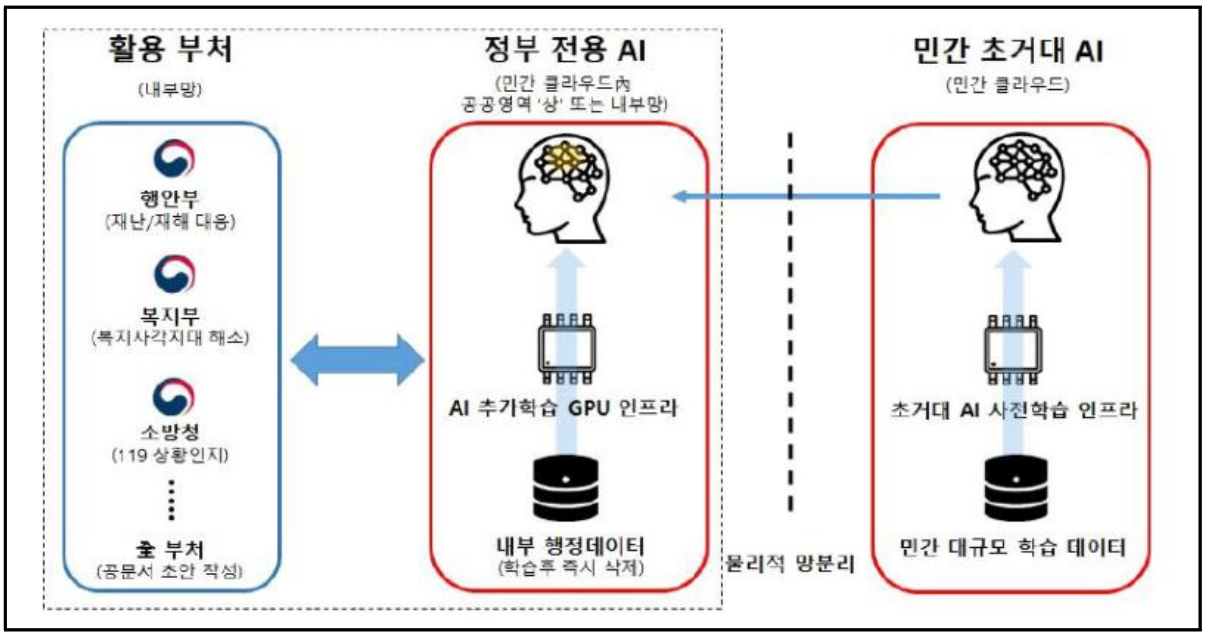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민간의 여러 초거대 AI 모델을 공공분야 전용으로 독립적인 영역에 구성된 민관협력형(PPP[56]) 클라우드에 도입하고, 동 초거대 AI 모델이 정부 내외부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통기반을 구현한 후, 각 기관들은 공통기반의 초거대 AI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해당 모델이 각 기관의 특화된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하여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제공[57]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6)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57)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내외부 지식검색, 문서 초안 작성 및 요약 등)는 동 사업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 전용 초거대 AI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통해, 각 기관이 민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용이하게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관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구축·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며, 보안 등의 이유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7차년도까지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472억원으로 예상됨.[58] 1차년도 사업(98.6억원) 내용은 초거대 AI 운영관리시스템

58) BPR/ISP는 2024년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약 472억원은 10월 중순까지의 수립 내용을 반영한 것임.

구축, 공통 AI 서비스(내외부 지식검색, 문서 초안 작성·요약) 개발 및 AI를 이용할 수 있는 대화형 창(싱글 원 윈도우) 구축, 회의록·계획서·지침서·계약서 등 정부 내부 문서와 보도자료·연구보고서·법령 등 외부 문서의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공통기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AI플랫폼·AI모델 및 장비(H/W) 사용료 지급 등이고, 2차년도 사업(149.5억원)은 공통 AI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개발과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AI플랫폼·AI모델 및 장비(H/W) 사용료 지급,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며, 3~7차년도(224.4억원)에는 AI플랫폼·AI모델 및 장비(H/W) 사용료 지급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연도별사업비 현황]

<table>
<tr><th rowspan="2">사업연차
(사업비)
이행과제</th><th colspan="3">총사업비: 472억원</th></tr>
<tr><th>1차년도
(98.6억원)
-행정안전부: 53.9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7억</th><th>2차년도
(149.5억원)</th><th>3~7차년도
(224.4억)
-3차: 43.8억, 4차: 44.3억, 5차:44.8억,
6차: 45.3억, 7차: 46.2억</th></tr>
<tr><td rowspan="2">과제1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공통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 AI 플랫폼 도입</td><td>·운영관리시스템 구축: 7.7억
-권한/인증 관리,
정산 관리, 통합관제</td><td></td><td></td></tr>
<tr><td>·구독료(과기부)[3]: 16.7억
-플랫폼 사용료: 15.7억
-AI 모델 사용료: 10억</td><td>·구독료: 22.3억
-플랫폼: 18.5억
-AI 모델: 3.8억</td><td>·구독료: 113.5억
(단위: 억원)<table><tr><th>구분</th><th>3차</th><th>4차</th><th>5차</th><th>6차</th><th>7차</th></tr><tr><td>플랫폼</td><td>18.5</td><td>18.5</td><td>18.5</td><td>18.5</td><td>18.5</td></tr><tr><td>AI 모델</td><td>3.8</td><td>4.0</td><td>4.2</td><td>4.4</td><td>4.6</td></tr><tr><td>합계</td><td>22.3</td><td>22.5</td><td>22.7</td><td>22.9</td><td>23.1</td></tr></table></td></tr>
<tr><td>과제2
공통 AI 서비스 개발
-공통 AI 서비스 개발</td><td>·공통 AI서비스 개발: 28.2억
-내외부 지식검색
-문서 초안 작성 및 요약</td><td>·공통 AI서비스 개발: 59.1억
-고도화 및 추가 서비스 개발</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싱글 원 윈도우[1] 구축
-PoC 및 구축 지원</td><td>·싱글 원 윈도우 구축: 6.4억
-AI 이용 프롬프트 창</td><td></td><td></td></tr>
<tr><td>·PoC[4] 및 서비스 기획 (과기부): 7.1억
-15건 수행</td><td>·PoC 및 서비스 기획: 7.1억
-15건 수행</td><td></td></tr>
<tr><td rowspan="2">과제3
공통기반 활용 데이터 구축
-내부용 공용학습 데이터 구축
-외부용 공용학습 데이터 구축</td><td>·공용 학습 데이터 구축 (RAG[5] 포함): 10.4억
-회의록, 계획서, 지침서, 계약서 등 내부 문서
-2개 공통 AI 서비스[6] RAG DB[5] 구축</td><td rowspan="2">·공용 학습 데이터 구축: 13.1억
-학습/평가/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RAG DB 구축: 18.6억</td><td rowspan="2"></td></tr>
<tr><td>·공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과기부): 9.8억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법령 등 외부 문서</td></tr>
<tr><td>과제4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PPP[2]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td><td>·장비비: 1.2억
-운용관리시스템[7]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비(과기부): 11.1억
-운용(GPU[8]) 클라우드 인프라</td><td>·장비비: 26.5억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료</td><td>·장비비: 75.4억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료
(단위: 억원)
<table><tr><th>3차</th><th>4차</th><th>5차</th><th>6차</th><th>7차</th></tr><tr><td>14.4</td><td>14.7</td><td>15.0</td><td>15.3</td><td>16.0</td></tr></table></td></tr>
<tr><td>(과제 기타-1)
공통기반 시스템 및 범정부 공통 AI 서비스 운영</td><td></td><td>·운영·유지관리비: 2.8억
-공통기반 시스템: 1.6억
-범정부 공통 AI 서비스: 2.8억</td><td>·운영·유지관리비: 35.5억
-공통기반 시스템: 8.0억
-범정부 공통 AI 서비스: 27.5억
(단위: 억원)
<table><tr><th>구분</th><th>3차</th><th>4차</th><th>5차</th><th>6차</th><th>7차</th></tr><tr><td>공통기반 시스템</td><td>1.6</td><td>1.6</td><td>1.6</td><td>1.6</td><td>1.6</td></tr><tr><td>공통 AI서비스</td><td>5.5</td><td>5.5</td><td>5.5</td><td>5.5</td><td>5.5</td></tr><tr><td>합계</td><td>7.1</td><td>7.1</td><td>7.1</td><td>7.1</td><td>7.1</td></tr></table></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일부 자료 재구성)

*주-1) **싱글 원 윈도우**: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대화형 프롬프트 창(웹페이지)

2)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클라우드**: 공공분야 전용으로 독립적인 영역에 구성된 클라우드

3) 사업 초기에는 PPP 클라우드에 2개 초거대 AI 플랫폼이 입주할 예정이며, 초거대 AI 서비스 사용량에 기반하여 구독료 지급

4) **PoC(Proof of Concept)**: 특정 개념이나 이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실험적 프로젝트

5)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DB)**: AI가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또는 참조하는 지식 데이터베이스)

6) 2개 공통 AI 서비스: 내·외부 지식검색 서비스, 문서 초안 작성 및 요약 서비스

7) **운영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실행에 필수적인 H/W, S/W 등 인프라 사용료 지급, 인프라는 PPP 클라우드에 위치

8) **GPU(Graphic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 AI 컴퓨팅에 사용되는 주요 연산장치로 AI의 핵심 하드웨어

□ 동 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관련 세부지침[59]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ISP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60]에서 중간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예산 편성은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ISP 종료 이전에 중간산출물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61]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24년 5월 중간산출물 검토 요청 시 약 160억원에서 현재는 약 472억원(약 3배)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온나라 문서시스템[62]에 초거대 AI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보다 범정부적으로 민간의 최신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현하고, 범정부적

---

5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5.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60)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위한 BPR/ISP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2024년 신규 편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 완료 예정임.

61) "2025년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5.
-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 (생 략)
·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ISP 또는 ISM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의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ISP 또는 ISM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62)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행정업무에 대한 문서작성, 결재, 의사결정과정 등 문서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정부 표준업무관리시스템임.

확산 관점에서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각 기관의 AI 서비스 개념 실증(PoC)과 서비스 기획, AI플랫폼·AI 모델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변경하였기 때문임.

□ 또한 동 사업의 BPR/ISP는 현재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사업의 'AI 행정업무 적용' 내역사업[63]에서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의 예상 총사업비에 BPR/ISP 수립 예산[64]은 제외되어 있는 바, 최종 ISP 산출물 도출 이후 정확한 총사업비와 함께 사업 확대·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둘째,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함)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위 표의 1차년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AI플랫폼·AI모델 및 장비(H/W) 도입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및 외부용 공용 학습 데이터 구축과 각 기관의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개념검증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음.[65][66]

63)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위한 BPR/ISP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2024년 신규 편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 완료 예정임.

64)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2024년 신규 편성)에 편성된 BPR/ISP 예산은 12억 5,700만원임.

65)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세부사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1943-301) - 4,472백만원 신규 편성
-사업목적·내용: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도입하여부처별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전국민 AI 일상화 지원
-**산출내역: 가.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1식 x 3,488백만원**

□ 이는 민간의 최신 초거대 AI 기술과 클라우드 도입 등 분야에 과기정통부의 역할[67]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사업을 두 기관의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68]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업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전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지원 서비스 모델 설계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바 있음.[69] 동 조사 결과 초거대 AI 관련 서비스를 기획 또는 개발한 경험(PoC 단계 포

---

* 초거대 AI 모델, 개발지원 SaaS 등 민간의 플랫폼을 활용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개발 비용

나.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1식 x 984백만원

* 데이터분석가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범정부 공용 지식·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기대효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을 통해 부처별 도입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공공지능정보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66)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년도(2026년) 이후 담당 업무는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않았음.

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생 략)

28.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9.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30.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1.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2.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기준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사이버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3. 인공지능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

34.~107. (생 략)

④~⑦ 삭제

68) 보도자료, "부처 칸막이 없애고 한 팀으로 일한다, 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2024.4.15.
보도자료, "행안부-과기정통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관계부처 합동, 2024.5.1.

69)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예정기관 대상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활용 수요조사", 2024.5.14.~5.24.

함)이 있다는 응답은 25%였으나, 계획 또는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38%로 더 많아 초거대 AI 서비스 운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사에 회신한 기관들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할 의향이 있음[70]과 함께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시 겪었던 어려움[71]과 필요로 하는 AI 서비스의 유형[72] 등을 답변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동 조사를 통해 동 사업과 관련한 시사점[73]을 도출하여 BPR/ISP를 추진하고 있음.

---

70) 회신 기관 모두 초거대 AI 서비스를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71)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의 성능 차이, 내부망에 AI 모델을 도입하는 절차에 있어 보안성 검토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의 기피, 기관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 부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제약 등을 답변하였음.

72)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질의응답 78%, 문서작성 70%, 분석·활용 65%, 상담지원 60% 등의 순으로 답변)(중복선택 가능)하였음.

[공공업무 적용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

구분	주요 내용
질의 응답	- 작성된 행정문서나 내부 자료에 대해 키워드, 날짜별 등 원하는 자료를 말하듯이 검색하는 유형
분석·활용	- 표, 그래프, 이미지, 수기 작성된 문서 등을 정형데이터로 전환·활용하여 통계, 분석, 시사점 도출 등으로 제공하는 유형
문서 작성	- 정기간행물, 회의자료 요약, 번역, 이메일 작성 등 단순·반복적 보고서의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유형
기획·창작	- 행사, 프로그램 기획, 카이라이팅 문구 등 기존 유사 자료를 학습해 관련된 이미지나 자료를 창작해 주는 유형
상담 지원	-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유사사례와 과거 이력을 검색하고, 자료를 확인·대조·요약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
서비스 처리	- 대화형 질의를 통해 외부서비스의 추가적인 자료나 기능을 연계하여 행정, 민원 업무를 중단없이 완결·처리하는 유형

※자료: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4.

*주- 각 서비스 유형은 독립적,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유형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73) 예) 개발환경: 초거대 AI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환경 제공 지원 필요
데이터 보안 이슈로 내부망 내에서 사용가능한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
모델 및 데이터: 각 기관에서 개별 도입 시 비용과 네트워크 문제로 AI 사용에 제한이 있어 공통 플랫폼 내에 성능이 보장된 모델 지원 필요
Fine Tunning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필요

□ 다만, 동 수요조사는 19개 기관만이 회신[74]하여 수요기관의 전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 있어 추가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초거대 AI 서비스 수요를 보다 충실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74)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공공기관에서 회신 응답하였으며, 기관별 다중 응답으로 인해 회신 응답 수는 40개임.

참고 국내외 초거대 AI 모델 및 응용서비스 주요 사례

[국내외 기업별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과 응용 서비스]

국가	기업명	파운데이션 모델	대표 AI 서비스
미국	MS -OpenAI	GPT-3	▪ 챗GPT - 인간 수준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생성활 수 있는 챗봇
		GPT-4	▪ 챗GPT 플러스 - 최신지식 보유, 이미지 등을 활용한 소통 가능(유료 버전) ▪ MS 코파일럿 - MS office에 GPT-4를 장착하여 대화를 통해 워드, 액셀, 파워포인트 등 작업 가능
	Google	PaLM-2	▪ 바드 - 챗GPT의 대항마로 제작된 구글의 챗봇, 챗GPT 대비 한국어와 일본어 능력 우위 ▪ Med-PaLM-2 - 의료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인튜닝한 모형으로 엑스레이 판독 등 의료인 보조기능 탑재
	Meta	LLaMA	▪ Chat-LLaMA - Nebuly에서 LLaMA를 기반으로 제작한 챗봇,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도 챗GPT 수준의 언어능력 보유 ▪ Vicuna-13B - UC Berkely, CMU 등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 대규모 언어모델
중국	HUAWEI	PanGu-Alpha	▪ PanGu-Coder - 코드 자동완선 모델, 텍스트 명령어를 기반으로 스스로 코드 생성
	Aibaba	M6	▪ Tongyi - M6 발표 이후 알리바바에서 공개한 챗봇
	Baidu	ERNIE 3.0 Titan	▪ ERNIE Bot - 언어 이해,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챗봇

국가	기업명	파운데이션 모델	대표 AI 서비스
한국	NAVER	하이퍼클로바X	▪ 클로바노트 - 음성기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자동으로 요약하는 생산성 향상 도구 ▪ 클로바스튜디오 - 코딩 없이 AI를 만들 수 있는 노코드 AI 개발 플랫폼
	LG	엑사원 2.0	▪ 유니버스 - 전문가용 챗봇 ▪ 디스커버리 - 화학·바이오 분야 특화·R&D 지원 플랫폼 ▪ 아틀리에 - 창작 지원 플랫폼

※자료: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39-40.

[국내 초거대 AI 서비스 현황]

개발기업	모델명	주요 내용
KAKAO	프로젝트 KoGPT	-'21.11. GPT-3 기반으로 한국어 특화 AI로 발전시킨 언어모델 -한국어 및 한국문화지식 관련 높은 성능을 보이는 언어모델 고도화 -범용화를 위한 초거대 언어모델, 프로덕트 최적화 언어모델 보유
	프로젝트 Karlo	-'22.12. 칼로1.0 깃허브[75] 공개, 텍스트 기반으로 고품질 이미지 생성 -'23.7. 칼로2.0 카카오 디벨로퍼스 API 형태 공개 -'23.11. 칼로 AI 프로필 서비스 톡채널 개설
KT	믿:음	-'22. 믿:음 LLM[76] 확보, '23. 믿:음 Studio 공개 -AI Full Stack 전략 기반으로 맞춤형, 신뢰성, 편의성 효율성 특화 -AICC, 지니TV에 적용되어 상담사 및 마케터 업무 효율화 및 일상 속의 초거대 AI 확산을 위해 B2B, B2G 사업 중
LG	엑사원 (EXAONE)	-'23.7.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 2.0 공개 -고품질 학습데이터, 비용 효율성, 맞춤형 모델 설계 등 경쟁력 보유 -전문가 AI 서비스 개발의 기반인 엑사원 3대 플랫폼 유니버스, 디스커버리, 아틀리에 공개
NAVER	Hyper ClovaX	-자사 서비스에서 축적된 다양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언어모델로 ChatGPT보다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모델 -이용자와 자연스러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법과 제도, 문화적 맥락 등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AI -기업용 하이퍼클로바X B2B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대규모 AI 프로덕트 구축 가능
SKT	에이닷(A.)	-'23.9. 한국어 LLM 서비스 에이닷 정식 출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대화 및 고객센터 등 통신사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모델 -통화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AI 전화 서비스와 생활 전반 일상에 AI를 결합한 AI 수면관리, AI 뮤직 서비스 제공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24.4.

75) 깃허브(GitHub):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버전 관리 및 협력 플랫폼
76) LLM(Large Language Model): 초거대 규모로 자연어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언어 모델

[국내외 초거대 AI 기반 응용 서비스 주요 사례]

서비스명	구분	주요 내용
<국외 기업>		
슈도라이트	**작문보조**	-GPT-3 기반 AI 작문 프로그램 -작가가 초안을 입력하고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하면, AI가 문장 보완, 줄거리·은유 제시 등 재작성
NLLB-200	**언어번역**	-200개 언어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는 AI 서비스
코파일럿	**코드생성**	-입력 문장(자연어 요구사항)에 맞는 코드 생성 -GPT-3 모델을 이용하여 깃허브의 수많은 리포지토리[77]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발
you.com	**검색엔진**	-검색 사이트에 이미지 생성, 작문, 코드 생성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과 연동
ChatPDF	**문서질의**	-PDF파일을 업로드하여, PDF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서비스
GEN-1	**비디오생성**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지정한 스타일을 적용해 기존 비디오를 새로운 비디오로 변화
재스퍼	**광고디자인**	-GPT-3.5 기반, 블로그 게시물, 광고문구. 마케팅문구 작성을 지원하는 AI 카피라이팅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제공
<국내 기업>		
뤼튼 트레이닝	**작문보조**	-SNS광고, Push알림, 보도자료 등 상황에 맞는 문장 생성 -입력한 글에 대하여 적절하 피드백과 참고자료 제공
모카	**작문보조**	-광고, 헤드라인, 상품설명, 세일즈 카피 문구 등을 상품 콘텐츠에 맞게 생성
틸다	**이미지생성**	-언어-이미지 양방향 데이터를 생성하는 AI
클로바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람 수준의 자연스러운 대화 서비스를 통해 독거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 돌봄 역할 수행
킵그로우	**업무지원**	-SMS·메일 발송, SNS 포스팅 등 14종 마케팅 업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
아숙업 (AskUp)	**문서요약**	-ChatGPT 기반으로 OCR[78]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카카오톡 AI 챗봇
연말정산 알리GPT	**세무보조**	-연말정산과 세금 관련 질문에 맞춤형 답을 제공
AI 여행플래너	**여행서비스**	-ChatGPT 기반으로 맛집·명소·날씨·팁·여행지추천 등 여행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 가능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24.4.,
국회도서관, “초거대AI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3-5호, 통권 제105호, 2023. p.41. 참고

77) 리퍼지토리(repository):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같은 각종 자원을 자원간의 관련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자원 관리 데이터 베이스
78)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지방행정국】

5. 지자체경쟁력지원(1139-307)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연례적으로 법령상 개최 횟수(분기별 1회)에 따라 개최·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임차료 비목의 경우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내역사업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식, 국제컨퍼런스 등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인데, 이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사업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사와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사업 예산은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내역사업은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한시사업인데, 행정안전부는 향후 내내역사업인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은 합동평가 운영·행정컨설팅 및 시스템 운영,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53억원 4,100만원 대비 10억 6,900만원 증액[79]된 5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경쟁력지원	2,991	5,341	6,410	1,069	20
합동평가 운영	412	371	342	△29	△7.8
합동평가 행정컨설팅	19	17	17	-	-
성과관리 컨설팅	32	29	29	-	-
합동평가 시스템 운영	801	761	761	-	-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109	98	98	-	-
지방행정의 달인	64	58	58	-	-
다산목민대상 시상	86	77	77	-	-
국제교류 지원	54	150	150	-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291	312	290	△22	△7.1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959	1,297	1,297	-	-
지자체 분쟁조정 지원	46	41	41	-	-
자치제도연구	118	120	90	△30	△25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	-	750	750	순증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구축	이관	2,010	2,410	400	19.9

※ 자료: 행정안전부

79)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민선지방자치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 연구용역, 포럼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구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

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정 수준의 임차료 예산 편성 필요

□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86조[80]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 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24.9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959	592	1,297	577.2	1,297
일반수용비 (210-01)	16	10	6	0.6	50.5
임차료 (210-07)	16	6	160	5	120
일반용역비 (210-14)	916	570	1,100	563	1,100
국내여비 (220-01)	7	2	16	2	13.5
사업추진비 (240-01)	4	4	15	6.6	13

※ 자료: 행정안전부

80)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81]에 따라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하여야 하므로, 2025년 최소 4번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4년도와 같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임.

□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분기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연례적으로 1~2회가 미개최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에도 개최 실적은 2024년 10월 기준 2회(2월, 7월)에 불과하며, 행정안전부는 나머지 2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연내에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81)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실적('22~'24)]

구분		일시	주요안건
연도	차수		
2022 (2회)	제1회	2022.1.13.(목)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등
	제2회	2022.10.7.(금)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등
2023 (3회)	제3회	2023.2.10.(금)	지방투자활성화 방안 등
	제4회	2023.4.6.(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 등
	제5회	2023.10.27.(목)	자치조직권 확대 등
2024 (2회)	제6회	2024.2.27.(화)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등
	제7회	2024.7.25.(목)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
	제8회	연내개최예정	미정
	제9회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장, 시·도지사의 일정 조율 문제로 2회 개최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3회 개최 이후 연말에 추가로 1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일정 조율이 어려워 개최가 불발되었다는 설명임.

□ 대통령 및 시·도지사 참석 행사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설명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연례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개최 횟수를 채우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집행행태가 반복되는 점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2024년 계획과 같이 연말에 1달의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안건 선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82].

□ 최근 지방소멸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회의가 개최·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둘째,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중 '임차료(210-07목)'는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임차료를 2024년 1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회의 개최 1회당 임차료 단가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임차료 예산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4년	2025년
임차료 (210-07)	1억 6,000만원 = **4,000만원** × 4회	1억 2,000만원 = **2,000만원** × 6회

82)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횟수를 확대(4회→6회)하여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며, 2025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매번 시·도를 달리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장소는 가능하면 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회의 참석자가 확대되는 경우 민간 대규모 회의 장소를 임차할 필요성이 있어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그런데, 최근 3년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차료는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예산 1,600만원 중 200만원 집행하였고, 2023년은 예산 1,600만원 중 6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예산 1억 6,000만원 중 535만원만 집행한 상황임[83].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구분		
2022년	16	소계	2	14
		제1회	-	
		제2회	2	
2023년	16	소계	6	10
		제3회	-	
		제4회	6	
		제5회	-	
2024년	160	소계	5.35	-
		제6회	0.55	
		제7회	4.8	

※ 자료 : 행정안전부

83)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량 및 사무기기 임차를 위해 집행되었음.

□ 이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84]를 제외하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청와대 영빈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별도의 회의장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장소 및 회의장 임차료('22~'24)]

구분		장소	인원	회의장 임차료
연도	차수			
2022 (2회)	제1회	청와대 영빈관 2층	34 (참석 29, 배석 5)	-
	제2회	울산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	31 (참석 27, 배석 4)	-
2023 (3회)	제3회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35 (참석 28, 배석 7)	-
	제4회	벡스코 제2전시장	39 (참석 28, 배석 11)	3,750만원*
	제5회	경북도청 화백당	39 (참석28, 배석 11)	-
2024 (2회)	제6회	청와대 영빈관 2층	81 (참석 27, 배석54)	-
	7회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	49 (참석 43, 배석 16)	-

*부산광역시비로 지출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도 민간 시설을 임차하기보다 정부청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된 임차료 예산안은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84)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가 주요 안건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비로 회의장을 임차하여 행정안전부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음.

□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85], 임차료와 같은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회의의 지속가능성 및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8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다.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 타 내역사업과 연계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내역사업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86]을 기념하여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2025년은 제1회 동시지방선거(‘95) 실시 30주년
- ○ **(목적)**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계기 마련

□ **주요 추진사항**
- ○ **(기념식)**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민선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개인, 자치단체 및 국가차원 변화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람회 등과 연계 추진
- ○ **(연구용역)**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등 성취도 평가
  - 지방자치의 성과 및 보완점 분석, 향후 지방자치 패러다임 및 대한민국 발전방향 제시
- ○ **(국제 컨퍼런스)** 국내외 석학들과 지방자치를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지방자치 30년의 의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 논의
- ○ **(학술대회 연계)** ’25년 유관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와 연계
  - 학회별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성과·개선사항 등 검토

86) 2025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 6월)가 실시된지 30년이 되는 해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내 용	비목	예산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	기념식 개최 용역	일반용역비	150
	합계		150
민선 지방자치 평가 연구용역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용역 실시	일반연구비	200
	합계		200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국제)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 임차	임차료	20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 용역	일반용역비	260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 관련 출장여비	국내여비	8.5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8.5
	합계		297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홍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홍보 비용	일반수용비	103
	합계		103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그런데, 동 사업은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의 타 내역사업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사업 예산을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내역사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을 기념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3억 1,2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액된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24.9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91	290	312	50	290
일반수용비 (210-01)	-	-	20	20	20
일반용역비 (210-14)	291	290	262	-	240
기타운영비 (210-16)	-	-	30	30	30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지방정책과 균형발전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박람회로, 2022년부터 기존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 중임.

2023년 제2회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는 ①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②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 및 ③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대행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 및 2025년 행사도 이와 유사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설명임.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정부의 지방정책과 균형발전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 **(시기)** 2023.11.1.(수) ~ 11.3.(금), 3일간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 **(주최)**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산자부 등 정부부처, 17개 시·도 등

○ **(주관)** (개최시)대전광역시, (총괄)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 주요 행사

○ **(기념식)**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 행사

- 주요 전시관 관람, 지방자치발전 등 유공자 포상

○ **(전시회)**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전시 기획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우수사례, 정책 등 콘텐츠 전시

○ **(부대행사)**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 세션으로 구분된 체험·참여 행사

- 관계부처 및 기관이 주관하는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간담회 등

□ 주요 행사 일정

주요 행사		11.1(수)	11.2(목)	11.3(금)
①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O	
② 전시회		O	O	O
③ 부대행사	부처참여행사	O	O	
	주관기관행사	O	O	O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행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및 경합 여부, 개최시기 등을 사전검토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87],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내 행사 중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8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78

행사와 유사·중복되는 사항을 검토한 뒤 유사·중복되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의 개최 시기[88], 목적은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내역사업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별도로 30주년기념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30주년 기념식 추진을 위해 편성된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둘째, '2023년 지방시대 엑스포'의 부대행사에서 자치분권컨퍼런스, 지방4대협의체 컨퍼런스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음.

[지방시대 엑스포 부대행사 내 지방자치 관련 컨퍼런스]

연도	컨퍼런스 내용	주최
2023	자치분권 컨퍼런스 - 지방분권 강화방안 발표 및 자유토론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컨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 컨퍼런스 및 간담회 - 지방분권 정책, 「지방의회법안」 등	지방시대위원회
2024 (예정)	지방자치 컨퍼런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지방의회 컨퍼런스	지방4대협의회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88)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 내역사업의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때 ‘민선 지방자치 컨퍼런스’ 명목으로 편성된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 관련 사업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행사 명	2025년도 예산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 엑스포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 지방자치 컨퍼런스 등	240
민선지방자치 30주년기념사업	민선지방자치30주년 기념식	150
	민선지방자치 컨퍼런스	297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기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입안되지는 않았으나, 2024년 4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자문위원회(‘24.6 구성)’의 자문을 받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민선지방자치30주년기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선지방자치10주년 및 2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여 추진하였는데, 10주년은 1억 6,700만원, 20주년은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및 20주년 기념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예산 편성내역	사업내용	예산 집행내역
2005 (10주년)	-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152
		민선 지방자치 10년 에세이집 발간	15
		합계	163
2015 (20주년)	-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행사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시 운영)	20
		민선 지방자치 20년 평가 연구용역[89]	93
		20년 홍보 포스터, 동영상, 브로셔 제작	29
		합계	142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89) 기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비 93백만원에,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구원 수탁 정책연구과제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150백만원 추가확보

라.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사업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복지·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한시 사업[90]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20억 1,000만원 대비 4억원 증액된 2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사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1,300	2,010	2,410	400	19.9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995	1,600	2,000	400	20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역량 강화지원	180	216	219	3	1.7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홍보	10	30	30	-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추진단 운영	115	164	161	△3	△1.9

※ 자료: 행정안전부

90)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하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은 설치된 날부터 2년간 존속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은 동 규정이 시행된 2022년 12월 28일 설치되어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7일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규정」 (2022.12.28. 시행)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2년**간 존속한다.

□ 현재 국무총리훈령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규정」[91]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단은 2023년도부터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전국 읍·면·동

○ **(목적)**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식)** (주관) 행정안전부, (수행) 지자체(시·군·구)

- 사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

○ **(사업예산)** (‘23) 10억원 → (’24) 16억원 → (‘25) 20억원(안) ※ 국고보조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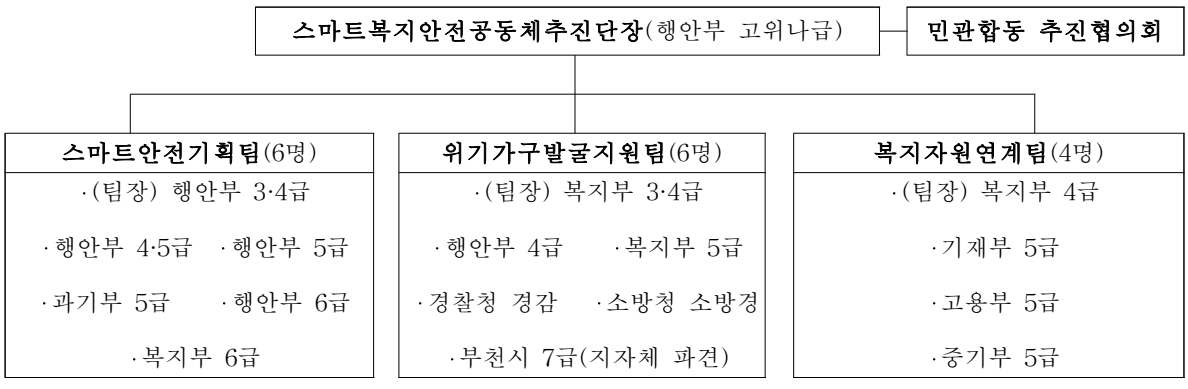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재난·안전)**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 안전취약계층 발굴 및 신속대응

○ **(복지)** 재난·안전 유형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

- 유형① :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연계 강화
- 유형② :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구성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91)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심사한 뒤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방식]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공모계획 공고 (재난·안전/복지)	⇨	공모사업 신청 (읍면동→시군구→시도→행안부)	⇨	심사 후 최종 선정
'24.2		'24.3		'24.4

□ 행정안전부는 2023년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24년에는 "재난·안전"분야 39개 사업을 선정하여 13억 3,700만원, "복지" 분야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2억 6,300만원을 교부하였음.

[2023년 및 2024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개, 백만원)

분 야	2023년[92]			2024년	
	선정 사업 수	교부액	집행액	선정 사업 수	교부액
재난·안전	15	960	854	39	1,337
복지	15			26	263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92)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3년의 경우 공모 당시에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유형을 '재난·안전' 및 '복지'로 구분하였음.

□ 그런데,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더욱 차별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팀을 통하여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자원 지원을 연계지원하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과 보건복지부 유사 사업 비교]

구 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사업시작 연도	2023년	2017년	2012년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50%)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50~70%)	민간경상보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	○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위한 **읍면동 중심** 돌봄 기능 강화 ○ **읍면동 중심 공적 안전망** 구축	○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소외계층 지원**

구 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내용	○지자체·민간기관 협업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자원연계 강화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팀을 통한 종합상담,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건강관리 등 지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인 '좋은 이웃들'을 통하여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2025년도 예산안	20억원(복지4억원)	239억 4,900만원	31억 3,800만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예산설명자료(Ⅱ-1)를 기반으로 작성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사업 계획서상 공모사업 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지자체·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연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목적, 내용 등이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분야별 공모사업 신청 기준]

구 분	재난·안전 분야	복지 분야
제1유형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읍면동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	지자체· 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연계** 강화
제2유형	제1유형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추진 목적이 유사하나, 동 사업은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복지예산 사업 범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민간자원을 확보하여 기존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지원하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차별화된다는 입장임.

[복지 분야 선정 사업 예시(2024년)]

사업명	사업내용
숨은 위기가구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365, 보듬36.5℃」	복지관·대학 연계 기초수급 신청 탈락가구 가정 방문
민관 협력체계 「사상 희망우산」	공적급여 제외자 대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상담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통합체계	돌봄협동조합, 노인회 연계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마을돌봄 플러스 카페	복지관 내 케어카페 활용 만성질환자 상담 지원, 마을부엌 요리 교실 등
맞춤형 복지·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자원 관리 체계」 구축	대형마트·의사회·자활 기업 연계를 통한 생필품 지원, 치료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목적 등이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을 공모받아 지원하는 방식(Bottom-up)으로 추진된

다는 점에서 중앙이 일괄적으로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차이가 있어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고 보다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

○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통한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성과지표가 산출지표로만 구성되어 동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사례인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51억 5,900만원 대비 6억 9,400만원 증액[93]된 5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687	5,159	5,853	694	13.5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2,564	2,547	3,251	704	27.6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066	1,446	1,457	11	0.8
새마을 시범마을 관리	263	369	348	△21	△5.7
새마을리더십 교류 협력 함양	202	202	202	-	-
새마을금고 연수 프로그램 운영	462	462	462	-	-
사업운영	133	133	133	-	-

※ 자료: 행정안전부

93)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개두국 지도자,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및 SGL회원국 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국 및 시범마을(4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나. 사업의 효과성 측정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의 내역사업인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도자,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25억 4,700만원 대비 7억 400만원 증액된 3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 **(사업시행주체)**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공모기관
- ○ **(사업방식)** 보조사업(보조율 100%)
- ○ **(사업예산)** (‘23) 25.6억원 → (’24) 25.5억원 → (‘25) 32.5억원(안)
- ○ **(목표)** 개도국 새마을지도자 양성 위한 연수 통해 의식개혁·자립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 내용**
- ○ **(교육대상)** 개도국 마을지도자·주민, 공무원 등
- ○ **(교육방법)** 새마을 초청 및 현지연수, 다국가연수(컨퍼런스)
  - 초청연수 : 이론강의, 마을사업 액션플랜 수립 및 국내 현지 견학
  - 현지연수 :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
  - 다국가연수 : 새마을 46개국 연합체(SGL) 기반 다국가 연수
- ○ **(교육내용)** 마을 사업 구체화 위한 액션플랜 수립 및 SGL 기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또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내역사업은 새마을교육을 받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소득 증대 등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4억 4,6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새마을운동중앙회

○ **(사업방식)** 보조사업(보조율 100%)

○ **(사업예산)** (‘23) 10.7억원 → (’24) 14.5억원 → (‘25) 14.6억원(안)

○ **(목표)** 새마을교육 받은 지도자 중심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주요 내용

○ 국가별·마을별 실정을 고려하여 기존 개발원조사업(ODA)과 차별화된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 수원국 마을지도자·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현지 여건을 반영한 소득증대·환경개선 사업추진

□ 2025년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 추진 계획

구분	국가(마을수)	중점협력국 여부	OECD 수원국 리스트	비고
1	동티모르(4)		최빈국	5년차
2	우간다(7)	중점협력국	최빈국	5년차
3	키르기스스탄(4)	중점협력국	하위중소득국	4년차
4	캄보디아(4)	중점협력국	최빈국	4년차
5	도미니카공화국(4)		상위중소득국	4년차
6	부룬디(6)		최빈국	3년차
7	잠비아(4)		최빈국	3년차
8	온두라스(4)		하위중소득국	2년차
9	탄자니아(4)	중점협력국	최빈국	2년차
10	타지키스탄(4)	중점협력국	하위중소득국	2년차
11	파푸아뉴기니(4)		하위중소득국	2년차
12(중복)	부룬디(4)		최빈국	1년차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그런데,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및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성과지표가 초청교육 이수 인원, 중점육성 시범마을 수 등 1차적인 산출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 전수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의 달성 정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첫째,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교육 이수 인원’이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최근 5개년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교육 이수 인원 (단위 : 명)	목표	600	600	600	650	660	초청 및 현지 연수 이수 인원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실적	6,612	936	762	-	-		
	달성도 (%)	1,102	156	127	-	-		

※ 자료: 행정안전부

□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교육 이수 인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인원수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교육과정별 참여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의 만족도, 개발도상국 지도자 등에게 미친 영향 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해당 지표의 경우 목표를 높게 설정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초청인원을 증대하는 경우 목표 달성이 구조적으로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성과목표치 설정은 합리적이나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둘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맞춤형 새마을운동 중점육성 시범마을 수'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최근 5개년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맞춤형 새마을운동 중점육성 시범마을 수 (단위 : 개)	목표	34	42	44	48	50	신규 및 중점육성 시범마을 수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등
	실적	34	42	44	-	-		
	달성도 (%)	100.0	100.0	100.0	-	-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목표가 새마을운동 중점육성 시범마을을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범마을 조성 이후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이 아니라 단순

마을 조성 수로 정량화하고 있어 실제 사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시범마을 조성 이후 행정안전부가 조성한 시범마을이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행정안전부는 개발도상국 지도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연수와 연계하여 새마을 중점육성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과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연계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임.

□ 종합하자면,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지표임을 고려해 볼 때, 성과지표는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임.

7. 자원봉사활성화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141-302)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 편성되었으나, 출연·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 직접수행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보조사업이나 조사·연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도 내용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민간자원봉사단체 지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전문 인력(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을 통해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135억 2,7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1.5%) 감액된 13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37	13,527	13,321	△206	△1.5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확산	1,256	196	157	△39	△19.9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2,579	2,579	2,579	-	-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 제도 운영	114	103	869	766	743.7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295	1,166	1,201	35	3.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293	8,483	8,515	32	0.4
2024년 세계자원봉사대회 지원	-	500	0	△500	순감
자원봉사 가치 기념 및 교육 거점 공간 조성	-	500	0	△500	순감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이관 문제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은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확산,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③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 제도 운영, ④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3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된 이후 2025년도 예산안에도 동 계정에 편성되어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94]에 근거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① 지역자율계정, ② 지역지원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총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됨.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 각 호[95]에 의하면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은 ①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상업의 육성·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지역의 과학기술

9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9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생 략)

진흥 및 특성화, 공공기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사업, ②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 ③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등에 해당하여야 함.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

구 분	세출사업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의 기능 확장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되었다는 설명임.

□ 그런데, 당해 사업의 내역사업들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열거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첫째,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는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균형발전[96]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처 직접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 내역사업 중 직접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 용	비목	예산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379
	○ 자원봉사 및 기부 정책연구	정책연구비	120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포상금	**80**
	합계		2,579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 자원봉사 진흥정책 운영**	일반수용비	181
		임차료	17
		사업추진비	5
		국내여비	8
		소계	212

9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18. (생 략)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 용	비목	예산안
	○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일반수용비	80
		일반용역비	500
		소계	580
	○ 자원봉사 진흥정책 운영	일반수용비	15
		임차료	17
		일반용역비	40
		국내여비	5
		소계	77
	합계		86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사업의 경우 ①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시행계획 운영,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개정 TF 운영 등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진흥정책 운영’, ②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나눔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③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적 단위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임.

□ 둘째, 직접사업 이외에 보조사업이나 조사·연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 중 민간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가입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료(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를 분담하는 사업임.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비율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민간단체 경상보조	민간자원봉사단체	157	100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79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	1,201	5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지방자치단체	8,51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조사·연구사업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및 기부 정책연구’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마련, 자원봉사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지역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이관하여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②「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한 예산 편성 절차[97] 거치지 않았으며, ③ 세출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편성하여 세출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98].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일반회계로의 이관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임[99].

97)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특별회계 세출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9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pp158-166

99) 2024년 10월 현재 행정안전부는 재정당국과는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 국비와 지방비를 50% 매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가. 개 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직접피해자, 유가족, 목격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수행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이하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22억 900만원 대비 2억 5,500만원(11.5%) 감액된 1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672	2,209	1,954	△255	△11.5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 위탁사업(광주)	676	301	-	△301	순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 위탁사업(제주)	625	246	-	△246	순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371	-	-	-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준비	-	217	-	△217	순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광주)	-	815	1,101	286	35.1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제주)	-	630	853	223	35.4

자료: 행정안전부

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2025년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 출연금 예산은 19억 5,400만원으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소재한 광주광역시(11억 100만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8억 5,300만원)가 전체 소요 출연금의 50%를 각각 지방비로 매칭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음.

[국가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금액 및 국비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국비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광주)	출연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1,101	50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 및 제18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제주)	출연	국립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853	50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 및 제18조

□ 이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라 함) 제18조[100]에 지방자치단체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가 설립주체가 되는 국립 시설이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101]는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에 대하여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102]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

10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10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출연금을 국비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50% 매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103]

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03)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20인에 대한 인건비 14억 9,200만원, 운영비 6억 1,000만원 및 사업비 7억 6,600만원 등 총 28억 7,000만원(2025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함.

9.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2437-300)

○ 여순사건위원회는 2025년 10월 4일로 예정된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한까지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 접수 및 조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진상규명 처리,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사업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53억 6,500만원 대비 5억 6,100만원(10.4%) 감액된 4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지원	5,290	5,365	4,804	△561	△10.4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	2,384	2,870	2,558	△301	△10.5
여수·순천10·19실무위원회 지원	2,906	2,495	2,246	△246	△9.9

자료: 행정안전부

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까지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처리 노력 필요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라고 함)의 조사기간이 2024년 10월 5일 만료되었음.

□ 2025년도 여순사건위원회 지원 예산안은 세부 항목별 일부 증감은 있으나, 2025년말까지의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여순사건법」 제3조제5항[104] 및 제9조제1항[105]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인 2025년 10월 4일까지 조직과 인력이 존속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10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10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생 략).
(이하 생략)

[진상규명 신고·조사기간, 보고서 작성기간,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한]

신고기간	2022. 1. 21.~2023. 1. 20.(1년)
조사기간	2022. 10. 6.~2024. 10. 5.(2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2024. 10. 5.~2025. 4. 4.(6개월)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한	2025. 10. 4.

□ 그런데, 2024년 10월말 현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신고 191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진상규명 결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 또한, 희생자 신고의 경우 7,465건(명) 중 3,709건(명)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어 여순사건위원회로 심의·의결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884건(명)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는 바[인용 1,587건(명), 기각 34건(명), 취하 등 263건(명)], 2024년 10월말 현재 심사·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미처리 희생자 신고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3,565건(명),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요청을 받았으나 심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1,825건(명) 등 총 5,390건(명)임.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진상규명 (조사중)	→	합계	희생자 결정			취하 등
		조사완료	조사중				소계	인용	기각	
7,465		3,709	3,565	191		1,884	1,621	1,587	34	263

주: 2024년 10월말 현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 10월말 현재 미처리 희생자 신고건이 5,390건(명)에 달하고 그에 부수하여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신고 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 현재 신고 접수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검토를 통하여 차질없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일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여순사건위원회는 2025년 10월 4일로 예정된 위원회 존속기한까지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진상규명 처리,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 연장 및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2024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내 용
1	2200872	김문수의원 등 14인	1.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 2.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연장
2	2202374	주철현의원 등 43인	1.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2.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연장 3.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규정 변경 4. 위원회 등 구성 시 고려사항 추가 5. 특별재심 청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 6.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3	2203583	용혜인의원 등 19인	1.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 2.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연장 4.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규정 변경 5.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객관성 의무 규정 신설 6.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부여
4	2204406	권향엽의원 등 17인	1. 진상규명 신고기한 연장 2.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연장 4.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신설

【자치분권국】

10.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인식과 공직문화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사업은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읍면동 기능 및 체계 개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7억 1,5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106]된 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542	715	935	220	30.7
지자체 조직분석·진단	324	227	227	-	-
지자체 균형인사정책등 인사	123	110	110	-	-

106)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지원예산 추가반영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혁신 지원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95	96	96	-	-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24년이관)	200	420	220	110
	읍면동 기능 및 체계 개선	('24년이관)	28	28	-	-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소송대응	('24년이관)	54	54	-	-

나.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적극행정 컨설팅·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107],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총괄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108].

---

107)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8)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 업무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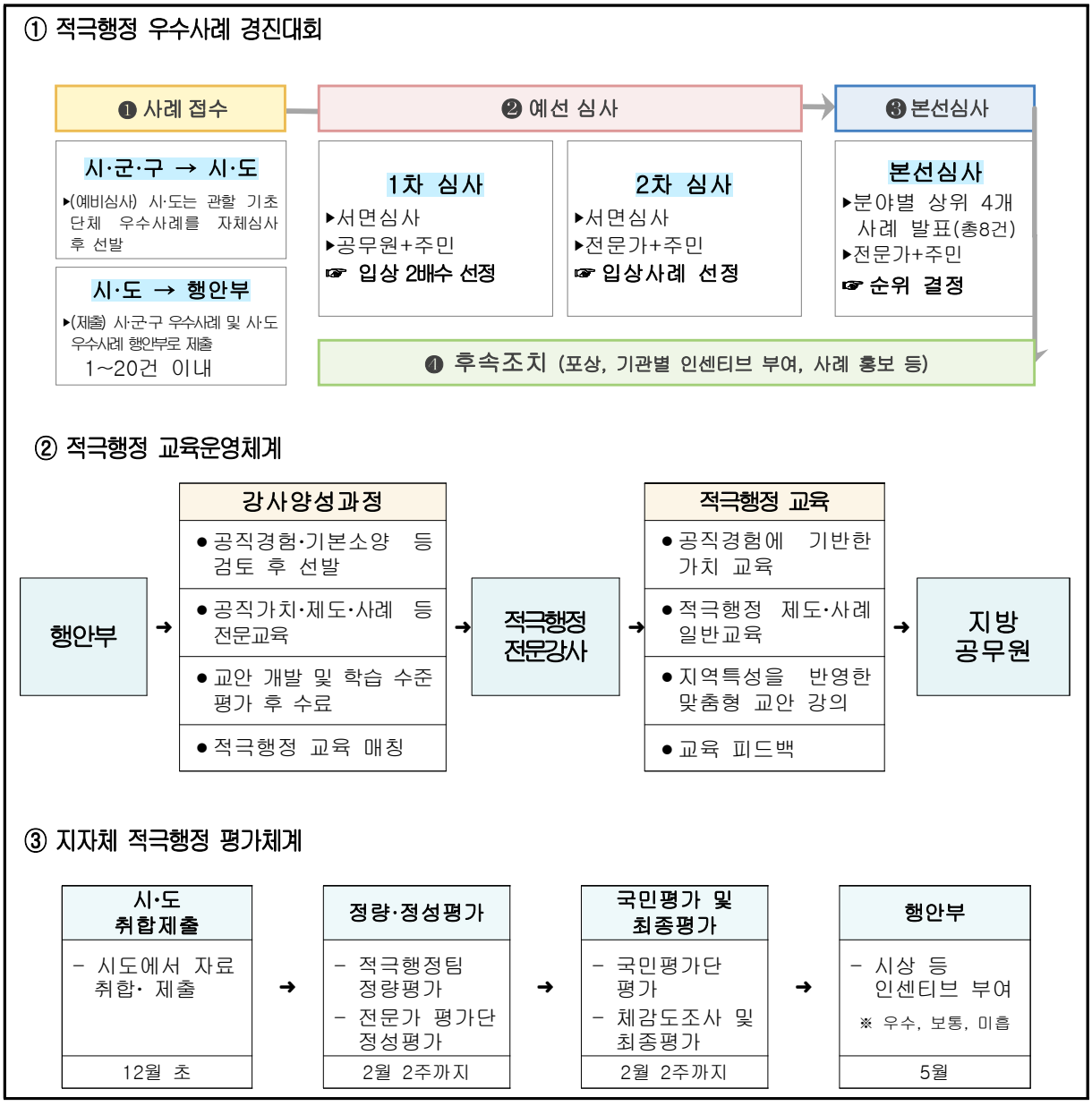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②적극행정 교육자료 제작, ③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④적극행정 종합평가, ⑤찾아가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사업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인식과 공직문화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공직문화 등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사명감',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적극행정이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공공부문 내부에 존재하는 '법과 규정에 의한 경직성', '엄격한 내부통제 문화'를 타파하여야 함[109].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매년 1억원 내외의 유사한 규모에서 정체되어 있음[110].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예산액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	104	104	95	96	96

* 2025년도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109)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p. 73-77.
110) 참고로,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949-301)' 사업의 내역사업인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억 1,600만원, 2024년 3억 1,400만원이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적극행정 사례 및 적극행정 실패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무원 표창, 기관포상금,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도전에 따른 실패사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적극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현황]

	인센티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① 시상(지자체 18점, 지방공공기관 9점) ② 시상금(대상 2백만원, 최우수상 1백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아름다운도전상 80만원) 지급 ③ 공무원 표창 ④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종합평가	① 우수기관 포상 ② 공무원 표창 ③ 특별교부세 6억원 지급(2024년부터 미교부)

□ 또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상 제약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되지 못하고 권역별 대규모 강의 형식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찾아가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실적]

(단위: 개, 천원)

연도	개최실적	대상기관	소요예산	내역
'21	4회(온라인)	15	1,260	강사수당
'22	2회(서울, 천안)	25	740	강사수당
'23	2회(서울, 세종)	28	5,948	강사수당 + 컨설팅 자료집 제작(컬러)
'24	2회(서울, 세종)	32	2,920	강사수당 + 컨설팅 자료집 제작(흑백)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4년도 '찾아가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 1:1 세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향후 예산을 고려하여 기관별 1:1 컨설팅 제공을 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1:1 컨설팅이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음.

[찾아가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만족도 조사결과]

□ 종합 분석 및 주요 의견

○ **(개선할 점)** 지자체 참여 편의성 제고 및 맞춤형 컨설팅 강화 요청
- (지자체 사례 공유) 더 많은 우수기관의 사례를 듣고 싶다는 의견
- (개최장소) 이동 불편, 좀 더 근거리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길 희망
- **(1:1 컨설팅) 미흡기관에 대해 1:1로 세부적으로 진행**

○ (자유 의견)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지원**
- 마일리지 관리 공통시스템 개발

□ 향후 계획

○ **'25년 컨설팅 추진시 의견 반영 검토 및 업무 개선 활용**
- 컨설팅 운영 개최권역 세분화('24년 2개 권역 → 3개 권역 확대 등)
- **기관별 1:1 컨설팅 제공 방안(예산 고려 진행)**
-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 구축(인사처 협의) 등

※자료: 행정안전부

11.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1131-319)

○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PC 및 모바일을 통한 주민조례·주민투표·주민감사 청구 등을 지원하는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이하 “주민e직접 플랫폼”이라 함)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365	-	69	69	-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	-	69	69	순증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365	-	-	-	-

나.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한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필요

□ 주민e직접 플랫폼은 온라인을 이용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2022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운영 중임.

[주민e직접 플랫폼 홈페이지]



※ 자료: 주민e직접 홈페이지(www.juminegov.go.kr), 검색일: 2024. 10. 15.

[주민e직접 플랫폼 사업추진 경과]

연도	추진경과
2018	- BPR/ISP 수행(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2020	- 사업예산 확보
2021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등)
2022	- 주민감사청구 기능 추가 구축
2023	-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구축(온라인 의견수렴, 모바일 청구)

※ 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e직접 플랫폼은 ①주민청구 서비스와 ②주민생각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①주민청구 서비스는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청구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②주민생각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있도록 온라인 의견조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주민e직접 플랫폼 이용현황]

(단위: 명, 건)

			2022	2023	2024. 9.
방문자 수			7,291,704	9,777,790	7,982,296
이용 건수	조례	청구	42	61	17
		서명	20,133	30,789	14,671
	투표	청구	-	-	2
		서명	-	-	1,259
	감사	청구	-	10	13
		서명	-	1,259	1,255
	주민생각		-	-	36

※ 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주민e직접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320-02) 비목으로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민간위탁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9백만원 -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 69백만 · 69백만원 = 응용SW 개발비 748백만원 x 유지보수 요율 9.3% ※ 주민e직접 기능 확대 사업의 응용SW (국비 구축분)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요구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주민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법」[111]에 따른 ①주민투표(제18조), ②조례의 제

111)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개정·폐지 청구(제19조), ③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제20조), ④감사청구(제21조), ⑤주민소환(제25조)과 「지방재정법」[112]에 근거한 ⑥주민참여예산제도(제39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13]에 따른 ⑦주민자치회(제40조) 및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 ⑭ (생 략)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2)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⑧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114].

[주민 직접 참여제도 청구 및 제안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주민투표	3	2	1	-
조례청구	10	31	45	64
감사청구	1	4	2	1
주민소환	10	9	-	11
규칙의견제출	-	1	4	1
주민참여 예산사업	57,102	60,348	55,517	54,002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주민e직접 플랫폼은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청구 및 서명 등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주민소환',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주민이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종이로 된 청구인서명부를 교부받아 해당 서명부에 주민의 서명을 수기로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참고로, 2023.12.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1,531개, 주민자치위원회는 1,703개가 설치·운영 중임.

하여야 하며[115],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야 함[116].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117]’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나, 주민e직접 플랫폼과 같이 일괄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일부 읍·면·동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제안 및 정책결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읍·면·동 및 공지사항·각종 사업의 결과보고 등 일방향적 정보전달 기능만을 제공하는 읍·면·동도 있음.

---

115)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117)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민e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플랫폼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제공함

[주민참여수단별 온라인 참여방법]

유형	주민참여 수단	온라인 참여방법	근거법령
다수 주민 참여	주민투표	주민e직접 플랫폼	-「지방자치법」 제18조 -「주민투표법」
	조례개폐 청구	주민e직접 플랫폼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감사 청구	주민e직접 플랫폼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소환	-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법」
개별 주민 참여	규칙개폐 의견제출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자치회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별로 운영방식 상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주민자치위원회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별로 운영방식 상이)	- 개별 지자체 조례

※ 참고로,「주민투표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조례개폐 청구·주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 최근 전국 읍·면·동 3,533개 중 1,791개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118]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119]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참여의 편의성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118)「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19) 노현수,「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p.223-245.

□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관(官)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거버넌스로서 주민자치[120]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모든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원스톱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이나 의제가 지역 간에 공유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선순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소환 청구 서비스'는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고,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은 해당 사무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괄적 이용은 '주민e참여 시스템'과의 연계 등 주민 관점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p.12-16.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1137-500)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및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등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데이터 개방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27억 3,200만원 대비 25억 6,200만원이 증액[121]된 5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1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25년 본격적인 모바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추가반영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원예산 추가반영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23년도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추가반영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3,096	2,732	5,294	2,562	93.7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795	2,309	2,182	△127	△5.5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0	24	-	△24	△100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61	235	235	-	-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64	164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	-	266	266	순증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	-	540	540	순증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	-	1,907	1,907	순증

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및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파일 변환용 SW(ezPDF workflow)와 진위확인용 바코드 SW 도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 세부 산출내역]

<table>
<tr><th>구 분</th><th>산출내역</th></tr>
<tr><td>민간위탁사업비
(320-02)</td><td>○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540백만원)
- 상용SW 구매 : PDF변환SW, 진위확인SW 각 2식(이중화) = 540백만원

<table>
<tr><th>제품명</th><th>라이선스</th><th>수량</th><th>예산(천원)</th></tr>
<tr><td>ezPDF workflow(파일 변환용)</td><td>10Core</td><td>2식</td><td>340,000</td></tr>
<tr><td>진위확인용 바코드</td><td>식</td><td>2식</td><td>200,000</td></tr>
<tr><td colspan="3">합계</td><td>540,000</td></tr>
</table>
</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2024. 5. 7.「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발급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122]으로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

12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

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123].

[온·오프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구분	온라인(A)	오프라인* (B)	온·오프라인 합계(C)	온라인 발급 비율 (A/Cx100)
9.30~10.6.	29,539	186,572	216,111	13.7%
10.7~10.13.	29,637	229,905	259,542	11.4%
10.14~10.20.	34,670	265,170	299,840	11.6%
10.21~10.27.	31,931	259,139	291,070	11.0%
합 계	125,777	940,786	1,066,563	11.8%

* 오프라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이 있으나,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일반용에 대해서만 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외부연계기관에 인감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2016. 7. 5., 2024. 5. 7.>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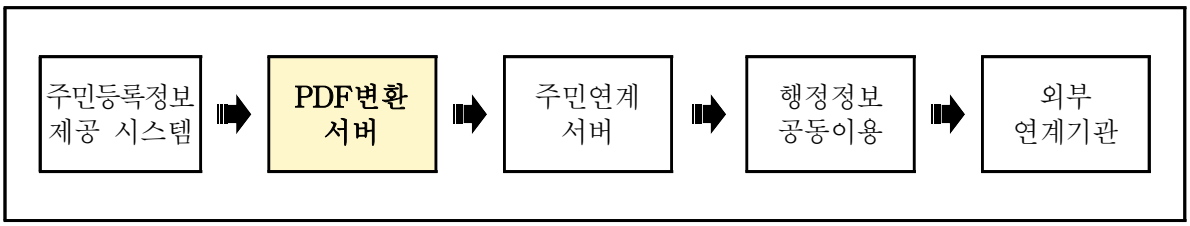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123) 2024.9.30.부터 시범실시 중이며, 2024.11.1.부터 본격 실시 예정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한 후, 주민연계 서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외부 연계기관으로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은 'PDF 변환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버의 장애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DF변환 SW와 진위확인 SW를 각 2식씩 도입하는 이중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이중화 방안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하나의 시스템만을 운영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중단을 막는 방안으로[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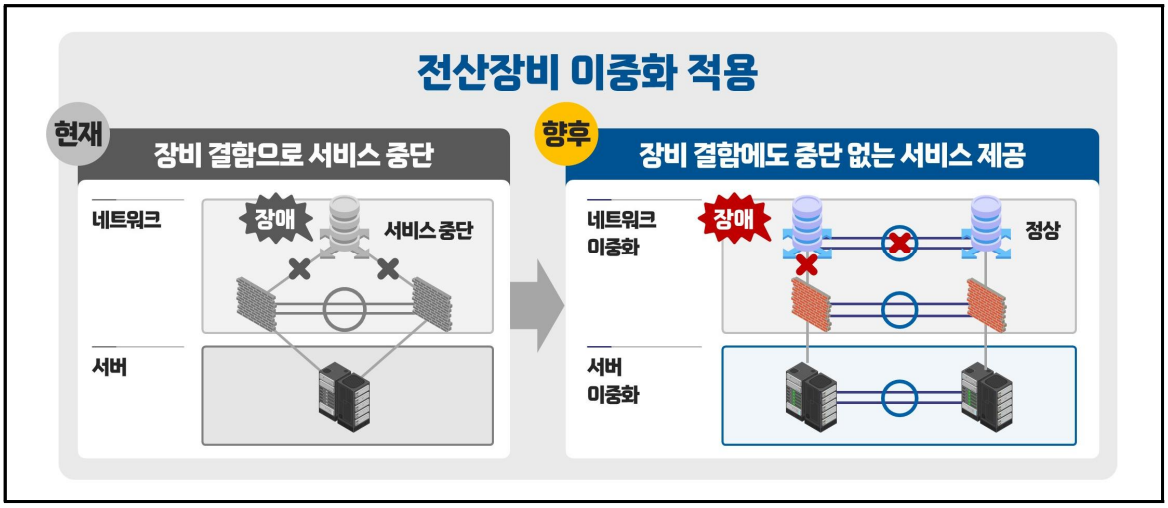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2023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125]에 대

124) 이러한 방식을 Active-Standby 방식의 이중화라고 하며, 평상시에도 두 개의 시스템 모두를 운영하는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화(이원화)방식 또한 있음.

125) 2023.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프로그램(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정부24,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지방 보조금 관리시스템, 주민등록증·인감 발급시스템 등의 서

한 대책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하여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중화 방안 운영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단없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위해 ‘PDF변환 서버’ 등에 이중화 방안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재난·재해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본서버와 별도의 물리적 장소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통해 전산망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방안과 더불어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기반시설(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취지와 달리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사업 편성근거]

○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1,907백만원)** □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 1,907백만원** - 상용SW 이전 설치비 : 상용SW 증설 1,446백만원 + 상용SW 이전 설치 215백만원 - AP 기능개선 : SW개발자 등 18M/M(3명) × 26,832천원(1M/M 단가) × 51.0%(할인 49.0%) = 246백만원 □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 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정보제공 시스템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정보시스템에 해당하고, 온라인 인감증명서 또한 시범운영을 시작한 ’24. 9. 30.부터 10. 27.까지 총 12만 건 이상 발급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기술실증과 시범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 및 추진 방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임.

【균형발전지원국】

13.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237-300)

○ 행정안전부는 ‘사물주소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된 대상이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물주소 부여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물주소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물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상황 시 사물주소가 부여된 ‘지진옥외대피장소, 인명구조함, 비상소화장치 등’ 시설물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민간 주소서비스에서도 사물주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자율주행차·드론택배 등 주소기반 혁신성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198억 6,100만원 대비 11억 9,600만원이 감액(△6.0%)된 18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8,053	19,861	18,665	△1,196	△6.0
주소정보 국내·외 표준화 추진	200	200	200	0	0
주소체계 고도화	8,900	9,588	8,192	△1,396	△14.6
주소정보기본도 갱신 및 안내도 보급	3,100	2,700	2,700	0	0
주소정보시설 지도·점검	876	876	876	0	0
주소정보 산업 지원	2,644	4,384	4,384	0	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331	1,234	1,234	0	0
주소정보 제공 및 연계 확대	584	584	584	0	0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371	152	152	0	0
K주소 해외 진출 추진	-	100	300	200	200
기본경비	47	43	43	0	0

나. ‘사물주소 확충’ 관련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사물주소 활용도 증진 필요

(1) 개요

□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나 공터에 주소를 부여하고,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등을 구축하여 주소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95억 8,800만원 대비 13억 9,600만원 감액된 81억 9,200만원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 중임.

[‘주소체계 고도화’ 내역사업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소체계 고도화	9,588	8,192	△1,396	△14.6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등 구축	1,846	1,846	-	-
지상도로 부여 확대	500	500	-	-
실내 이동경로 구축	2,542	2,402	△140	△5.5
출입구 확충·별칭 등 장소지능정보 구축	1,500	1,244	△256	△17.1
다중 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확충	2,200	2,200	-	-

□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확충’ 사업은 건물 이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통해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2억원이 편성되었음.

□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126]를 활용하여 건물에 해당하지 아

126) 기초번호: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고, 간격마다 오른쪽 짝수, 왼쪽 홀수로 부여한 번호

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 중 ①다수가 이용하고, ②갱신체계 확보가 가능한 사물을 대상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있음.

[‘사물주소’ 개요]

□ **사물주소 개요**

○ **(개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

○ **(대상)**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 중 ①**다수가 이용**하고, ②**갱신체계 확보**가 가능한 사물

○ **(표기)** 시설물이 건물 내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표기법 상이

- 건물외부 : 행정구역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명

  (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92 **육교승강기**

- 건물내부 : 행정구역 + 도로명 + 쉼표(,)+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명

  (예)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길 3, 1층 **전동휠체어자동충전기**



<건물외부>



<건물내부>

□ **추진 성과**

사물주소 부여 목록	
‘21년	육교승강기, 졸음쉼터, 둔치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소, 소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22년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23년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무더위쉼터

※ ‘24년 신규 사물주소 3종(민방위대피소, 어린이놀이시설, 푸드트럭허가구역) DB 구축 중

(2) ‘사물주소 확충’ 관련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127]에 따라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대피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사물주소 부여 대상(20종)	
「도로명주소법」 예시사항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등
고시(20종)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 무더위쉼터

127) **「도로명주소법」**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사물주소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버스 정류장, 전기차충전소 등 20종에 259,187개(’24.9.26.기준)의 사물주소를 확충하였으며, 사물주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로 경찰청 및 소방청에 신고하고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경찰청: 2023.10월, 소방청: 2024.1월).

[사물주소 활용 ‘신고·출동 시스템’ 구축]



□ 다만, ‘사물주소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및 주소정보 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타 부처의 사물주소 부여 요구 등으로 부여 대상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사물주소 부여 현황]

2023년도 사물주소 부여		2024년도 사물주소 부여	
계획안	실시	계획안	추진 중
1. 무인민원발급기 2. 무인택배함 3. 안전비상벨 4. 자전거보관소	1. 공중전화부스 2.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 자전거주차장 4. 비상소화장치 5. 무더위쉼터	1. 자동심장충격기 2. 민방위대피소 3. 개방화장실 4. 옥외소화전	1. 민방위대피소 2. 어린이놀이시설 3. 푸드트럭허가구역

□ 한편, 2025년도의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4종은 공공·민간·청년들의 의견(2023.5.1.~5.22)과 대국민 투표(2023.6.12.~6.26.)를 거쳐 선정된 20종을 검토하여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2025년 사업 추진 대상 시설물>

시설물	시설설명	필요성
자동심장충격기	심정시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도구	비상상황시 구조구급 위해 정확한 위치 설명 가능, 골든타임 확보
소화전	화재 등 비상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시 소화전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CCTV	교통정보, 범죄예방 등의 공공목적용으로 실외에 설치한 CCTV	비상상황시 구조구급 위해 정확한 위치 설명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증명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시설물관리번호로 활용 · 민원행정서비스 활용에 필요

□ 그러나, ‘CCTV’의 경우 국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화전’과 같이 재난·안전상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선적 부여 대상으로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수의 ‘CCTV’ 중 사물주소 부여 대상 범위 및 사물주소판 설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매년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수립한 계획도 필요에 따라 자주 변경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의견 수렴을 통해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사물주소 부여 필요성 및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로명주소법」은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로 정하도록 하고, 고시에 규정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28]

□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사물주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에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를 개정하여 사물주소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법」은 '법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물주소 부여가 필요한 시설물을 고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물주소 확충'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28) **「도로명주소법」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 ⑥ (생 략)

(3) 사물주소의 활용성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사물주소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버스 정류장, 전기차충전소 등 20종에 259,187개('24.9.26.기준)의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사물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 및 사물주소 활용도 증진을 위한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제로 주최한 정책소통포럼(2023.12월)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물주소 인지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0%는 사물주소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여 사물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로 소방·경찰에 신고 및 출동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국민이 사물주소에 대해 모르는 경우 사물주소를 통한 신고가 어려워 긴급 출동 체계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사물주소 인식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물주소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물주소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주소정책 관련 행정안전부 홍보 현황(2023년 및 2024년)]

- 세계주소 컨퍼런스 개최('23.11.9.~10.)
- 지방시대 EXPO 정책관('23.11.1.~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23.11.23.~25.) 현장홍보
- 장관님 기고 "K-주소, 미운오리새끼에서 또 하나의 한류로"(한국경제, '23.11.29.)
- KBS 다큐온 "주소로 넓히는 세계"제작·방영('23.12.10.)
- 도로명주소 전면도입 10주년 홍보영상 제작('24.4.26.~8.30.)
- 신한은행 ATM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 **사물주소**, 상세주소 홍보('9.5.~12월말)
- 매일경제 기획기사 "몽골로·게르로·고비길...몽골에 퍼지는 'K-주소'"('24.10.11.)

□ 또한, 사물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앱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및 생활안전지도에서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응급상황 시 사물주소가 부여된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비상소화장치, 무더위쉼터"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일반 민간 지도서비스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129)]

129) 행정안전부는 사물주소 관련 민간 지도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활용 협의를 추진 중이며, 사물주소 13종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였음(2024.8.28.).
현재 일부 사물주소에 대해서는 민간 지도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나, 모든 사물주소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물주소판 설치율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물주소 대비 사물주소판의 전국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사물주소가 부여되었으나 사물주소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민은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사물주소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국민이 사물주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물주소판 설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물주소판 설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현장 과제 수행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각 부처의 여비를 활용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중 여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부처별 업무 특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부처의 상황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안전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제한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각 부처의 여비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비 예산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가. 개 요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99억 2,800만원 대비 46억원이 감액(△46.3%)된 5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발전활성화	5,740	9,928	5,328	4,600	△46.3
보조요원인건비	75	86	89	3	3.5
아름다운화장실조성	146	-	-	-	-
간판문화선진화	38	-	-	-	-
자전거인프라구축	1,141	-	-	-	-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760	760	0	0
온천산업활성화	324	4,825	324	△4,501	△93.3
지역활력제고	1,870	2,157	3,155	998	46.3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599	750	750	0	0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142	350	250	△100	△28.6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1,403	1,000	-	△1,000	순감

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 사업은 ‘지역활력제고’ 내역사업에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지역 현장 근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창의적 기획 등 공직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 **(사업예산)** 349백만원
- ○ **(참여대상)**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
  * 19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 1,200명, 30개 처·청·위원회 360명
- ○ **(운영방식)**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운영

□ **사업 내용**
- ○ **(운영내용)**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하여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수행
- ○ **(근무형태)** 현장 과제 수행으로 **출장**으로 운영
- ○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 등 성과 도출

※ 자료: 행정안전부

《 생활인구 개념[130] 》

생활인구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1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인 '워케이션[131]'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132]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하여 신청한 참여자가 지역 공유오피스 등에서 현장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과 후에는 지역 관광지 방문,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

1. (생 략)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131)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체류형 근무형태
-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 강원도 워케이션 성지 부상」, 연합뉴스, 2022.10.
- 「오영훈지사, 기업하기 좋은, 워케이션 성지 제주로 오세요」, 제주도민일보, 2022.10.

132) **"짧게 머물더라도 붙잡겠다"** :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유출마저 발생하는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 자연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외부에서 유입해 중·장기간 머무는 인구라도 끌어모는 차원에서 워케이션식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지원센터 짓고, 워케이션 인구 유치하면 지방소멸 늦출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2.09.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좋은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해당 사업은 **예산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사업 추진 방식**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민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의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행정안전부는 사업 참여 인원 산정시 부처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실' 단위 부서조직에서 상·하반기에 한 팀씩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음.

[참여 인원 산정 근거]

연번	중앙부처	참여인원	비고(산정근거)
1	19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	1,200명	실(총 100개) 단위 상하반기 한 팀씩 운영
2	처·청·위원회	360명	처·청·위원회(총 30개) 상하반기 한 팀씩 운영
총 예상 인원		**1,560명**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부처의 여비를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여비 예산 현황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부처별 업무 특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부처의 상황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은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을 산정하고 있음.

[사업 소요예산안]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프로그램 비용	오피스 이용료	187.2	120,000원(1인, 4일 기준)
	여행자 보험	23.4	15,000원(1인)
	체험 프로그램 참여	54.6	35,000원(1인)
	워케이션 키트 및 홍보자료 제작 등	46.8	30,000원(1인)
	숙박비, 일비, 식비 등	-	각 부처 여비 활용
	교통비	-	
	합계	**312**	**200,000원(1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37	민간 용역을 통해 수행
총 소요액		**349**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현장 과제를 수행하며, 각 부처의 **여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비에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비(10만원, 3박4일 기준)[133]가 지급되고 있어 프로그램 비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비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3) **[여비의 종류]**(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 한편, 각 부처에서 참여자가 직접 수행할 과제와 수행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용역업체의 역할은 홍보자료 제작, 성과관리 등 한정된 역할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용역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부처의 경우, 각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원사업'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제한된 정책현장 관련 프로젝트 과제(참여기간 동안 결과 도출이 가능한 정책 현장 관련 과제 수행)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특히, 사업 추진에 각 부처의 여비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비 예산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정보 제공, 성과 관리 등 보조적 역할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024년 부처별 유사 사업 추진 현황]

부처(사업명)	참여 인원	방식
행정안전부 (모티브 오피스)	12개 팀, 94명	① 팀 단위로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② 과제와 관련된 지역 워케이션 센터를 활용하여 업무
식약처 (힐링일터)	총 4기, 63명	① 성과 우수직원 격려 및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업무시간에는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업무 외 시간에는 힐링 ② 장소는 운영주체, 접근성,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의 이해)	31명 ('24.3~6월)	① 워케이션 체험 및 정책현장 탐방을 통해 관광진흥 업무 이해도 제고 ② 평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진행하고, 담당업무과 관련한 정책 현장 선정(부산, 강원, 전남, 경북 등)

※ 자료: 행정안전부

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집합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고, 45억원을 ‘인구활력펀드’에 추가로 출자할 예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기금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인구활력펀드’로의 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별 배분액 및 집행 실적, 사업 추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하여 사전 정보공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조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에 따라 정부출연금(매년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제27조).

[참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정부는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출범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여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2024.1월)하여 '시·도 광역지원계정'에서 집합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1,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13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사항]

<table>
<tr><th colspan="2">「지방기금법」</th><th colspan="2">「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th></tr>
<tr><td rowspan="3">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td><td rowspan="2">시·도
광역계정
(25%,
2,500억)</td><td><개정전></td><td><현 행> (2024.1.개정)</td></tr>
<tr><td>[배분대상: 시·도]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td><td>[배분대상: 시·도]
▸광역계정의 60%(1,500억)
[배분대상: 집합투자기구]
▸광역계정의 40% 출자(1,000억)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24.~)</td></tr>
<tr><td>시·군·구
기초계정
(75%,
7,500억)</td><td colspan="2">[배분대상: 시·군·구]
▸100분의 95 : 인구감소지역(89개, 7,125억)
▸100분의 5 : 관심지역(18개, 375억)
▸투자계획 평가, 성과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td></tr>
</table>

---

13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계산식 생략>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계산식 생략>

□ 그러나, 「지방기금법」은 ①기금의 배분 대상 및 비율을 “시·도(25%), 시·군·자치구(75%)”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②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사항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음.[135]

□ 그럼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기금의 배분 대상에 ‘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고, 집합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광역지원계정의 40%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합투자기구(10%), 시·도(15%), 시·군·자치구(75%)로 분배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된 기금은 해당 펀드에서 선정한 사업에 운용됨에 따라 「지방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분 대상 및 비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 등을 변경하고 있음.

---

1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행정규칙(고시·훈령·지침)은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고시' 형식의 위임입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3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 배분기준 마련 외에 「지방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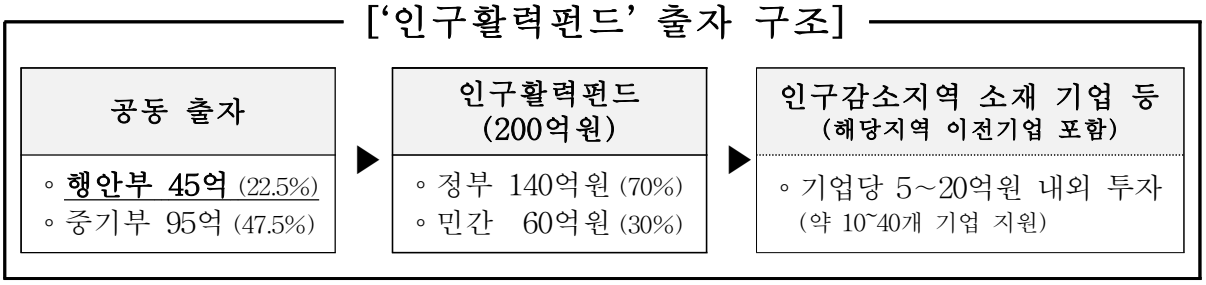
---

136)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결정)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때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참고]「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밝혔으며,[137] '인구활력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에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인구활력펀드' 출자 구조]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차이점]

구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인구활력펀드
지원규모	대규모 지역개발(1,500억원 내외)	중소·벤처기업 등(5~20억원 내외)
지원방식	투·융자복합	투자
대상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수	20개	10~40개 기업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인구활력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후 남은 재원(이자수익 등)으로 출자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입장이나,

137)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해 200억 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10.07.)

①「지방기금법」에서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138] ②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기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인구활력펀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시도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최근 3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139]

□ 그러나, 「지방기금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인구활력펀드'로의 출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3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39)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 사업**

지자체	프로젝트	사업비
충북 단양(1호 선정)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1,133억원
경북 구미(1호 선정)	구미 국가산단 신규 거주시설 건립	1,239억원
전남 여수(3호 선정)	묘도 LNG 터미널(저장탱크)	1조 4,362억원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관련 정보’의 사전공표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신설되어 하반기(2022.9.)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집행률 저조, 차별화된 지역 고유 사업 추진 필요, 성과분석 및 투자계획 평가 개선 등 기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관련 국회 지적사항]

- 기금 배분 결과 공개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국정감사, ’22.10월) - 지자체의 기금 사업 실집행률 저조(예결위, ’22.8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연에 따른 실집행 저조로 사업관리, 기금 사업과 타부처 간 연계, 차별화된 지역 고유 사업 추진방안 마련, 성과분석 및 투자계획 평가 개선, 기금 집행관리 시스템 마련, 근본적인 지방소멸 방지 가능한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 기금 사업에 대한 참여 개선, 생활권을 고려한 기금사업 추진 필요(예결위, ’23.9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중장기적 사업 추진 체계, 집행률 저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검토 필요(국정감사, ’23.10월)

※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매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는지 등의 행정적 감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별 배분액 및 집행 실적, 사업 추진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0] 및 행정안전부의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의 경우 사전에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사전정보공표' 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 ►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시행령 제2조)

○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⑤ ①~④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자료: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

---

1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행정감시를 위해 예산집행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 정보도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권익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5년 종료 예정인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신규 선발을 하지 않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 중 희망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756억 5,000만 원 대비 557억 9,700만원이 감액된 19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9,167	75,650	19,853	△55,797	△73.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8,558	75,211	19,545	△55,666	△74.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운영	609	439	308	△131	△29.8%

나.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①지역혁신형, ②상생기반대응형, ③지역포용형 3가지 유형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 신규 선발을 하지 않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도 선발자 중 ①지역혁신형과 ②상생기반대응형 중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의 3년차 지원예산만 편성되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

구분	지역혁신형 (1유형)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지역포용형 (3유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창업청년 일자리창출지원형	
① 사업 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참여대상	미취업 청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사업별 탄력적 운영 가능)			
② 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위해 미래 신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지원	인구감소지역 신규창업 지원	서울 외 지역 창업 청년 지원 (창업 후 7년 이내)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 청년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기간	1년+1년 (+1년)	1년+1년 (+1년)	1년 (+1년)	1년
지원내용	취업(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1년 지원 + 지역거주, 계속근무시 1년 지원 (+3년차 참여 청년 대상 정규직 유지(전환) 시 정착 인센티브 지원)	신규창업지원, 인큐베이팅 1년 + 창업 성공시 성장지원 1년 (+3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창업청년 성장지원 1년 (+2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취업지원(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1년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운영’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내역사업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하여 취업·창업 중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71,000천원 편성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59명의 청년에게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음.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개요]

□ **컨설팅 추진 개요**

○ **(목 적)** 참여청년이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관리로 중도포기 최소화 유도

○ **(대 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중 컨설팅 희망청년

○ **(주요사항)** 취업·창업 중 희망분야 컨설팅 제공 및 의견 청취

○ **(추진방식)** 전문가 집단 활용 자문위원을 매칭후 컨설팅(1:1, 그룹별) 진행

□ **컨설팅 결과**

○ **(추진실적)** ‘22~’24년간 청년(559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의 구직·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 도모

연도	사업 참여인원	컨설팅 참여청년수		
		취업	창업	소계
2022	32,753명	100명	135명	235명
2023	24,504명	99명	154명	253명
2024.9.	12,714명	30명	41명	71명
합계	**69,971명**	**229명**	**330명**	**559명**

□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5년 종료될 예정으로, 2024년부터 신규 선발은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참여자에 2년차, 3년차 지원예산만 편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참여인원(12,714명)은 2023년 참여인원(24,504명)의 52%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집행률도 14.8%로 저조한 상황임(2024.9월 기준).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업 참여인원	컨설팅 참여청년수	예 산			비 고
			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2022	32,753	235	71,000	17,857	25.2%	
2023	24,504	253	71,000	58,287	82.1%	1:1컨설팅으로 변경
2024.9.	12,714	71	71,000	10,488	14.8%	1~2분기 집행액 기준, 3~4분기 1천만원 집행 예정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2025년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은 2024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1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1232-300)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매년 50억원 규모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2024년 예산 대비 100% 증액 편성되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집행 부진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정비 사업이 내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해당 사업은 타 부처의 빈집정비 사업과 유사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부처의 빈집정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타 부처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개 요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전국 빈집으로 야기되는 주거 경관, 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정비 중심의 특화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50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100%)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	5,000	10,000	5,000	100

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 필요

□ 전국 빈집은 2022년말 기준 13만 2천호로 전체 주택(18,812천호)의 0.7% 수준이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6만 1천호로, 전체 빈집의 46.8%를 차지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빈집 및 인구현황]

구분	전국(A)	인구감소지역(B)	비율(B/A)
빈집(호)	132,052	61,838	46.8%
인구(명)	51,439,083	4,840,438	9.4%

※ 자료 : 2022년말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빈집 현황 조사결과

□ 특히,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주민 안전, 위생·악취,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재산권·세부담 등으로 빈집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2024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 사업 개요

○ (사업연도/예산) 2024년 / 50억원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지자체 조례

○ (사업내용) 빈집 철거·활용, 철거 후 부지 공공 활용(꽃밭, 공용주차장 등)

○ (지자체 선정) 지자체 신청을 받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우선 지원

○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 행안부: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평가
- 지자체: 소유자 동의서 확보, 수요조사 및 응모, 시행자 선정·지도·감독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의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100% 증액하여 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당초 사업 예산은 매년 50억원씩 총 150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141]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전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최근 중앙지방정책협의회(’24.1월), 시도 빈집 관계자 회의(’24.6월) 등을 통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142] 빈집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143]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업은 당초 빈집정비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144]

---

141) 2024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행정안전부

142) ’24년 수요조사 결과, **79개 시·군·구**에서 **1,551호**의 빈집에 대한 정비 신청

143) “소리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 KBS 추적 60분(2024.9.27.)

144)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확정 이후 계약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령상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이 적법·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전용(2024.5월)하였다는 입장임.

2024년도 사업의 경우 7월부터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기 시작했으며, 9월말까지도 전체 예산의 53%(26.4억원)만 교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특히,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빈집정비 사업은 이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이며,

특히,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의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대상인 '농촌지역'과 대부분 겹치므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 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 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농촌의 빈집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2024.7.3.시행)을 통해 ①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145]와

②특정빈집[146]에 대한 철거 명령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타부처 빈집정비사업과의 비교]

구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어촌지역
추진중인 빈집정비 관련사업 (2025년도 예산안)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100억원)	• 취약지역 개조사업 (1,050억원) - 생활여건 열악한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공급	• 도시재생사업 (4,648억원) - 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 -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등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296억원) - 어촌지역의 경제, 생활, 안전인프라 종합개선 사업
		• 농촌공간 정비사업 (1,046억원) - 농촌 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38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취약지역 노후 주택 정비 등	
		•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 (신규, 20억원) -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리모델링 등 지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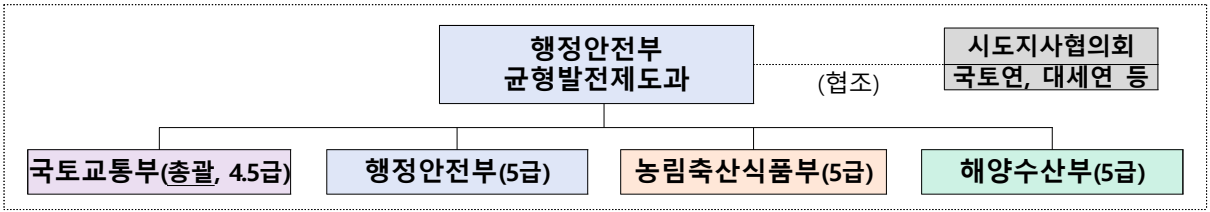
145)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가능
- 지정 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146) **"특정빈집"** : ①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②**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③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④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의 시각에서,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 등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종합적인 빈집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국토교통부)·농어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빈집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8월말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임.[147]

147) 빈집정비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24.8.26.)



【지방재정경제실】

18.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 2024년도 국세수입에 예산(367.3조원) 대비 대규모(△29.6조원)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도 조정의 여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세수입 예산안의 재추계 및 수정 추이를 지켜보며 지방교부세 예산안도 그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개 요

□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148]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인 지방교부세 6개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66조 7,593만원 대비 2,792억원(0.4%) 증액된 67조 385억원이 편성되었음.

148)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C=B-A)	증감률 (C/A)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67,119,414	66,759,324	67,038,505	279181	0.4
보통교부세(1631-300)		59,475,700	59,843,917	60,401,769	557,852	0.9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824,469	740,337	658,551	△81,786	△11.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206,117	185,084	164,638	△20,446	△1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1,030,586	925,421	823,189	△102,232	△11.04
부동산교부세(1633-300)		4,713,300	4,109,800	4,004,709	△105,091	△2.6
소방안전교부세 (1645-300)		869,242	954,765	985,649	30,884	3.2

나. 국세수입 예산안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 예산안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최근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재원이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대규모 미교부(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우선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총 75조 2,882억 6,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이 중 89.1%인 67조 1,194억 1,400만원만 교부(집행)되었음. 유형별로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각각 예산대비 89.2%(예산 66조 6,445억 5,200만원 중 59조 4,757억원), 82.5%(5조 7,133억원 중 4조 7,133억원)만 교부되었음.

[2023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66,644,552	59,475,700	-	7,168,852	89.2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824,469	824,469	-	-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206,117	206,117	-	-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1,030,586	1,030,586	-	-	100.0
부동산교부세(1633-300)		5,713,300	4,713,300	-	1,000,000	82.5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869,242	869,242	-	-	100.0
합계		75,288,266	67,119,414	-	8,168,852	89.1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 2024년에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총 66조 7,593억 2,400만원 편성되었으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를 때, 이 중 96.7%인 64조 5,230억원만 교부(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유형별로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각각 예산대비 96.6%, 소방안전교부세가 87.2%만 교부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예상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예상액	예상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59,843,917	57,793,200	-	2,050,717	96.6%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740,337	715,000	-	25,337	96.6%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185,084	178,800	-	6,284	96.6%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925,421	893,700	-	31,721	96.6%
부동산교부세(1633-300)		4,109,800	4,109,800	-	-	100.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54,765	832,495	-	122,270	87.2%
합계		66,759,324	64,522,995	-	2,236,329	96.7%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찬성·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음.

그러나 애초에 국세수입 예산안을 정확히 추계하여 지방교부세 예산안도 정확히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 문제는 국세수입 중 상당수 세목의 예산안은 전년도 예상 세입을 활용하여 추계하는데, 지난 9월에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한 337.7조원 예상)가 발표되면서 그 전에 추계된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도 변동의 여지가 발생하였다는 점임.

또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정부 예산안 382.4조원 보다 △3.9조원 낮은 378.5조원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음.[149)]

□ 따라서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이 재추계 및 수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에 부합하도록 지방교부세 예산안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49)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pp.62-65.

19.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300)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집행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부담을 부과하거나, 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자주성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회계 결산제도 연구 개선’ 사업은 지방회계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지방계약 심의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밖에 회계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9,400만원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내역사업 ‘지방회계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이 신설되어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사업 ‘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의 내내역사업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1,200만원 증액되었고, 내내역사업인 ‘공유재산제도 운영 및 개선 추진’ 예산이 800만원 각각 증액됨.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4	94	94	156	62	66.0
지방회계제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150)	21	21	21	63	42	200
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151)	73	73	73	93	20	27.4

150) 내역사업인 “지방회계제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포함된 내내역사업에는 ① “회계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2025년 예산안 2,100만원, 전년과 동일), ② “지방재정 집행관리”(2025년 예산안 4,200만원, 순증)가 있음.

151) 내역사업인 “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에 포함된 내내역사업에는 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2025년 예산안 2,700만원,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 ② “공유재산제도 운영 및 개선 추진”(2025년 예산안 2,400만원,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 ③ “기타 회계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추진”(2025년 예산안 4,200만원, 전년과 동일)이 있음.

나.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지방재정 집행관리’는 내역사업인 ‘회계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4,200만원이 반영됨. ‘지방재정 집행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불용 등을 최소화하여 지역 체감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의 산출내역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40회의 컨설팅 회의와 40회의 집행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산출됨.

[지방재정 집행관리 예산 산출내역]

○ 4,200만원
· 지방재정 집행관리 컨설팅 회의자료 인쇄: 3,000만원(1만5천원×50부×40회)
· 지방재정 집행관리 컨설팅 출장여비: 720만원(9만원×2명×40회)
· 컨설팅 등 지방재정 집행 관계자 간담회: 500만원(2만5천원×5명×40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에 계획된 40회의 지방재정 집행관리 컨설팅 회의에 참석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거나 2025년도 지방재정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컨설팅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2025년 지방재정 집행관리 추진방향”에 따르면, 컨설팅 회의를 통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교부세의 신속한 교부, 행정절차 지연 등 집행상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할 예정임.

[2025년 지방재정 집행관리 추진방향]

□ 지방재정 집행관리

○ 지자체가 연초부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함(이·불용 최소화)으로써 **지역 체감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

□ 2025년 중점 추진사항

① 지방재정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자율성 확대**

○ **적정수준**의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적 목표** 부여(재정당국 협의)

② 지자체 자율적 **목표 달성 지원**

○ 국비 교부시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을 수시 파악하여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비** 및 **지방교부세 신속 교부 지원**

○ **행정절차 지연**(환경영향평가 등) 등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③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연간 집행관리** 추진

○ 세입여건 악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 집행토록 관리하여 **이월·불용 최소화 도모**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의는 2024년 이전에도 지방재정경제실의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지만 횟수에 제약이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예산의 집행률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예산의 집행률이 94%~97.8%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률 87.6% ~ 89.9%보다 높은 수준임. 집행률의 차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지원하는 컨설팅 회의 및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연도별 재정집행 현황(중앙재정 / 지방재정)]

(단위: 조원, %)

연도	중앙재정			지방재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484.4	473.9	97.8%	377.5	328.0	86.9%
2020	562.4	549.5	97.7%	480.9	432.5	89.9%
2021	617.2	598.5	97.0%	523.9	468.0	89.3%
2022	690.4	670.8	97.2%	552.9	487.7	88.2%
2023	648.8	609.7	94.0%	551.0	482.4	87.6%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부담을 부과거나, 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자주성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의 집행관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152]는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장려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지방재정 집행관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153].

15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53)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지방재정 집행관리’에서 ‘지방재정 집행관리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1338-300)

○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착’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에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신고를 운영하고,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3억 7,500만원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내역사업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가 신설되어 예산 5,300만원이 증액되고, 내역사업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 내역사업에서 400만원이 감액됨.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1,086	1,375	1,375	1,424	49	3.6
지방세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57	60	60	60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사업 추진	31	32	32	32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	227	215	215	211	△4	△1.9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 평가	504	504	504	504	-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137	137	137	137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타당성 평가	100	400	400	400	-	
특정금융거래정보 지방세 활용·지원	30	27	27	27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	-	-	53	순증	

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 분석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의 내내역사업인 ‘선정 대리인 제도 안착’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130만원(운영물품 40만원, 참석여비 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동 예산은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거나, 선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행사 추진시 필요한 물품 구매, 출장자 숙박비·교통비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사업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130만원 · 운영물품: 40만원 · 참석여비: 90만원	○ 130만원 · 운영물품: 40만원 · 참석여비: 90만원

□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사업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제도가 실시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는 233건이고, 지방세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이 지원된 건 수는 141건(신청 대비 60.5%)이며, 선정 대리인이 지원되어 이의신청 등이 인용된 건은 4건(지원 대비 2.8%)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사업 추진 실적]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합계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건)	70	51	37	59	16	233
선정 대리인 지원(건) (요건 충족)	44	25	29	28	15	141
인용(건)	1	1	-	2	-	4
기각(건)	43	24	29	26	14	136
진행중(건)	-	-	-	-	1	1
선정 대리인 미지원(건) (요건 미충족)	26	26	8	31	1	92

자료: 행정안전부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건수는 1,767건으로 선정 대리인을 지원한 건수의 14배 수준으로 많고, 국선대리인 지원 시 인용률은 16.4%~21% 수준으로 선정 대리인 지원 시 인용률인 0%~7.1%보다 높은 수준임.

[선정 대리인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실적(2020년~2023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지원 건수 (건)	선정 대리인	44	25	29	28	126
	국선대리인	413	396	415	541	1,765
인용률(%)	선정 대리인	2.3	4	0	7.1	
	국선대리인	21.0	17.0	20.3	16.4	

자료: 행정안전부, 국세청 2023.7.27.보도자료(국선대리인의 2023년 연간 실적은 국세청에 유선 문의)

□ 이와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예산[154]이 1억 6,890만원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안착 예산 130만원의 약 130배 수준임.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의 예산은 국선대리인 수당 1억 3,350만원, 제도 안내 2,000만원(포스터 2천부, 리플릿 40만부), 국선대리인 간담회 1,5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선대리인 제도와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2025년도 예산안]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선정 대리인 제도 안착
○ **1억 6,890만원** · **국선대리인 수당**: 1억 3,350만원 = (716건×15만원) + (174건×15만원) · **제도안내**: 2,000만원 = (포스터2천부×2천원)+(리플릿40만부×40원) · **국선대리인 간담회**: 1,540만원 = (위촉장200개×5천원)+(간담회비용325개×4만원)+(감사패7개×20만원)	○ **130만원** · **운영물품**: 40만원 · **참석여비**: 90만원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여건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함[155].

---

15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은 국세청의 세부사업인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의 내역사업임.

155)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지출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156]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행정안전부가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적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홍보와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불복 청구 서식[157]에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

---

156)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7)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불복 청구 서식에는 [별지 제5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별지 제56호 서식: 이의신청서]이 있음.

21. 지역경제 활성화(1349-301)

○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면서도 이를 착한 가격에 제공하는 업소로서 최근 내수경기 위축 및 물가 상승으로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1년간 565개소(2023.9.~2024.8.)로 같은 기간 신규 지정된 2,101개소의 27% 수준으로 적지 않으며, 전형적인 착한가격업소는 오랜 기간 단골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로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 노력과 함께 지정된 착한가격업소가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개최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 순회 규제혁신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55억 8,200만원 대비 17억 6,300만원 감액된 3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에서 2024년 배달료 지원 예산 30억원이 감액되고, 물품지원 예산이 12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2,500만원이 감액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역경제활성화	2,211	5,582	5,607	3,819	△1,763	△31.6
정책추진보조요원	75	82	82	85	3	3.7
지역경제정책활성화	181	233	233	183	△50	△21.5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1,607	4,833	4,858	3,117	△1,741	△36.0
지방규제개혁 추진	135	137	137	137	-	
지방규제개혁 공론화 과정 지원	213	297	297	297	-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에 약 85만원 상당의 필요 물품(쓰레기봉투, 고무장갑, 쌀, 공공요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되었고, 국비 지원은 2023년부터 실시됨.

□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은 30억 6,0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12,000개소에 대한 물품지원액 85만원의 30%를 편성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의 특징적인 점은 물품지원 대상인 착한가격업소수가 2023년 5,895개소, 2024년 7,000개소, 2025년 12,000개소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158] 2024년도 예산안과 달리 배달비 예산이 삭감된 것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 합계 : 15억 300만원 ○ **물품지원**: 15억 300만원 = **5,895개**×85만원×30%	□ 합계 : 47억 8,500만원 ○ **물품지원**: 17억 8,500만원 = **7,000개**×85만원×30% ○ **배달비지원**: 30억원 = 5천개소×2천원×1천건×30%	□ 합계: 30억 6,000만원 ○ **물품지원**: 30억 6,000만원 =**12,000개소**×85만원×30%

자료: 행정안전부

158)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2024년 1월 4일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現 6,860개)하는 목표로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비 지원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세부사업인 ‘소상공인역량강화’(4131-317)의 신규 내내역사업인 배달료 지원[2,037억원(67만 9,000명×3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다만, 착한가격업소가 동 사업의 배달비 지원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물품지원의 지원대상을 12,000명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기준 착한가격업소의 수는 8,396개소이지만, 2024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월단위 지정목표 수립 및 집중지정기간을 운영하면서 2024년 12월에는 10,31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 12,000개소로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2025년 12,000개소는 집행할 수 있는 적정 개소라는 의견임[159].

[지방자치단체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 및 현황(2024년 6월~12월)]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한가격업소 지정목표(A)	7,736	8,219	8,739	9,280	9,916	10,113	10,318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B)	7,716	8,020	8,396	-	-	-	-
달성비율 B÷A×100	99.7%	97.6%	96.1%				

자료: 행정안전부

159) 세부사업 ‘지역경제활성화’의 보조사업에 대한 2025년 성과지표는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 8,500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2024년 9월 20일 기준 착한가격업소 수는 8,580개로 동 목표를 달성한 상태임.

□ 2025년 예산안에서는 증가하는 착한가격 업소 수를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품지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를 통해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경영 비용의 일부를 절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 2024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은 96%가 집행되어 7,022개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14억 5,700만원(1개소당 국비 20만 7,000원)지원이 됨. 2024년 예산은 물품지원 예산은 6억 700만원(8월말 기준 집행률 34%[160]), 배달비지원은 4억 5,900만원(9월말 기준 집행률 15.3%)이 집행중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2023년, 2024년)]

연도	구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지원 내용
2023년	물품지원	15억 300만원	14억 5,700만원 집행률 : 96.9%	○지원 업체: 7,022개 ○착한가격업소당 평균 20만 7,000천원 국비 지원(지방비 별도)
2024년	물품지원	17억 8,500만원	6억700만원 집행률 34% (2024년 8월 기준)	
	배달비지원	30억원	4억 5,900만원 집행률 15.3% (2024년 9월 기준)	※ 배달비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의 배달비용 부담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160) 행정안전부는 물품지원 예산은 연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고, 2024년 8월말 기준 업소수 8,396개이므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상된다는 의견임.

□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면서도 이를 착한 가격에 제공하는 업소로서, 최근 내수경기 위축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과 함께 현재 지정되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61].

□ 먼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취소된 업소는 565개으로 같은 기간 새롭게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수인 2,101개소의 약 26.9%로 적지 않은 수준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지정취소 현황(2023.9.~2024.8.)]

시·도	신규지정 업소 수 (2023.9.~2024.8.)	취소 업소 수 (2023.9.~2024.8.)	취소사유			
			휴업	폐업	영업은 계속하지만 자진 취소	기타
합계	2,101	565	22	245	38	260
서울	457	74	4	45	0	25
부산	92	63	3	27	6	27
대구	99	19	1	12	0	6
인천	119	17	2	8	1	6
광주	83	13	2	7	1	3
대전	78	30	0	14	3	13
울산	38	8	0	3	0	5
세종	3	4	0	1	0	3

161) 참고로,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점주 대부분이 고령이라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설비 등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상태로 용돈벌이, 소일거리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젊은 업주로 세대교체가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역사속 뒤안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출처: 금강일보 2024년 5월 8일 기사 “연금에 기대는 착한가격업소… 결국은 사라질 운명”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408

경기	349	69	1	31	6	31
강원	79	45	3	12	2	28
충북	57	22	1	8	2	11
충남	114	28	1	17	0	10
전북	80	30	1	6	6	17
전남	129	40	0	6	7	27
경북	66	33	1	15	0	17
경남	158	34	2	15	4	13
제주	100	36	0	18	0	18

자료: 행정안전부

□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등록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8,396개소 중 등록기간이 5년 미만인 업소는 4,854개소로 5년 이상~10년 미만인 업소 1,305개, 10년 이상인 업소 2,237개소보다 많음. 특히, 등록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업소가 4,176개소로 49.7%를 차지함.

[등록기간별 착한가격업소 현황(2024년 8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등록 기간	착한가격업소							
	외식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합계
5년 미만	3,755	76	128	651	41	62	141	4,854
3년 미만	3,250	55	108	545	34	56	128	4,176
5년 이상~ 10년 미만	965	42	57	201	11	13	16	1,305
10년 이상	1,586	93	112	389	35	8	14	2,237
합계	6,306	211	297	1,241	87	83	171	8,396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착한 가격업소의 전형적인 특징은 오랜 기간 동안 단골손님에게 좋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같은 착한가격업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62].

□ 이를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과 함께 현재 지정되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고령 등을 이유로 은퇴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후계자 육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세부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연간 폐업하는 착한가격업소 수를 일정 개수 이하로 하는 것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63].

---

162) 인터넷신문 헤럴드비즈 2024년 1월 24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기고문, "[헤럴드비즈]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착한가격업소'"
(전략)…지난해부터 지역 민생현장을 찾을 때마다 인근 착한가격업소에서 식사도 하고 사장님들께 감사인사도 드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통된 말씀을 하셨다. "처음 가게 시작할 때 찾아주던 단골손님들 덕분에 지금껏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직접 발품을 팔아 원가절감을 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비슷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과 정성이 쌓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진정성 때문인지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에어컨이 오래됐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선뜻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이었다.…(후략)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24000371

163) 참고로, 세부사업 '지역경제활성화'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전국 착한가격업소 개소수(개)임.

【안전예방정책실】

22.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 ‘승강기 실태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승강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는 조사 대상 및 항목을 설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는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협의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담당자가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거나 민간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등 협의체 회의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승강기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홍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승강기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28억 5,000만원 대비 69억 7,800만원이 감액된 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24년에 내역사업으로 실시 중인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 사업(75억 2,000만원)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4,618	12,850	5,872	△6,978	△54.3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470	-	-	-	-
승강기 사고조사	2,916	4,052	4,218	166	4.1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182	359	389	30	8.4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704	423	429	6	1.4
승강기 안전교육	120	120	120	-	-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90	240	240	-	-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27	27	24	△3	△11.1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36	36	32	△4	△11.1
승강기 안전 국제회의 참석	33	33	33	-	-
기타운영비	40	40	40	-	-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	-	7,520	-	순감	순감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	-	100	순증	순증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	247	순증	순증

나.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 면밀한 조사 계획 수립 필요

□ 1910년 최초의 승강기 설치 이후 국내 승강기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총 승강기 설치 대수는 세계 7위 수준, 매년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는 세계 3위 수준이며, 현재는 총 설치 대수는 약 80만대를 상회하고,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약 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국가별 승강기 누적 보유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중국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대한민국
보유현황	7,130,000	1,073,503	1,002,063	993,729	871,093	823,896	758,535

*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국가별 승강기 연간 설치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중국	인도	대한민국	터키	러시아
연간 설치현황	850,000	68,000	37,400	33,600	29,000

*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국내 승강기 누적 설치대수]

(단위 :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설치대수	718,795	749,845	780,467	811,602	834,788

*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 그러나 이러한 승강기산업에 대한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승강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기업에 해당하며, 국내 승강기 시장 구조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승강기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역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는데, 현재 대한승강기협회에서 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자료 취합을 통해 대략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있기는 하나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승강기산업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의 분포와 매출액 및 산업 종사 규모 등 승강기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음.

□ 산업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 현황, 수익구조, 해외진출 수준,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등 정확한 기초자료가 조사·확보가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임.

특히, 승강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바가 없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정확한 현황자료가 빠짐없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상황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에 맞는 조사 대상 및 항목을 설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승강기산업 진흥 정책의 기반일 될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확대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지원 강화 필요

□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164]를 마련하였음.

□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업계가 중심이 되어 소통하고 진흥정책을 발굴하여 승강기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승강기사업자, 대한승강기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022년부터 구성·운영 중이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및 관련 예산의 미편성으로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운영상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회의 개최횟수는 5차례[165]에 불과하였음.

□ 그런데 법 제정에 따른 승강기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승강기

---

164)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5) 1차회의(2022. 5. 4.), 2차회의(2022. 10. 9.), 3차회의(2023. 6. 28.), 4차회의(2023. 12. 28.), 5차회의(2024. 6. 27.)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산업 정책을 발굴하는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협의체 활동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주요 민간업계 관계자의 협의체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현재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 횟수를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 협의체 개최 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용 등 필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위원장 자격 검토 필요

□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자 1인, 유관기관 소속 2인(대한승강기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외부위원 1인(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 산업계 위원 8인(4개의 분과위원회별로 각 2인) 및 위원장 1인(산업계 위원이 추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위촉)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구성 현황(총 13인)]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위원장(1)	현대 엘리베이터		**조○○**	대표이사	-
정부(1)	행정안전부		**김○○**	사무관	-
유관기관(2)	대한승강기협회		**조○○**	실장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황○○**	실장	-
외부(1)	산업연구원		**황○○**	부연구위원	-
산업계 분과별 위원 (8)	제조 설치	OTIS	**장○○**	이사	분과 위원장
		신한 엘리베이터	**문○○**	부사장	분과 부위원장
	부품 제조	지앤피리프트	**김○○**	대표	분과 위원장
		삼일엘텍	**이○○**	대표	분과 부위원장
	유지 관리	성도 엘리베이터	**박○○**	대표	분과 위원장
		OTIS	**이○○**	전무	분과 부위원장
	기술 개발	대한승강기협회	**임○○**	자문위원	분과 위원장
		세라에스이	**김○○**	이사	분과 부위원장

* 자료: 행정안전부

□ 협의체 출범 당시 승강기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에서 맡지 않고 민간업계 관계자 중에서 추대하였음.

□ 그러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협의 사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위원장을 민간과 정부 중 어느 쪽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①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②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③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166]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승강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소가 될 것임.

□ 그런데 현재와 같이 민간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담당자가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거나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두

16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는 등 협의체 회의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관한 민간의 애로사항이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3.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3032-509)

○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영상정보의 활용을 통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 강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이 높다는 이유로 ISP 수립 중에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 개시 전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ISP 결과를 사업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한 CCTV 영상정보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적시에 공유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실증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관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32억 5,100만원 대비 18억 2,400만원이 증액된 50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	3,251	5,075	1,824	56.1

나.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ISP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사업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및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난·안전분야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18억 2,400만원)되었는데, 이는 2024년에 실시 중인 ‘지능형 CCTV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ISP’ 사업 예산(4억 3,100만원)이 제외되고 2025년에는 본 사업인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33억 1,500만원)이 반영된 것에 크게 기인함.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5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251 가.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지원(2,000) · 기술개발 및 지자체 적용 지원 : 500×4개=2,000 **나. 지능형 CCTV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ISP(431)** 다.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 기술개발 및 지자체 적용 지원 : 410×2개=820	5,07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075 가.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지원(1,760) · 기술개발 및 지자체 적용 지원 : 440×4개=1,760 **나.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3,315)**

□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167] 수립이 완료된 후에 요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ISP 수립 중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형식적·추상적 계획수립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ISP를 먼저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본 사업의 예

167) **ISP(정보화전략계획)**: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산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확한 예산 규모의 도출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가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본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제출[168]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관제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1월 27일에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에서 “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16개소(광역 4, 기초 212)로 이들이 운영 중인 CCTV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2월 기준 약 60만대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대수]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CTV 대수 (증가율)	355,409대 (10.7%)	418,780대 (10.6%)	473,210대 (9.1%)	535,592대 (10.4%)	599,142대 (10.6%)

* 자료: 행정안전부

168) 2024. 6. 17. ISP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검토요청(ISP 사업 기간: 2024. 3. 21. ~ 7. 19.)

이 중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 기능이 적용된 CCTV는 약 34.4%(205,845대)에 불과하며, 지능형 관제 CCTV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는 약 87.1%를 기록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부산은 9.3%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시·도별 지능형 관제 적용 CCTV 보유 비율]

대구	87.1%	울산	40.3%	대전	23.0%
경북	71.0%	경기	29.5%	인천	20.9%
제주	54.8%	충남	28.3%	전북	16.2%
광주	50.6%	강원	26.6%	세종	15.2%
경남	48.4%	서울	26.4%	부산	9.3%
전남	47.8%	충북	25.1%	-	-

*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대수에 비해 관제 인력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1인당 관제 대수가 43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인 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관제 대수(2023. 12. 기준)]

시·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연계 CCTV 대수	1인당 관제대수
계	216	4,169	599,142	431**
서 울	25	366	99,515	816
부 산	16	286	26,008	273
대 구	4	182	14,364	237
인 천	11	195	23,258	358
광 주	1	83	9,888	357
대 전	1	63	8,247	393
울 산	5	62	11,521	557
세 종	1	25	3,958	475
경 기	31	677	176,850	784
강 원	18	214	21,123	296
충 북	11	178	22,585	381
충 남	15	287	34,974	366
전 북	14	184	20,443	333
전 남	22	442	29,738	202
경 북	22	461	39,480	257
경 남	18	363	41,692	345
제 주	1	101	15,498	460

* 자료: 행정안전부
**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형태임.[599,142(대) / 4,169(명) * 3(교대) = 431]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제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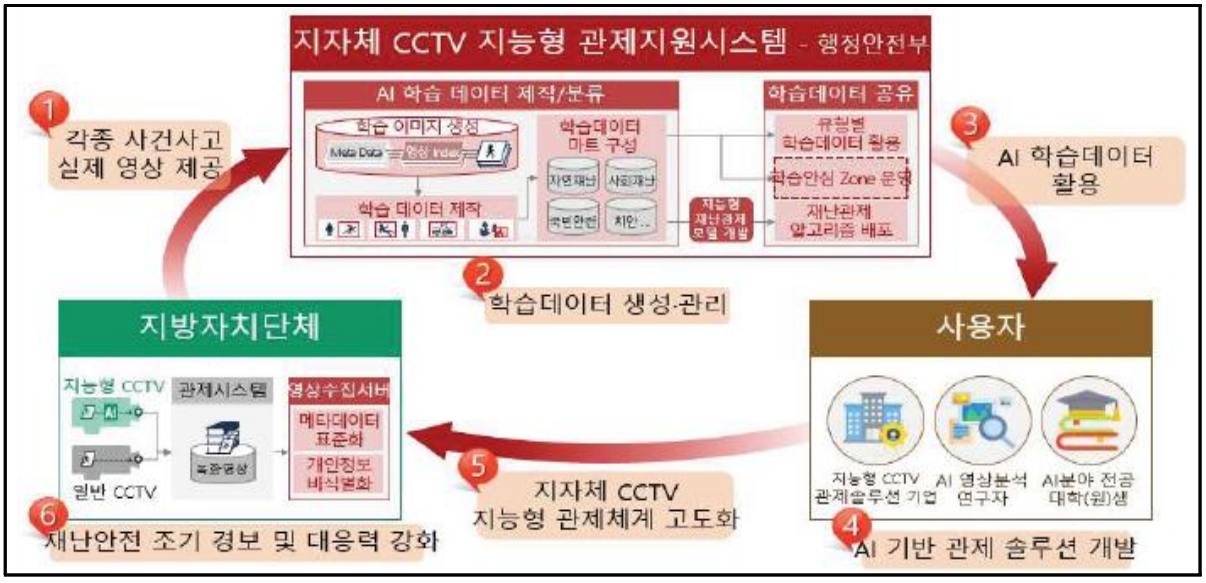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ISP 수립 후 바로 다음 해에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까지 추진될 예정인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비교하여 ISP 수립 결과를 분석하여 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ISP 수립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CCTV 영상정보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서 포착한 재난·사고 등의 현장 영상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169]과 공유함으로써 재난·안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받은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AI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민간 기업·연구원 등이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CCTV 관제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CCTV 지능형 관제 지원체계 개념도]



1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 등 위험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적시에 빠짐없이 공유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재난관리정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위한 연계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하려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원활한 영상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련 영상정보의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지방지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4)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24.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각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해 많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분화된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과다한 비용지출과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므로 향후 신규 시스템 구축 시 필요성·구축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기관 간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하여 실질적 협업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관리본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025년 현재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정보시스템은 총 53개로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344억 3,500만원 보다 7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41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 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안전관리본부 정보시스템	53개	134,435	141,791	7,356	5.5

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성, 도입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및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의 내실화 필요

□ 최근 태풍, 홍수, 호우 등 대표적인 자연재난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발생도 잦아지고 있어 국가와 국민이 다양한 재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재난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수행하는 대비·대응 정책 및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재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별·기능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기관 간 업무 공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임.

□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확대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정보시스템을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과다 발생 및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개별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은 ① 재난관리의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수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②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예·경보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③ 재난대응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 재난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과 고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국가재난관리 관련 주요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구축연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주요 기능
재난관리시스템	2009	2,441	2,441	중앙·시도·시군구 등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의 종합적 업무 지원
상황전파시스템	2005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대응지시·상황보고 등 기관간 신속한 소통, 협업 등 재난상황 대응 지원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2015			기관별로 관리되는 긴급통신수단 정보 공동활용
국가핵심기반관리시스템	2016			국가기반시설의 시설현황, 비상연락망, 보호계획 등 기본현황 정보 관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시스템	20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및 정보관리 전반을 전자적 처리
재난훈련관리시스템	2015			재난대비 훈련 결과 및 평가·개선 사항 관리

시스템명	구축연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주요 기능
정보통신사업관리 시스템	2016			재난안전분야 정보통신사업 현황조회, 사업 이력 정보 활용, 정보시스템 성과 평가
재난정보공동이용 시스템	2005			기상청, 소방청, 국토부, 지자체 등 기관별 관리 재난정보를 연계·수집하여 재난 관계기관 공동활용
풍수해보험업무 지원시스템	2015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에서 수집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급정보 수집, 국가 보험료 정산
풍수해피해예측 시스템	2019	421	320	재해우려지역 지도표출, 읍면동 단위 강우 표출, 재난위험 문자발송, 과거 유사 태풍사례 분석 등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시스템	2019	31	31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정보지원
지진대응정보시스템	2005	701	701	지진, 지진해일, 화산재해로 인한 인명·건물 피해 예측을 재난부서 담당자에 제공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지원
공공시설물내진 보강시스템	2017	38	34	지진대책법에 의거,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정보 통합관리
소하천관리시스템	2011	40	40	소하천 고시 등록·조회, 시군구 종합계획 관리 및 수계별 현황 제공
침수가뭄급경사 지정보시스템	2015	143	143	침수재해지도 관리, 실시간 가뭄지수 분석 및 재해위험지도 표출 등
재해상황분석판단 시스템	2019	94	85	재해우려지역 지도표출, 읍면동 단위 강우 표출, 재난위험 문자발송, 과거 유사 태풍사례 분석 등
GIS기반통합상황 관리시스템	2019	725	725	전자지도 상황판에 실시간 재난상황정보를 표출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 지원
재난관리평가시스템	2016	23	23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지표, 실적등록 등 지원
국가재난조사정보 시스템	2016	31	31	사회재난 원인 조사이력, 이행점검 및 통계, 재난유형별 전문가 DB, 중대사고보고서 수집 관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2016	138	152	가입대상시설 연계, 보험가입관리, 갱신기업, 과태료 부과 등 업무 지원
인파관리지원시스템	2024	0	330	기지국접속정보를 활용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2023	1,902	2,020	유통물류 ICT 기술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 관리 및 데이터 등록·관리·제공 등

□ 그런데,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기능에 따라 세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과 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현재 내역사업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단위업무 시스템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시스템 종류를 27개에서 12개로 축소하고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큰 규모의 예산(2024년 예산 115억 3,100만원, 2025년 예산안 82억 5,6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시 그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총 소유비용(TCO)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고 필요 시 국민에게 공개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 그런데,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한 부가적인 존재일 뿐 그 자체로 협업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추진단[170]을 상설화하는 등 기관 간 소통·협업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170) 행정안전부 유관부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참여

【자연재난실】

25.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은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상이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기존의 재해관련 조사 전문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의 참여 등으로 조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5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신규로 발굴된 급경사지 중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부재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수집된 DB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기술의 개발과, 하천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계측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8,696억 6,700만원 대비 44억 8,700만원이 증액된 8,74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703,256	869,667	874,154	4,487	0.5
재해위험지구정비	434,869	484,578	469,782	△14,796	△3.1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108,432	149,096	108,099	△108,099	△27.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41,775	217,813	285,773	67,960	31.2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5,400	15,400	7,700	△7,700	△50.0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관리	2,780	280	300	20	7.1
급경사지 실태조사	-	2,500	2,500	-	-

나.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171]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172]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태풍·호우 등의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과 같이 25억원이 편성되었음.

17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2) **급경사지 정의**: 택지·도로·철도 등에 부속되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인공비탈면·자연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
*(인공비탈면)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 / (자연비탈면)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

□ 동 사업은 2022년 도입된 이후 2023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주관하에 법률에 따라 재해 예방 등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173] 및 한국방재협회[174]가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업무를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실태조사의 사업 추진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7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4)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과 같이 재난피해 방지라는 직접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많은 대상지구와 예산 규모 및 각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달리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사업 수행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올바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일된 기준으로 적시에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미등록 급경사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에는 연내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한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2025년 중에서야 완료될 예정이어서 차년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의 경우 기존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던 재해 관련 전문기관(한국급경사지안전협

회, 한국방재협회)이 아닌 민간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전문성 및 정확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음.

[2023년 및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 경과 비교]

연도	발주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개소)	사업기간	사업수행
2023	행안부 (국비 100%)		2,500	5,000	'23.3.13.~11.30. (약 9개월)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66.58%), 한국방재협회(33.42%)
2024	지자체 (국비50%, 지방비50%)	계	5,000	10,000	-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검수작업 수행)**
	부산		100	200	'24.3.18.~10.17. (약 7개월)	**㈜동양종합 기술공사**
	울산		200	400	'24.4.30.~**'25.1.19.** (약 9개월)	**㈜성지토목 기술공사**
	경기		600	1,200	'24.7.2.~**'25.1.29.** (약 7개월)	한국방재협회
	강원		800	1,600	'24.6.20.~**'25.2.14.** (약 8개월)	**㈜청솔, ㈜서광, ㈜한울이엔씨**
	충북		450	900	'24.7.2.~**'25.1.27.** (약 7개월)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충남		450	900	'24.7.5.~**'25.1.10.** (약 6개월)	한국방재협회
	전북		450	900	'24.7.26.~**'25.2.20.** (약 7개월)	한국방재협회
	전남		500	1,000	'24.7.8.~**'25.1.7.** (약 6개월)	한국방재협회
	경북		750	1,500	'24.9.9.~**'25.5.12.** (약 8개월)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경남		700	1,400	'24.6.17.~**'25.2.18.** (약 8개월)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주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더라도 여전히 국비 50%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신뢰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행정교육기관 포함 필요

□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굴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175]가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전국 수치지형도[176]에서 급경사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해당 주소를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급경사지가 다수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급경사지 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만을 규정[177]하고, 학교 등 교

---

1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6)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7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육시설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관의 부재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해당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관리기관별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관리기관							기타
	지자체	지방 산림청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가철도 공단	도시철도 공사	국립공원 공단	개인, 기업, 타기관 등
20,128 (100%)	13,468 (66.9%)	55 (0.3%)	359 (1.8%)	32 (0.2%)	2,618 (13%)	26 (0.1%)	488 (2.4%)	3,082 (15.3%)

* 자료: 행정안전부

□ 학교 등 교육시설에 위치한 급경사지는 학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대비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급경사지 관리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삭제<2012. 12. 18.>
바.「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라.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내역사업인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은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의 수위 계측을 통해 국가 및 지방하천 수위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54억원 보다 50% 감액된 77억원이 편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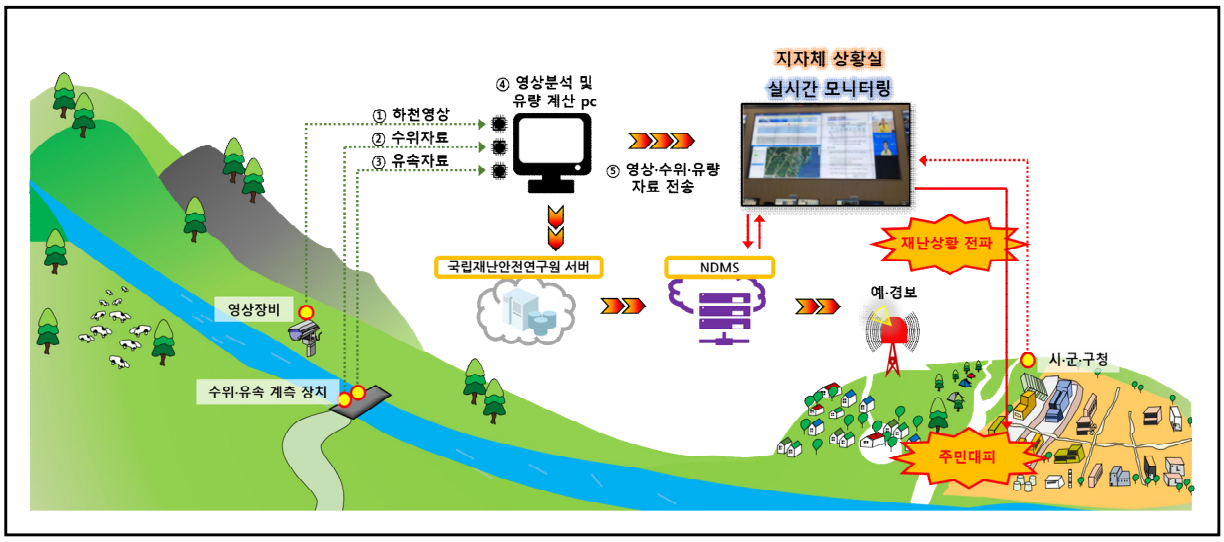
□ 2022년 8월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에 따라 국가·지방·지류하천 전반의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각 소하천에 수위·유속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매년 440개소씩 설치하여 5년간 총 2,200개소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현장계측 DB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기술의 개발과, 국가·지방하천 수위 예측(환경부) 및 소하천 계측 자료(행정안전부)를 연계하여 전체 하천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1년부터 관련 연구(연구명: 현장계측기반 소하천 재난관리기술 개발, 예산규모: 5년간 총 32억원)를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동 사업에 따라 기설치된 계측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본격적인 소하천 수위 변동 예측을 통한 재난의 예방·대응에 활용되지 못하고 자료의 축적에 그치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상황임.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운영 체계]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당초 사업 추진 계획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220개소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개소당 단가가 7천만원(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이나 소요되어 220개소만 설치하여도 총 15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계측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6. 재난관리평가지원(2731-301)

○ ‘재난관리평가지원’ 사업은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차 미흡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관리평가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포괄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종합평가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진단을 통해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6억 4,4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관리평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관리평가지원	639	644	655	11	1.7
재난관리평가 운영	107	112	123	11	9.8
설문조사 연구용역	40	40	40	-	-
우수기관 포상금	492	492	492	-	-

나.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7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각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200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점차 평가대상을 확장하여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2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66개 등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실시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179]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1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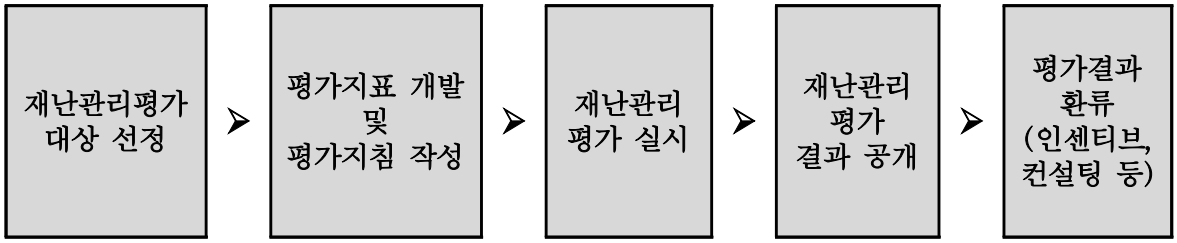
총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38개	29개	243개 (시 · 도: 17개, 시 · 군 · 구: 226개)	66개 (철도: 14개, 도로 · 항공 · 항만 28개, 에너지 13개, 안전관리 11개)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평가는 재난안전, 기후,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단계별로 구성된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각 평가기관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중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재난관리평가 진행 절차]



□ 그런데 최근 3년간 재난관리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통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2번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이 재차 미흡 등급을 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연도별 미흡 등급 지방자치단체]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시·도		강원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시·군·구	**서울**	은평구, 강서구	용산구, 중랑구	서대문구, 양천구
	부산	서구, 수영구	중구, 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남구	중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대전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	북구	**동구**	**동구**
	경기	하남시, 가평군, **연천군**	**광주시, 연천군,** 양평군,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	정선군, **화천군**	태백시, **화천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청주시
	충남	**금산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전북	**부안군**	임실군	김제시, **부안군**
	전남	고흥군, 해남군	함평군, 진도군	담양군, 영암군
	경북	청송군, 울릉군	**봉화군**, 성주군	**봉화군**, 예천군
	경남	하동군	합천군	통영시, 의령군

*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24년에 미흡으로 평가된 2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3년간 2차례 이상 미흡으로 평가받았으며, 이 중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 충청남도 금산군 등 4개 기관은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기관의 미흡한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을 지원하려는 당초의 사업목적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재난관리 미흡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컨설팅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과 다소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나, 제시된 개선방안을 실행할만한 재난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컨설팅 후에도 개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실】

27.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2735-304)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소관 업무 및 재난원인조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가의 협의회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어 운영하는 방안 및 행정안전부의 담당자가 협의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는 재난 및 사고의 원인 규명 및 후속조치 관리 등을 통해 유사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래 재난환경 변화 예측 및 발생가능성 분석 등 관련 연구분야 협업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5억 300만원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955	503	619	116	23.1
재난사고원인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단운영	341	109	104	△5	△4.6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업체계구성및운영	22	22	33	11	50.0
미래대형복합재난 연구분야협업체계구축	72	72	182	110	152.8
재난통신망기반 복합재난대응시스템구축	520	300	300	-	-

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활동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은 재난원인조사의 총괄·조정을 위해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협의회 참석 수당을 신규로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 2,2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예산 산출 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총 22백만원>	<총 3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2백만원
▪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11백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11백
- 워크숍 및 협의회 개최 2,200천원*5회=11백	- 워크숍 및 협의회 개최 2,200천원*5회=11백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참석 수당 : 11백
	- 협의회 참석 수당 265천원*10명*4회 = 10.6백
○ 임차료(210-07) : 5백만원	○ 임차료(210-07) : 5백만원
▪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의회 운영 등 : 5백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 등 임차료 : 5백
- 협의회 운영 등 임차료 1,000천원*5회=5백	- 협의회 운영 등 임차료 1,000천원*5회=5백
○ 여비(220-01) : 6백만원	○ 여비(220-01) : 6백만원
▪ 재난원인조사분야 안건 협의 등 : 6백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안건 협의 등 : 6백
- 안건협의 및 워크숍 참석자 등 여비 : 50천원*24명*5회=6백	- 안건협의 및 워크숍 참석자 등 여비 : 50천원*24명*5회=6백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민·관 협업기반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180]을 통해 재난

1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법 제69조 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69조 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 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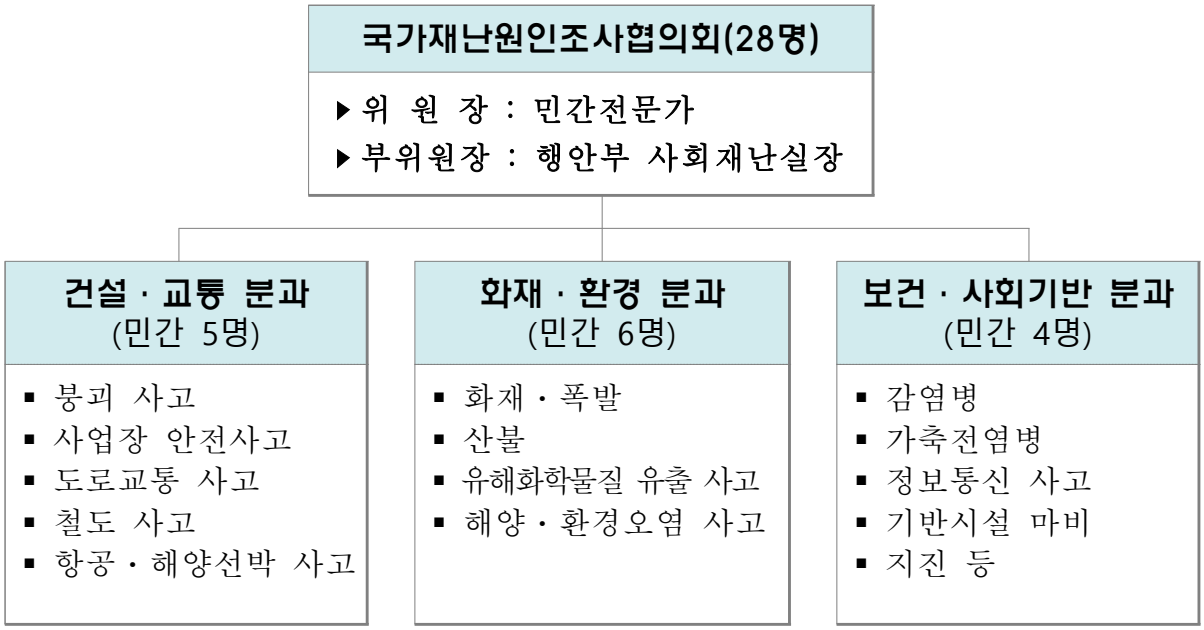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로 운영되었던 기존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개편하여 2023년 8월 18일 공식 출범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원인조사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현재 협의회는 건설·교통분과 민간전문가 5인, 화재·환경분과 민간전문가 6인, 보건·사회기반 민간전문가 4인 등 총 15인의 민간전문가와 13인의 정부 부처위원 등 총 2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화재·환경분과 민간전문가 1인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담당하고 있음.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조직 구성도]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협의회 소관 업무 및 재난원인조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가의 협의회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협의회는 주요 업무로 ①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재

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확인 및 미흡사항의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가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재난원인조사의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추진 방향과 결과 분석 및 보완에 관하여 심의·조정하는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기존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각 관계기관 담당자들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운영하였으나, 개편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국가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원인조사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재 협의회의 위원장을 3개 분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맡고 있어, 다양한 재난 분야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조직 구성도]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소관분야	비고
1	화재환경분과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민○○	화재	위원장 겸 분과장
2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	화재	
3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	화재	
4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채○○	산불	
5		JCB솔루션	장○○	유해화학물질	
6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장○○	해양오염	
7	건설교통분과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홍○○	붕괴	분과장
8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	붕괴	
9		울산과학기술원 안전시설관리본부장	권○○	사업장 안전	
10		㈜PNST법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박○○	도로교통	
11		동양대 철도운전제어학과	장○○	철도	
12	보건질병및기타분과	가천대 감염내과	엄○○	감염병	분과장
13		전북대 수의학과	엄○○	가축전염병	
14		㈜우노	오○○	기반시설	
15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	지진	
16	부처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	-	부위원장
17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	-	-	
18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	
19		농식품부 동물질병관리부장	-	-	
20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	-	
21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	-	
22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	
23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	-	
24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	-	
25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	-	
26		소방청 119대응국장	-	-	
27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	-	
28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	-	

* 자료: 행정안전부

□ 실제로 협의회 구성 이후 실시한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화재·환경 분과 관련 1회, 보건·질병 및 기타 분과 관련 2회, 건설·교통 분과 관련 2회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개최 실적]

연번	회의명	개최일자
1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 (출범회의)	’23.8.18.
2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1차 회의	’23.9.25.
3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건설·교통** 분과 회의	’23.10.16.
4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보건·질병 및 기타** 분과 회의	’24.2.16.~2.19.
5	2024년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	’24.2.27.
6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보건·질병 및 기타** 분과 회의	’24.3.28.~4.2.
7	2024년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2차 회의	’24.8.12.
8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화재·환경** 분과 회의	’24.10.25.~11.7.
9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건설·교통** 분과 회의	’24.10.28.~10.30.

*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재난원인조사는 정부가 공신력을 바탕으로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민간이 주도하도록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국가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자가 협의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8. 도시 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2931-520)

○ ‘강풍 피해 방지기술 개발’은 강풍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실효적인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강풍 피해 관리 기술 개발’ 연구의 진행 경과가 ‘강풍 피해 방지 기술 개발’ 연구와 적극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두 연구과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가. 개 요

□ ‘도시 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는 도시지역 강풍의 위험 예측 및 경보 기술 개발과 강풍 피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DB 구축을 통해 도시 지역 내 강풍 취약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강풍 피해를 저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도시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도시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	-	-	2,000	2,000	순증
강풍 피해 방지 기술 개발	-	-	1,000	1,000	순증
강풍 피해 관리 기술 개발			1,000	1,000	순증

나. 연구 과제 간 연계 강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도시 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R&D)’ 사업은 ① 도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강풍 피해 위험을 예측·평가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강풍 피해 방지기술 개발’과 ② 강풍 피해 발생원인을 조사분석 하고 강풍 피해 관련 DB를 수집·구축·관리하기 위한 ‘강풍 피해 관리기술 개발’의 두 가지 연구 과제(내역사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별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강풍[181]으로 인한 피해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재해연보상의 재난 전체에 대한 피해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강풍 자체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태풍, 호우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강풍 피해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합산하여 피해 규모가 집계되기 때문에 명확한 강풍 피해에 대한 조사·분석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정확한 강풍 피해 원인 분석 및 피해자료 DB를 구축을 통해 강풍의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은 인정됨.

---

181) **강풍**: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함.(국민재난안전포털)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호우	158,129	142,211	1,213	35,887	101,592	53,800	1,651	1,095,172	40,646	332,559	1,962,860	196,286
태풍	1,690	5,291	13,404	214,965	-	64,200	212,778	222,541	21,086	244,046	1,000,001	100,000
대설	11,342	32,421	13,021	18,689	83	14,032	671	-	3,527	15,439	109,225	10,922
지진	-	-	-	11,020	85,022	-	-	-	-	-	96,042	9,604
강풍	932	95	3,891	-	,	7	7	-	445	26	5,403	540.3
풍랑·강풍	-	-	-	8,302	605	-	474	319	-	585	10,285	1,028.5
태풍·호우	-	-	-	-	-	6,416	-	-	-	-	6,416	641.6
풍랑	44	-	333	-	,	2,823	-	-	-	-	3,200	320
한파	-	-	-	-	-	-	-	145	280	-	425	42.5
낙뢰	-	-	-	-	-	-	26	-	52	-	78	7.8
우박	-	-	-	-	-	-	-	-	16	-	16	1.6
기타	미산정					7	618	-	-	-	625	62.5
합계	172,137	180,019	31,862	288,862	187,302	141,284	216,226	1,318,177	66,053	592,656	3,194,578	319,457.8

※ 출처: 2022재해연보

[최근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사망·실종)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호우	4	2	-	1	7	2	-	44	3	19	82	8.2
태풍	-	-	-	6	-	2	18	2	-	11	39	3.9
태풍·호우	-	-	-	-	-	1	-	-	-	-	1	0.1
대설	-	-	-	-	-	-	-	-	-	-	-	-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180	36
합계	4	2	0	7	7	53	48	75	42	60	298	29.8

※ 출처: 2022재해연보

□ 그런데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연구과제 중 ‘강풍 피해 방지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현황 DB 구축 및 발생 원인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강풍 피해 방지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도시지역 강풍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위험분석 기술, ② 강풍 피해 발생 예측 시 기존 재난문자보다 개선된 상세 정보가 포함된 대국민 경보 기술 개발, ③ 실증 기반 피해 확산 차단 및 방지 기술 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연구과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격상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강풍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DB 구축 및 강풍 피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분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동 사업의 다른 연구과제인 ‘강풍 피해 관리기술 개발’은 ① 도시지역 강풍 피해 발생 원인 인자(Trigger) 및 피해 전개 양상 분석, ② 강풍 피해 원인 분석을 위한 피해 자료 DB 수집·구축·관리·운영 기술 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기술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실효적인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강풍 피해 관리 기술 개발’ 연구의 진행 경과가 ‘강풍 피해 방지 기술 개발’ 연구와 적극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두 연구과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재난복구지원국】

29. 풍수해·지진재해보험(2734-302)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은 단기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미납보험료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비율을 조정한 일반 계층의 경우 신규 가입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한 실효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누적 준비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도입 이후 단 두 차례만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준비금 규모 및 적립 비율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풍수해 및 지진재해 발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380억 4,500만원 대비 109억 4,400만원(28.8%)이 증액된 489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36,360	38,045	48,994	10,949	28.8
풍수해보험 등 운영	1,214	414	414	-	-
풍수해보험료 지원	35,157	37,631	48,580	10,949	29.0

나. 미납보험료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비율 축소 시 이로 인한 신규 가입유인 감소 방지 필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도입 초기에는 풍수해만을 보험 재해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 지진을 추가하였고 2024년에 「풍수해보험법」의 제명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명도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되었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도입 목적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등에 대하여 국가 피해지원제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난대책비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액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 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목적물에 따라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으로 구분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목적물에 따른 유형 구분]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정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가입유도를 위한 제3자 기부가입 제도[182]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가입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소상공인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보험 가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 시설유형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가입	가입률	가입	가입률	가입	가입률
주택(건)	527,331	26.7%	653,634	33.4%	673,033	34.4%
온실(ha)	3,983	15.8%	4,494.9	18.2%	4,753.2	19.4%
소상공인(건)	195,792	31.9%	142,112**	23.1%	88,197	10.4%

* 자료: 행정안전부

**집계방식이 2022년 개별담보별 → 2023년 소재지별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축소집계되었으며, 2022년 기준 적용시 345,338건임

□ 그런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및 예산 부족 문제로 정부의 보험료 미납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023년까지 미납된 보험료가 434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미납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미납보험료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2) **제3자 기부가입 제도**: 기업이 소상공인 가입자의 보험료 자부담분을 기부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0년 이후 연도별 보험료 미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예산(A)	소요액(B)	미납 내역	
				보험료(B-A)	가입자 수
총 계		94,607	138,051	**43,444**	-
'20년	소계	15,437	17,839	**2,402**	-
	주택(세대)	4,054	6,164	2,110	58,089
	온실(ha)	7,945	10,413	2,468	773
	소상공인(건)	3,438	1,262	△2,176	△25,138
'21년	소계	19,376	24,520	**5,144**	-
	주택(세대)	4,260	7,922	3,662	100,594
	온실(ha)	10,153	13,900	3,747	691
	소상공인(건)	4,963	2,698	△2,265	△29,885
'22년	소계	24,637	41,367	**16,730**	-
	주택(세대)	8,368	10,860	2,492	122,472
	온실(ha)	13,163	20,717	7,554	1,343
	소상공인(건)	3,106	9,790	6,684	165,688
'23년	소계	35,157	54,325	**19,168**	-
	주택(세대)	8,293	12,841	4,548	165,524
	온실(ha)	16,019	28,754	12,735	1,035
	소상공인(건)	10,845	12,730	1,885	26,919

* 자료: 행정안전부

□ 보험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 및 보험사와 협의하여 미경과보험료를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하였고, 2023년에는 8월부터 소상공인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축소(70% → 50%)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미납보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1년에 확대하였던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중 주택 및 소상공인 대상 보험의 일반계층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70% → 55%)하는 등 일부 정책을 변경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에 누적된 미납보험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44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분담 비율]

(단위: %)

구 분			2023.1.~2024.6.				2024.7.~2025. 이후			
			정부			개인	정부			개인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주택(정액형)	개별계약	일 반	70.00	56.50	13.50	30.00	55.00	46.00	9.00	45.00
		차상위계층	77.50	61.75	15.75	22.50	77.50	61.75	15.75	22.50
		기초수급자	86.50	68.05	18.45	13.50	86.50	68.05	18.45	13.50
	단체계약	일 반	71.20	56.80	14.40	28.80	71.20	56.80	14.40	28.80
		차상위계층	78.40	61.60	16.80	21.60	78.40	61.60	16.80	21.60
		기초수급자	87.04	67.36	19.68	12.96	87.04	67.36	19.68	12.96
		재해취약지역	87.04	67.36	19.68	12.96	87.04	67.36	19.68	12.96
		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	100.00	70.00	30.00	-	100.00	70.00	30.00	-
주택(실손형)	개별계약	일 반	55.00	46.00	9.00	45.00	55.00	46.00	9.00	45.00
		차상위계층	77.50	61.75	15.75	22.50	77.50	61.75	15.75	22.50
		기초수급자	86.50	68.05	18.45	13.50	86.50	68.05	18.45	13.50
온실(정액형)	개별계약	일 반	70.00	56.50	13.50	30.00	70.00	56.50	13.50	30.00
소상공인 상가·공장(실손형)	일반계약	일 반	70.00	56.50	13.50	30.00	55.00	46.00	9.00	45.00
	기부계약	일 반	50.00	35.00	15.00	50.00	50.00	35.00	15.00	50.00

*자료: 행정안전부

□ 이를 통해 기존 미납보험료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향후 미납보험료의 확대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감소된 정부 지원비율로 인해 신규 가입 유인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단기간 내에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가입 대상자 및 가입 예정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지원 비율의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단기간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예산 낭비 및 정책 수혜자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준비금의 누적 규모 과다 문제 검토 필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75%)와 보험사의 사업운영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25%)로 구성되고, 위험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준비금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준비금은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에 따라 적립되는 손실보전준비금(위험보험료의 9%)과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계상하는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음.

□ 그런데 2006년 보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규모가 2023년까지 약 382억 6,200만원에 이르고 실제로 준비금의 사용한 사례는 2012년과 2014년 단 두 차례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준비금을 적립만 하는 것은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적 립 액			사 용 액			잔액		
	계	비상위험 준비금	손실보전 준비금	계	비상위험 준비금	손실보전 준비금	계	비상위험 준비금	손실보전 준비금
합계	38,933,231	6,221,358	32,711,873	671,055	29,514	641,541	38,262,176	6,191,844	32,070,332
2006	107,970	21,472	86,498				107,970	21,472	86,498
2007	346,403	41,055	305,348				346,403	41,055	305,348
2008	596,671	39,568	557,103				596,671	39,568	557,103
2009	641,657	43,885	597,772				641,658	43,885	597,773
2010	691,811	34,601	657,210				691,811	34,601	657,210
2011	638,477	60,776	577,701				638,477	60,776	577,701
2012	853,235	83,657	769,578	157,883	3,386	154,497	695,352	80,271	615,081
2013	1,216,137	106,691	1,109,446				1,216,137	106,691	1,109,446
2014	1,600,866	95,934	1,504,932	513,172	26,128	487,044	1,087,694	69,806	1,017,888
2015	1,588,777	83,982	1,504,795				1,588,778	83,982	1,504,796
2016	1,028,576	114,739	913,837				1,028,576	114,739	913,837
2017	2,085,616	155,479	1,930,137				2,085,616	155,479	1,930,137
2018	2,483,603	404,312	2,079,291				2,483,603	404,312	2,079,291
2019	2,931,902	776,924	2,154,978				2,931,902	776,924	2,154,978
2020	2,966,275	404,445	2,561,830				2,966,275	404,445	2,561,830
2021	3,774,474	682,842	3,091,632				3,774,474	682,842	3,091,632
2022	6,625,629	1,260,686	5,364,943				6,625,629	1,260,686	5,364,943
2023	8,755,148	1,810,308	6,944,840				8,755,148	1,810,308	6,944,840

*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준비금은 보험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을 말함)이 200%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183]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위험손해율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는 90%대를 기록했으나 보험 가입 규모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21년부터 크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손해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F)	순 손해율 (F/C)	위험 손해율 (F/B)	영업 손해율 (F/A)
	계 (A)	위험보험료(B)		부가보험료 (E)				
		순보험료* (C)	준비금** (D)					
2019	28,982,886	19,005,006	2,931,902	7,045,978	20,572,437	108%	94%	71%
2020	36,202,947	24,185,935	2,966,275	9,050,737	26,831,516	111%	99%	74%
2021	42,340,810	28,328,364	3,774,474	10,237,972	15,242,860	54%	47%	36%
2022	72,148,234	47,913,486	6,627,144	17,607,604	24,184,033	50%	44%	34%
2023	95,645,219	63,432,628	8,755,148	23,457,443	26,876,997	42%	37%	28%

*자료: 행정안전부
** 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183) **「2024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 제10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손실금의 처리)** ① 풍수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험보험료의 9.0%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법 제20조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약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사업자는 **손해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손실금에 대해서는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 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하였으나, 매년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지진 등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재와 같이 준비금이 적립되기만 할 경우 향후 과도한 준비금 누적으로 인해 오히려 재난관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 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대규모 재난 피해 대응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규모와 적립 비율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비상대비정책국】

30.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부지 선정, 마을 주민 설명 등의 절차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시·국가적 재난 등에 대비하여 대피·급수·경보시설 및 민방위 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며,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107억 9,400만원 대비 40억 5,800만원이 감액된 6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6,454	10,794	6,736	△4,058	△37.6
민방위 교육훈련	2,525	2,211	2,050	△161	△7.3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3,157	6,614	3,834	△2,780	△42.0
민방위 경보시설운영	772	1,969	852	△1,117	△56.7

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내역사업 ‘민방위 시설장비사업’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이나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하 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설의 신규 구축을 지원하려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본보조, 지원율 50%)으로,

사업 규모를 2024년 2개소에서 2025년 4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6억 4,000만원 대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연도별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당해연도 교부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에는 사업대상을 2개소(인천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단 2.6%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① 인천 강화군의 경우 노무비·재료비 등 물가상승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공사비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사업변경이 있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②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기선정된 마을의 주민이 조망권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 설명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	6개소 (인천3, 경기2, 강원1)	1600	1600	1041	559	65.1%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1600	1128	472	70.5%
2022	3개소 (인천3)	960	960	35	925	3.6%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60	505	455	52.6%
2024. 9.	2개소 (인천1, 경기1)	640	640	16.5	623.5	2.6%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은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사업대상이 2배(2개소 → 4개소)로 확대되었고, 개소당 건축단가도 3.2억원에서 4.6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7년 이후 건축단가가 동결되어 건축자재, 운임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피시설 면적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단가 인상이 필요하였고, 2025년도 사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13개소(인천 10개소, 경기 1개소, 강원 2개소)의 마을이 주민대피시설 건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신청 내역]

시도	시군구	시설명	총인구	기존 대피소 유무
인천	강화군	지산1리	304명	없음
		고능리	274명	〃
		선두1리	207명	〃
		동검리	257명	〃
		동막리	342명	〃
		이강2리	470명	〃
		상도1리	229명	〃
		상도2리	304명	〃
		난정1리	91명	〃
		서한리	172명	〃
경기	김포시	고양2리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마을회관 겸용)	150명	〃
강원	화천군	삼일3리 주민대피시설	150명	〃
	철원군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121명	〃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인 접경지역의 특성상 장기 거주민이 많고 마을 고유의 문화와 기존의 생활 터전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여 매년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어 왔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사업 규모까지 확대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부지 선정, 마을주민 설명 등의 절차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청사관리본부】

31.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2231-301)

○ 세종청사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는 세종청사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028까지 총사업비 32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세종청사의 옥상층 배수로와 건물 사이의 신축이음 부분을 정비하고 옥상층을 방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신축이음과 세종청사 옥상 배수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안 7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종청사의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사업은 정부청사에 드론 테러 방지를 위한 드론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다양화·고도화되는 드론의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경찰과 연계한 대응체계 구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 사업은 정부청사의 시설 점검·진단, 노후시설 정비, 방호보안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180억 4,100만원 대비 18억 1,400만원이 감액된 16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	21,990	18,121	16,227	△1,894	△10.5
시설 점검 및 진단	1,330	2,374	2,018	△356	△15.0
노후시설 정비	11,863	12,121	8,904	△3,217	△26.5
방호보안시설 보강	9,363	2,643	4,361	1,718	65.0
편의시설 정비	2,042	983	944	△39	△4.0

나. 세종정부청사의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옥상 누수 구간 방수공사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내역사업인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안전한 정부 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노후시설물 보강 내역을 청사별로 살펴보면, ① 세종청사의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 연결통로 내화도장 보수 ② 대전청사의 옥상 방수공사, 노후 전력설비 교체 ③ 과천청사의 노후 승강기 교체 ④ 서울청사의 민원동 확충 리모델링 공사 등이 있음.

[노후시설 정비 사업의 내역]

청사	노후시설 정비 내용	예산
세종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	○ 7억 6,600만원
	연결통로 내화도장 보수 (준공 후 10년 경과)	○ 3억 1,700만원
	정부청사 3동 사무공간 조성	○ 2억 6,200만원
서울	노후 UPS 설비 교체	○ 5억 6,200만원
	민원동 확충 리모델링 공사	○1억 4,000만원
대전	사무동, 후생동 등 옥상 방수공사	○ 2억 6,600만원
	노후 전력설비 교체 (1997년 설치 장비)	○ 25억 5,100만원
과천	노후 승강기 교체 (3동 고속×6대)	○ 14억 4,000만원
	노후 인터넷전화 시스템 교체(2012년 설치 장비)	○ 6억 9,100만원
	방호관 대기실 노후 시설 개선	○ 4억 5,000만원
고양	노후 UPS 설비 교체	○ 4,000만원
경남	노후 UPS 설비 축전기 교체	○ 5,600만원
	정부 청사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 13억 ,6300만원

□ ‘노후시설 정비’의 내내역사업인 ‘세종정부청사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2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세종정부청사의 옥상층 배수로와 건물간 신축이음을 정비하고 옥상층에 방수를 하는 사업임.

[세종정부청사 옥상 누수구간 방수공사 사업 예산안(2025년～2028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실시설계비	31	32	34	35	132
공사비	730	760	790	820	3,100
시설부대비	5	5	5	5	20
합계	766	792	829	860	3,252

자료: 행정안전부

□ 신축이음 정비는 세종정부청사의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신축이음 구조 중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우수드레인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배수로 정비는 집중 강수 등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이는 배수관에 우수드레인 등을 설치하여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복도 등 다양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가 보고된 장소의 일부에 대해서 배수유도판 등 임시방편의 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 세종정부청사 내에 다수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인한 업무 비효율 및 안전사고 위험 등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방수 조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군·경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드론 방어체계 구축’ 사업은 드론 테러 방지를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청사에 드론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81억 4,000만원임[184].

[드론 방어체계 구축사업 예산안(2024년~202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합계	160	1,995	3,990	1,995	8,140
기본설계비	80				80
실시설계비	80				80
자산취득비		1,791	3,582	1,791	7,164
공사비		204	408	204	816

□ 2024년에는 예산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설계용역은 2024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임.

□ 동 사업은 정부청사에 드론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자산 구입, 공사 및 추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드론 위협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고, 정부청사의 드론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측면에서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응체계 구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음.

184) 현재 드론방어시스템이 도입·운용중에 있는 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당초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 및 구축·운영 계획에 비하여 장기간 지연된 측면이 있음.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정보화 사업도 편성 당시에는 2024년에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공주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ISMP 수립 결과 및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을 반영하면서 사업기간이 2025년 9월까지로 연장되었는바, 변경된 계획대로 2025년 10월부터 공주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251억 5,000만원 대비 235억 3,600만원 감액된 1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	25,150	1,614	△23,536	△93.6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	25,150	486	△24,664	△98.1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	1,128	1,128	순증

나. 공주센터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광주, 대구, 공주에 위치하고 있음. 제1센터(대전센터)는 2005년 11월 정부통합전산센터[185]로 출범하였고, 제2센터(광주센터) 2007년 11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하였으며, 제3센터(대구센터)는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한 후 2024년까지 전산환경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

185)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7년 7월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개편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현황]

구분		제1센터	제2센터	제3센터	제4센터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충남 공주시
구축 형태		기존 건물 임차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구축 시기	건축	-	'05.12.~'07.06.	'19.09.~'22.04.	'12.02.~'23.05.
	정보화	'04.12.~'06.10.	'06.11.~'07.12.	'23.02.~'24.12.	'23.04. ~'25.09.(예정)
사업비	건축	-	880억원	2,760억원	1,533억원*
	정보화	1,389억원	1,010억원	2,036억원	821억원
	합계	1,389억원	1,890억원	4,796억원	2,354억원
규모		대지 61,880㎡ 건물 연면적 36,808㎡ (지하1층~지상5층)	대지 42,007㎡ 건물 연면적 33,696㎡ (지하2층~지상5층)	대지 80,549㎡, 건물 연면적 35,676㎡ (지하 3층~지상 3층)	대지 223,000㎡ 건물 연면적 16,120㎡ (지하3층~지상3층)

※자료: 행정안전부

*주:공주센터 건축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집행

□ 제4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 제2센터 출범 후인 2008년부터 추진되었는데, 해킹·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 방지 및 정보화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보보호 분야 제도의 강화 필요성[186]에 따라 2008년 7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187]"에 '통합

186)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 2008.7.22. .p.2.

18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008.7.22.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7.2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을 세부과제로 포함[188]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서 공주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로 대전 및 광주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는 경우에도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첨단 화생방, 내진, EMP 차폐 등 특수시설로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음.

□ 공주센터의 건축공사는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완공하였으며, 통신망, 정보화사업은 통합보안시스템 등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대전 및 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소산시스템과 소산용 내화금고를 공주센터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편성[189]하여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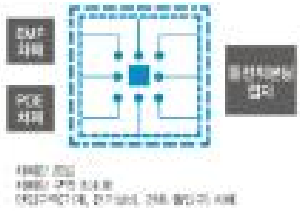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건축공사 주요 내용]

○**건축구성** : 전산동(지하(터널)3층 9,141㎡), 관리동(지상3층, 5,875㎡) 및 경비동(지상1층, 106㎡) - 전산동은 3개의 전산실과 내화금고실 및 종합상황실 등 구성 ○**특수시설** : 직격 핵을 제외한 모든 무기체계 방호를 고려하여 터널 내 전산동을 구축하고, 화생방 및 EMP 차폐 시설 구축

188)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 2008.7.22. .p.22. - (아젠다)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 (추진과제)⑤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 (세부과제)㉑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

18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건축공사 예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집행하였고, 정보화사업은 2024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임.

< 공주센터 방호체계 >

재래식 무기 방호	화생방 차폐	EMP 차폐
		
터널형태, 방폭밸브, 방폭문 설치	화학, 생물학 무기, 방사능낙진 방호	HEMP, NNEMP, 태양풍 등 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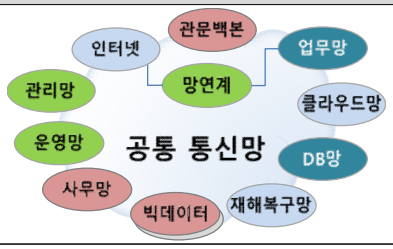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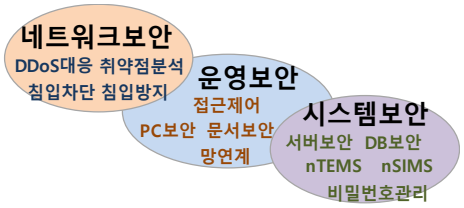
○ **기반환경구축** : 3개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등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추가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호설비	물리보안
UPS, 수·배전반 등	냉각기, 급·배기팬 등	설비제어 등	EMP필터 등	CCTV 등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정보화사업 주요 내용]

○ **전산환경구축** : 재해복구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통신망, 통합보안시스템, 운영통합시스템 등 공통인프라 구축

통신망	통합보안시스템	운영통합시스템
		

○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 대전·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소산시스템과 소산용 내화금고를 공주센터로 통합 이전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당초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연내에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공주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

□ 동 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부터는 구축·이전이 완료된 전산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되어야 하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비 11억 2,800만원 외에 구축 및 이전을 위한 비용도 4억 8,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25년 9월까지로 변경되었음.

□ 이는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이전) ISMP 결과 및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한 개선대책[190]에 따라 전산환경(통신, 보안, 통합배선반 등) 구축장비 보강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기간을 2025년 9월까지로 연장하고 하였기 때문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공주센터 구축 사업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에서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라는 명칭으로 최초 추진할 당시에는 2012년까지 백업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191], 타당성재조사 2회, 사업자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190) 2023년 11.17. 네트워크 장비불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 민원실 등의 행정업무가 중단되고 정부24 등의 대민서비스에도 장애가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하여 2024.1.31. 상시 장애 예방, 신속 대응 복구, 안정 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 12개 대과제 및 26개 세부과제을 내용으로 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191) 2008~2009년: 국내외 백업센터 사례 분석을 통해 백업전용센터 구축 타당성 및 추진방향 검토
2009~2012년: 부지선정, 시설물 구축 등 전용센터 구축 추진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

등으로 2019년 4월에 착공하게 되었고, 착공 이후에도 기반환경 공사비 증액 및 정보화 사업비 등록과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을 거치면서 2023년 5월에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건축 단계부터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된 측면이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사업 주요 추진 경과]

'08.07.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국무회의 보고)
'08.12.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 확보(국회,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09.01.	「정부백업센터 구축방안」 수립·보고
'09.12.~'10.06.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0.07.~'11.06.	정부전산백업센터 타당성재조사 1차(재정부) ※ (사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재조사 추진
'12.04.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 총사업비 최초 반영 ※ 타당성재조사 1차에 정보화 사업(224억)도 포함하여 검토되었으나, 당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대상 정보화사업은 500억 이상으로 건축사업비만 반영
'12.06. ~'13.02.	정부전산백업센터 타당성재조사 2차(기재부) ※ (사유) EMP 방호시설 등의 공사비 증액 요구분이 총사업비의 20%를 초과
'14.03. ~'16.01.	사업자 선정입찰(턴키방식) → 7회 유찰* → 입찰방식 변경('16.4, 턴키방식→설계·시공 분리) * EMP 설비 등 첨단기술 적용 사업으로 공사비가 추가를 우려하여 입찰 참여 포기
'16.11. ~'18.01	공주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04. ~'17.06.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18.03.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분리→실시설계기술제안) 및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18.09.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2회유찰 이후 입찰성립)
'18.12.	공주센터 신축공사 계약 체결
'19.04.	공주센터 신축공사 착공 → 중단('22.06~'23.1.)
'20.05.~'20.11.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ISP 수립
'21.12.	건축공사 추가분, 전산환경 구축·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예산요구
'22.01.~'22.0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수행 ※ (사유) 기반환경 공사비 증액과 정보화 사업비의 총사업비 등록 요구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
'22.10.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보원·방송통신위, 2008.7.22. .p.39.)

‘23.02.～‘23.05.	공주센터 신축공사 재개 → 공주센터 신축공사 완공
‘23.04.～‘23.08.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이전) ISMP 용역 실시 ※ (주요 과업) 선행 ISP사업 재검토(’20.5～11), 공통인프라 설계,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계획수립, 공주센터 운영 및 활용방안 수립
‘23.08.～‘23.11.	ISMP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
‘23.11.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24.01.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24.1.31.)
‘24.02.～‘24.04.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31.)」에 따라 수립된 재해복구 정책에 맞춰 ISMP 보완
‘24.04.～‘24.07.	ISMP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기획재정부) 완료(’24.7.2.)
‘24.07.～‘24.09.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마련
‘24.09.～‘24.11.	조달 계약 의뢰 및 조달 공고 진행
‘24.11.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사업자 선정(예정)
‘25.09.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사업 완료(예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건축공사에 이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도 예산 편성 당시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공주센터 운영에 추가 지연이 발생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까지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부터 공주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33.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행정안전부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재차 순연되지 않고 변경된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은 4·3유적지 보존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해원[192](解冤)하여 화해와 상생,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4·3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비를 지원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4·3평화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161억 2,100만원 대비 43억 2,900만원(26.9%) 감액된 1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192) 원통한 마음을 풂(표준국어대사전)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790	16,121	11,792	△4,329	△11.5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270	1,839	1,530	△309	△16.8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100	70	70	-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2,740	10,000	5,980	△4,020	△40.2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4,680	4,212	4,212	-	-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지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국가가 전액 사업비를 제주특별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국제평화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총사업비 : 295억원(국비 258, 도비 37)
○ 면　　적 : 건물 약 940평(연면적 약 1,660평), 부지 약 1만평
○ 도입예정시설 :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 4·3국제평화문화센터(4·3기록물 디지털열람실, 체험·공유 공간 등)
- 4·3트라우마치유센터(생존희생자·유족 정신·신체적 치유 및 재활 공간 등)

※ 자료: 행정안전부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당초 2022년부터 4년간의 사업을 거쳐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밝힌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 예산안에는 잔여 사업비 169억 6,000만원 중 50%인 59억 8,000만원만 편성되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국 비	25,800	-	1,100	2,740	10,000	5,980	5,980
지방비	3,700	3,700	-	-	-	-	-
계	29,500	3,700	1,100	2,740	10,000	5,980	5,980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사업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교부액 11억원 중 1,600만원만 부지 현황 측량을 위해 집행되었고, 10억 8,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023년 예산교부액 27억 4,000만원 역시 11억 9,900만원만 설계비로 집행되었고, 26억 2,500만원은 공사비 등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예산교부현액 126억 2,500만원 중 1억 4,600만원만 집행된 상태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예산 집행 내역(2022년～20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1,100	1,100	1,100	-	1,100	16	1,084	-	1.5
2023	2,740	2,740	2,740	1,084	3,824	1,199	2,625	-	43.7
2024. 9.	10,000	10,000	10,000	2,625	12,625	146			1.5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2022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순증되어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제주4·3위원회 심의·의결,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5월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으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심사,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설계용역 완료 및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심의·의결 : '02. 3. ※ 제주4·3위원회 의결(위원장 국무총리, 사업부지 12만평)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1. 5. ~ 12.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 심의·의결 : '22. 2. ○ 기본계획 적격성심사(행안부) 및 수시배정(기재부) : '22. 3. ~ 5. ○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설계 공모 : '22. 7. ~ '23. 5. ○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3. 6. ~ '24. 4. ○ 활성화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 '24. 5. ~ 8.

※ 자료: 행정안전부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4·3평화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10만 희생자·유족의 숙원을 달성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재차 순연되지 않고 변경된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